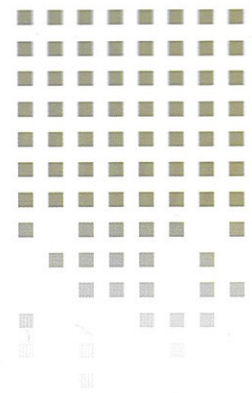


축산물가공처리법령

2006



농림자료실



0012457



농림부

“농식품 세계일류 농촌 Global Top 10”

축 산 물 가 공 처 리 법 령

2006

농 립 부

“농식품 세계일류 농촌 Global Top 10”

축 산 물 가 공 처 리 법 령

| | |
|---|-----|
| 축산물가공처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 16 |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별표 | 159 |
| [별표 1] 검사관의 기준 업무량 및 자체검사원·검사보조원의 수(제17조의2관련) | 161 |
| [별표 2] 검사불합격품의 폐기처리방법과 기준(제19조제2항 및 제27조의2제5항관련) | 163 |
| [별표 3] 과징금의 산정기준(제25조제2항관련) | 164 |
| [별표3의2] 포상금의 지급기준(제30조제1항관련) | 166 |
| [별표 4] 과태료 부과기준(제32조제3항관련) | 167 |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표 | 169 |
| [별표 1]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제2조관련) | 171 |
| [별표 2] 영업장 또는 업소의 위생관리기준(제6조관련) | 176 |
| [별표2의2]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정성 여부 평가기준 및 절차 등(제7조의6관련) | 179 |
| [별표2의3] 축산물의 포장방법 등(제7조의7관련) | 180 |
| [별표 3]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기준(제9조제3항관련) | 181 |
| [별표3의2] 착유가축검사의 항목·방법 및 기준(제10조제2항관련) | 188 |

| | | |
|----------|---|-----|
| [별표 4] | 축산물의 검사기준(제12조관련) | 189 |
| [별표 5] | 축산물가공업영업자의 검사기준(제14조관련) | 191 |
| [별표 6] | 검사시료의 채취 및 축산물의 수거기준(제16조 및 제26조관련) | 192 |
| [별표 7] | 축산물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제21조관련) | 194 |
| [별표 8] | 식육의 합격표시(제23조관련) | 198 |
| [별표 9] | 검사불합격품의 용도전환의 방법과 기준(제24조관련) | 200 |
| [별표9의2] |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검사업무정지의 처분기준(제28조의4관련) | 202 |
| [별표9의3] |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제28조의4관련) | 204 |
| [별표 10] |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제29조관련) | 206 |
| [별표 11] | 행정처분기준(제41조 및 제43조관련) | 230 |
| [별표 12] |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제51조제1항관련) | 256 |
| [별표 13] |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제51조제2항관련) | 260 |
| [별표 14] |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제52조제2항관련) | 264 |
| [별표14의2]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기준(제7조의4제2항관련) | 265 |
| [별표 15] | 허가 등 수수료(제60조관련) | 266 |
| [별도 1] | 검인(포유류) | 267 |
| [별도 1의2] | 검인(포유류가축의 머리·꼬리등의 표면) | 267 |
| [별도 2] | 검인(가금류) | 268 |
| [별도 3] | 가금육 포장지의 표시 | 269 |
| [별도 4] | 도축장(포유류) 시설배치도 | 270 |

| | | |
|---------------------------------|------------------------|------------|
| [별도 5] | 도축장(가금류) 시설배치도 | 271 |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 | 273 |
| [별지 제1호서식] | 학술연구용등도살신고서 | 275 |
| [별지 제2호서식] | 도축검사신청서 | 277 |
| [별지 제3호서식] | 착유가축검사대장 | 279 |
| [별지 제4호서식] | 도축검사증명서 | 280 |
| [별지 제5호서식] | 위탁검사신청서 | 281 |
| [별지 제6호서식] | 수거(압류)증 | 283 |
| [별지 제7호서식] | 검사관증 | 284 |
| [별지 제7호의2서식] | 축산물위생감시원증 | 285 |
| [별지 제7호의3서식] | 검사보조원증 | 286 |
| [별지 제8호서식] | 자체검사원지정(변경)승인신청서 | 287 |
| [별지 제9호서식] | 자체검사원지정승인서 | 289 |
| [별지 제10호서식] | 축산물수입신고서 | 290 |
| [별지 제11호서식] | 축산물수입신고필증 | 292 |
| [별지 제12호서식] | 출입·검사등기록부 | 293 |
| [별지 제13호서식] | 수거검사처리대장 | 294 |
| [별지 제14호서식] | 축산물위생검사기관지정신청서 | 295 |

| | | |
|---------------|----------------------|-----|
| [별지 제14호의2서식] | 축산물위생검사기관지정사항변경신고서 | 297 |
| [별지 제14호의3서식] | 검사업무의[휴지][폐지][재개]신고서 | 299 |
| [별지 제15호서식] | 축산물위생검사기관지정서 | 300 |
| [별지 제15호의2서식] | 축산물검사실적보고[년도반기분] | 302 |
| [별지 제15호의3서식] | 검사대장 | 303 |
| [별지 제16호서식] | [조건부]영업허가신청서 | 304 |
| [별지 제17호서식] | 허가증 | 306 |
| [별지 제18호서식] | []영업허가관리대장 | 308 |
| [별지 제19호서식] | 허가증재교부신청서 | 310 |
| [별지 제20호서식] | 영업허가의변경 허가신청서[신고서] | 312 |
| [별지 제21호서식] | 영업 휴업[재개업][폐업]신고서 | 314 |
| [별지 제22호서식] | 조건부허가기간연장신청서 | 316 |
| [별지 제23호서식] | 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영업신고서 | 318 |
| [별지 제24호서식] | 신고필증 | 320 |
| [별지 제25호서식] | 영업신고관리대장 | 322 |
| [별지 제26호서식] | 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 | 324 |
| [별지 제27호서식] | 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 | 326 |
| [별지 제28호서식] | 품목제조보고서 | 328 |
| [별지 제29호서식] | 품목제조보고사항변경보고서 | 329 |

| | | |
|---------------|---|-----|
| [별지 제30호서식] | 품목제조보고관리대장 | 330 |
| [별지 제31호서식] | 영업허가[신고]사항[]월보고 | 332 |
| [별지 제32호서식] |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 333 |
| [별지 제33호서식] | 행정처분대장 | 335 |
| [별지 제34호서식] | 도축검사실적조사표 | 336 |
| [별지 제35호서식] | 집유실적보고서[년 월분] | 338 |
| [별지 제35호의2서식]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작업장[업소·농장] 지정신청서 | 339 |
| [별지 제35호의3서식]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작업장[업소·농장]지정서 | 341 |
| [별지 제35호의4서식]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작업장[업소·농장] 지정변경신청서 | 343 |
| [별지 제35호의5서식]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도축장 확인서 | 345 |
| [별지 제36호서식] | 축산물가공품등 생산실적보고 | 347 |
| [별지 제37호서식] | 포상금지급신청서 | 348 |
| [별지 제38호서식] | 거래내역서 | 350 |
| [별지 제39호서식] | 축산물수입판매거래내역서 | 351 |

찾 아 보 기

| 축산물가공처리법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
|-------------------------------------|---|---------------------|
| 제1장 총칙 | | |
| 제1조(목적) 17 | 제1조(목적) 17 | 제1조(목적) 17 |
| 제2조(정의) 17 | 제2조(가축의 범위 등) 17 | |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1 | | 제1조의2(식용란) 18 |
| 제2장 축산물 등의 기준·규격 및 표시 | | |
| 제3조의2(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22 | 제3조 삭제 <2006.9.22> 제4조 삭제 <2006.9.22> 제5조(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구성) · 22 제6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23 제7조(회의소집 및 의사결정) 23 제8조(관계인의 의견청취) 23 제9조(분과위원회) 23 제9조의2(연구위원) 24 제10조(간사) 24 제11조(수당과 여비) 25 | |

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25

제5조(용기 등의 규격 등) 27

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28

제3장 축산물의 위생관리

제7조(가축의 도살 등) 28

제8조(위생관리기준) 30

제9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32

제12조(운영세칙) 25

제2조(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
의 기준) 25

제3조(축산물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등) 26

제4조 삭제 <2004.8.4>

제5조(도축장외의 장소에서 도살·
처리한 가축의 신고 등) 29

제6조(위생관리기준 등) 30

제7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작성·
운용 등) 32

제7조의2(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
작업장등의 지정신청 등) 33

제7조의3(영업자 및 농업인에 대한
교육훈련) 37

제7조의4(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
작업장등의 지정취소 등) 41

| 축산물가공처리법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
|---|--|--|
| 제9조의2(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 기관 지원 등) 43 제10조(부정행위의 금지) 44 제10조의2(축산물의 포장 등) 45 | 제12조의2(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 지정 등) 43 제12조의3(축산물의 포장 등) 45 | 제7조의5(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 작업장등의 출입·검사) 42 제7조의6(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평가 등) 43 제7조의7(축산물의 포장방법 등) 45 |
| 제4장 검사 | | |
| 제11조(가축의 검사) 45 | 제13조(자체검사원의 검사대상 가축 등) 45 | 제8조(가축 및 식육의 검사신청 등) 45 제9조(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 46 제10조(착유하는 소 또는 양에 대한 검사) 47 제11조 삭제 <2004.8.4> |
| 제12조(축산물의 검사) 47 | | 제12조(축산물의 검사기준) 47 제13조(검사증명서의 교부) 48 |

| | | | |
|---------------------------------|----|-------------------------------|----|
| 제12조의2(가축의 사육방법 등에 관한 지도) | 50 | 제14조(영업자의 검사) | 49 |
| 제12조의3(검사에 대한 이의신청) | 52 | 제15조(축산물의 위탁검사 등) | 49 |
| 제13조(검사관과 자체검사원) | 53 | 제16조(검사시료의 채취 등) | 50 |
| | | 제17조(검사기록부) | 51 |
| | | 제18조(검사결과의 통보) | 51 |
| | | 제19조(검사관 및 축산물위생 감시원 등) | 53 |
| | | 제20조(자체검사원의 지정 등) | 55 |
| 제14조(검사보조원) | 57 | | |
| | | 제13조의2(검사에 대한 이의신청) | 52 |
| | | 제14조(검사관의 자격·임무) | 53 |
| | | 제15조(자체검사원의 자격·임무 등) | 55 |
| | | 제16조(자체검사원의 지정해제 등) | 56 |
| | | 제17조(검사보조원을 두어야 하는 작업장) | 57 |
| | | 제17조의2(검사관의 기준 업무량 등) | 57 |
| | | 제18조(검사보조원의 자격·임무) | 58 |
| | | 제18조의2(검사보조원의 교육) | 61 |
| | | 제18조의3(교육 실시비용 등) | 63 |

| 축산물가공처리법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
|-----------------------------|---|---------------------------------------|
| 제15조(수입축산물의 신고 등) 64 | 제18조의4(수입축산물의 검사) 64 | 제21조(축산물의 수입신고 등) 64 |
| 제16조(합격표시) 68 | | 제22조(수입축산물의 통관 등) 67 |
| 제17조(미검사품의 반출금지) 68 | | 제23조(합격표시) 68 |
| 제18조(검사불합격품의 처리) 69 | 제19조(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축산물의 처리) 69 | 제24조(검사불합격품의 용도전환) 69 |
| 제19조(출입·검사·수거) 69 | 제20조(축산물판매업의 범위) 69 | 제25조(영업장의 출입·검사· 수거) 69 |
| 제20조(축산물위생검사기관) 72 | | 제26조(축산물의 수거·검사 등) 71 |
| | | 제27조(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 72 |
| | | 제28조(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73 |
| | | 제28조의2(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변경신고 등) 74 |
| | | 제28조의3(보고 및 지도·감독 등) 75 |
| | | 제28조의4(검사업무의 정지 등) 76 |
| 제20조의2(축산물위생감시원) 77 | 제20조의2(축산물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직무범위 등) 77 | |
| 제20조의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79 | 제20조의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위촉 등) 79 | |

제5장 영업의 허가 및 신고 등

제21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81

제22조(영업의 허가) 84

제23조(조건부 허가 및 조건이행의 신고) 88

제24조(영업의 신고) 91

제25조(품목제조보고) 93

제26조(영업의 승계) 96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98

제28조(과징금처분) 100

제21조(영업의 세부종류와 범위) 81

제22조(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사항) 85

제23조(조건부 허가기간의 연장) 89

제24조 삭제 <2006.9.22>

제25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기준) 100

제29조(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81

제30조(영업허가의 신청 등) 84

제31조(영업의 변경허가 등) 87

제32조(휴업등의 신고) 88

제33조(조건부허가기간등) 88

제34조(조건이행의 신고등) 90

제35조(영업의 신고등) 91

제36조(신고사항의 변경등의 신고) 92

제37조(품목제조의 보고등) 93

제38조(품목제조보고관리대장) 95

제39조(영업허가 등의 보고) 95

제40조(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96

제41조(행정처분의 기준) 98

제42조(행정처분통보 등) 98

제43조(과징금부과제외대상) 100

| 축산물가공처리법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
|-------------------------------|-------------------------------|--------------------------------|
| 제29조(건강진단) 103 | 제2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101 | 제44조(건강진단대상자 등) 103 |
| | | 제45조(영업에 종사할 수 없는 자) 103 |
| 제30조(위생교육) 104 | | 제46조(위생교육대상자) 104 |
| | | 제47조(위생교육기관 등) 105 |
| | | 제48조(교육시간) 105 |
| | | 제49조(교육교재 등) 106 |
| 제3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108 | | 제50조(교육실시비용 등) 107 |
| | | 제5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108 |
| 제31조의2(축산물의 자발적 회수) 109 | 제26조의2(축산물의 자발적 회수) 109 | |
| 제3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110 | | 제52조(허위표시 등의 범위와 적용) 110 |
| 제33조(판매 등의 금지) 114 | | 제53조(판매 등이 허용되는 축산물) 114 |
| 제33조의2(위해평가) 116 | 제26조의3(이해관계인의 범위) 117 | |
| | 제26조의4(위해평가의 대상 등) 118 | |
| 제6장 감독 | | |
| 제34조(생산실적 등의 보고) 121 | | 제54조(생산실적 등의 보고) 121 |

제35조(시설개수) 122
 제36조(압류·폐기 또는 회수) 122

제37조(공표) 125
 제38조(폐쇄조치) 126

제7장 보칙

제39조(포상금) 127
 제40조(보조금) 128
 제40조의2(가축외의 동물 등의
 검사) 129
 제41조(수수료) 130

 제42조(공중위생상 위해시의 조치) 133
 제43조(청문) 133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134

제27조(축산물의 회수명령 등) 123
 제27조의2(축산물 회수의 지도·
 감독 등) 124
 제28조(공표의 방법) 125
 제29조(폐쇄조치절차의 예외) 127

제30조(포상금의 지급) 127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134

제55조(압류증) 125
 제56조(영업소의 폐쇄조치) 126

 제57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등) 127

 제58조(도살·처리의 수수료 등) 130
 제59조(검사수수료 등) 131
 제60조(허가 등 수수료) 133

| 축산물가공처리법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
|---|--|---|
| <p style="text-align: center;">제8장 벌칙</p> <p>제45조(벌칙) 137</p> <p>제46조(양벌규정) 142</p> <p>제47조(과태료) 142</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 <p>제32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142</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 <p>제61조(과태료의 징수절차) 143</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

축산물가공처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 축산물가공처리법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
|---|---|--|
| <p>전문개정 1997.12.13 법률제5443호 개정 1998. 2.28 법률제5529호 (정부조직법) 1999. 1.29 법률제5720호 (축산법) 1999. 2. 5 법률제5765호 1999. 5.24 법률제5982호 (정부조직법) 2000. 1.21 법률제6192호 2001.12.31 법률제6571호 2002. 1.26 법률제6627호 (민사집행법) 2004. 1.29 법률제7134호 2005. 3.31 법률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6. 3.24 법률제7915호</p> | <p>전문개정 1998. 6.20 대통령령제15812호 개정 2000.10.31 대통령령제16995호 2002. 6.29 대통령령제17652호 2004. 7.29 대통령령제18494호 2006. 9.22 대통령령제19689호</p> | <p>전문개정 1998. 7. 3 농림부령제1287호 개정 1998. 8. 1 농림부령제1288호 (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1999. 2.18 농림부령제1315호 1999. 9. 7 농림부령제1345호 (축산법시행규칙) 2000. 3.18 농림부령제1358호 (위해축산물의회수절차등에관한규칙) 2000. 3.27 농림부령제1360호 (농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2000.12.11 농림부령제1373호 2001.10. 6 농림부령제1402호 2002. 8. 5 농림부령제1424호 2004. 1.29 농림부령제1454호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2004. 8. 4 농림부령제1478호 2006. 6.30 농림부령제1529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 을 위한 「국유임산물매각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6.10. 4 농림부령제1539호</p>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가공·유통 및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6.3.24>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31, 2004.1.29, 2006.3.24>

1. "가축"이라 함은 소·말·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돼지(사육하는 멧돼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닭·오리, 기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축의 범위 등) ①축산물가공처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기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4.7.29>

1. 사슴
2. 토끼
3. 칠면조
4. 거위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축산물가공처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4>

| 축산물가공처리법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
|--|---|---|
| <p>2. "축산물"이라 함은 식육·포장육·원유·식용란·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을 말한다.</p> <p>3. "식육"이라 함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정육·내장 기타 부분을 말한다.</p> <p>3의2. "포장육"이라 함은 판매(불특정다수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세절(細切) 또는 분쇄(粉碎)를 포함한다]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 또는 냉동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성품 등 첨가물 또는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p> <p>4. "원유"라 함은 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처리·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착유상태의 우유와 양유를 말한다.</p> <p>5. "식용란"이라 함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알로서 농림부령이 정</p> | <p>5. 메추리</p> <p>6. 꿩</p> <p>7. 당나귀</p> | <p>제1조의2 (식용란) 「축산물가공처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p> |

하는 것을 말한다.

6. "집유"라 함은 원유를 수집·여과·냉각 또는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7. "식육가공품"이라 함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햄류·소시지류·베이컨류·건조저장육류·양념육류, 기타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유가공품"이라 함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우유류·저지방우유류·분유류·발효유류·버터류·치즈류, 기타 원유 등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2조제7호에서 "기타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2.6.29>

1. 삭제 <2004.7.29>
2. 분쇄가공육제품(식육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햄버거패티류·미트볼류·까스류 등을 말한다)
3. 갈비가공품
4. 식육추출가공품(식육을 주원료로 하여 액체형태로 추출한 것을 말한다)
5. 식용 우지
6. 식용 돈지

③법 제2조제8호에서 "기타 원유 등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2.6.29>

1. 유당분해우유
2. 가공유류
3. 산양유

"농림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닭·오리 및 메추리의 알을 말한다. <개정 2006.10.4>

[본조신설 2002.8.5]

| 축산물가공처리법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버터유류 5. 농축유류 6. 유크림류 7. 유청류 8. 유당 9. 유단백 가수분해 식품 10. 조제유류 11. 아이스크림류(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한 후 냉동·경화한 것을 말한다) 12. 아이스크림분말류(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한 후 건조·분말화한 것으로서 물을 넣어 냉동시키면 아이스크림류가 되는 것을 말한다) 13. 아이스크림믹스류(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하여 혼합한 후 살균 또는 멸균한 액체형태의 제품으로서 냉동시키면 아이스크림류가 되는 것을 말한다) | |

9. "알가공품"이라 함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난황액·난백액·전란분, 기타 알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작업장"이라 함은 도축장·집유장·축산물가공장·식육포장처리장 또는 축산물보관장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축산물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에 의한다.
<개정 2006.3.24>

④법 제2조제9호에서 "기타 알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2.6.29>

1. 전란액
2. 난황분
3. 난백분
4. 알가열성형제품
5. 염지란
6. 피단

⑤법 제2조제7호 내지 제9호 및 이 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식육가공품·유가공품 및 알가공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농림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2.6.29>

| 축산물가공처리법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
|---|---|---------------|
| <p>제2장 축산물 등의 기준·규격 및 표시</p> <p>제3조의2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축산물위생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축산물의 병원성미생물 검사기준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축산물의 항생물질, 농약 등 유해성 물질의 잔류방지를 위한 기술 지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유통의 기준 및 성분의 규격에 관한 사항 4.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5.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 판매 등의 일시금지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물 | <p>제3조 삭제 <2006.9.22></p> <p>제4조 삭제 <2006.9.22></p> <p>제5조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상 5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7.29, 2006.9.22></p> <p>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p> <p>③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축산물에 관한 영업에 종사하는 자, 축산물위생 또는 소비자보호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농림부장관은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관련학회 또는 전문가단체 등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p> | |

위생에 관한 중요사항

제6조 (위원의 임기와 직무)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에 임기는 당해 관련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소집 및 의사결정)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농림부장관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분과위원회) ①위원회에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축산물가공처리법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
|---|--|---------------|
| <p>③축산물의 국제기준 및 규격 등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p> <p>④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06.3.24]</p> | <p>②위원회의 의결사항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p> <p>③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④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p> <p>제9조의2 (연구위원) ①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연구위원은 5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06.9.22></p> <p>②연구위원은 축산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임명한다.</p> <p>③연구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02.6.29]</p> <p>제10조 (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p> | |

제4조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①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②농림부장관은 공중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이하 "가공기준"이라 한다), 축산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성분규격"이라 한다),

②간사는 농림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축산물위생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1조 (수당과 여비) ①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농림부장관은 연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와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2.6.29>

제12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조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2.8.5>

| 축산물가공처리법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
|--|--------------|---|
| <p>축산물의 위생등급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축산물에 들어있는 항생물질, 농약 등 유해성 물질의 잔류허용기준과 축산물에 사용하는 화학적 합성품 등 첨가물의 사용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농림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9.5.24, 2004.1.29></p> <p>③농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로 하여금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제출하게 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그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p> <p>④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기준·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의할 수 있다.</p> | | <p>제3조 (축산물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등) ①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이하 "가공기준"이라 한다) 및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성분규격"이라 한다)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축산물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라 한다)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하 "검역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검토기준에 의하여야 한다.</p> |

⑤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및 축산물의 가공 등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축산물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 (용기 등의 규격 등) ①농림부장관은 축산물의 위생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축산물에 대하여 사용하는 용기·기구·포장 또는 검인용색소(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에 관한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1999.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 등이 정하여진 경우 작업장에서는 그 규격 등에 적합한 용기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개정 2004.8.4>

②검역원장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행하는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관한 검토내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축산물 위생검사기관에 이를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4.8.4>

③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검토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이를 의뢰한 자에게 검사성적서·가공공정서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축산물가공처리법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
|--|--------------|---------------|
| <p>제6조 (축산물의 표시기준) ①농림부장관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1999.2.5></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축산물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2.5></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축산물의 위생관리</p> <p>제7조 (가축의 도살 등) ①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9></p> <p>1. 부상·난산·산욕마비·급성고창증 등으로 인하여 가축을 즉시 도살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p> | | |

2. 학술연구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
3.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안에서 소·말을 제외한 가축을 자가소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
4.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안에서 소·말·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을 그 소유자가 당해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기 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을 도살·처리한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살·처리한 식육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 ④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말·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을 도살·처리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위생적으로 도살·처리하

제4조 삭제 <2004.8.4>

제5조 (도축장외의 장소에서 도살·처리한 가축의 신고 등) 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축장외에서의 가축의 도살·처리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장외의 장소에서 도살한 가축의 식육을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8.5, 2004.1.29>

1. 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살한 가축중 동물병원을 개설한

| 축산물가공처리법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
|---|--------------|---|
| <p>여야 한다. <신설 2004.1.29></p> <p>제8조 (위생관리기준) ①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 및 그 종업원이 작업장 또는 업소에서 지켜야 할 위생관리기준(이하 "위생관리기준"이라 한다)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9></p> | | <p>수의사 또는 축산연구소에서 가축진료업무를 담당하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되고 도축장안에서 처리한 것으로서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은 경우</p> <p>2. 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술연구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한 것으로서 검사관의 검사를 받은 경우</p> <p>③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관의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8.5></p> <p>제6조 (위생관리기준 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②법 제8조제2항에서 "그 밖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영업자"라 함은 집유업·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 및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4.8.4></p> |

②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축업의 영업자,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동항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그 밖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영업자는 위생관리기준에 따라 당해 작업장 또는 업소에서 영업자 및 종업원이 지켜야 할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작성·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1.12.31]

③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위생관리기준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기준에 따라 해당작업장에서 작업 개시전과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축산물의 오염이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영업자는 매일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이를 점검일지에 기록하여야 하고, 점검일지는 최종기재일부터 3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⑤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검역원장은 검사관·축산물 위생감시원으로 하여금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적합성 및 효율성을 검증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작업장 또는 업소의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수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4.8.4>

[전문개정 2002.8.5]

| 축산물가공처리법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
|---|--------------|--|
| <p>제9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①농림부장관은 가축의 사육과 축산물의 원료 관리·처리·가공·포장 및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인체에 위해한 물질이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별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04.1.29, 2006.3.24></p> | | <p>제7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작성·운영 등) ①삭제 <2004.8.4> ②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2.8.5, 2004.8.4, 2006.10.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축의 사육단계, 축산물의 원료 관리·처리·가공·포장 또는 유통단계에서 위생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생물학적·화학적·물리학적 위해요소의 분석 2. 위해의 발생을 방지·제거하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단계·공정(이하 "중요관리점"이라 한다) 3. 중요관리점별 위해요소의 한계기준 4. 중요관리점별 감시관리체계 5. 중요관리점이 한계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 취하여야 할 조치 6.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운용의 적정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 |

②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축업의 영업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따라 당해 도축장에 적용되는 자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도서지역에 있는 도축업의 영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농림부장관은 제21조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영업자와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를 원하는 영업자의 작업장·업소 또는 농업인의 농장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업소 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농장(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3.24>

7. 기록유지 및 서류작성의 체계. 다만, 기록유지에 있어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운용에 관한 자료 및 기록은 2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삭제 <2004.8.4>

④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도서지역"이라 함은 울릉도 및 백령도를 말한다. <개정 2002.8.5>

⑤삭제 <2004.8.4>

제7조의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신청 등) ①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업소·농장)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이하 "담당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 축산물가공처리법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
|---|--------------|---|
| <p>④농림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받은 영업자 및 농업인에게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9, 2006.3.24></p> <p>⑤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운용,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작성·운용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요건·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4.1.29></p> | | <p>1. 영업허가(신고)증 사본(농업인의 경우에는 축산업등록증 사본 그 밖에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p> <p>2. 영업자와 종업원 또는 농업인의 교육 훈련수료증 사본</p> <p>3. 최근 3월간의 생산 또는 영업실적</p> <p>4.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위생관리프로그램(이하 "위생관리프로그램"이라 한다) 및 1월 이상의 운용 실적</p> <p>5. 업종별 또는 품목별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1월 이상의 운용실적</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6.10.4></p> <p>1. 위생관리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을 것</p> <p>2.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운용하고 있을 것</p> |

3. 제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훈련기관에서 영업자 및 농업인은 4
시간 이상, 종업원은 24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수료하였을 것

③담당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신청을 한 자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
청인에게 별지 제35호의3서식의 위해
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업소·농
장)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④담당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을 지
정한 때에는 이를 농림부장관, 검역원
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⑤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작업장등으로 지정받은 영업자 및
농업인이 동항에 따라 지정받은 사항
또는 중요관리점을 변경하려는 경우(법
제26조 또는 「축산법」 제20조의3에 따
른 영업의 승계에 따라 영업자 또는

| 축산물가공처리법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
|----------|--------------|--|
| | | <p>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종업원의 고용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별지 제35호의4서식의 지정 변경신청서에 지정서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신설 2006.10.4></p> <p>⑥담당기관은 제5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서류검토 또는 현장실사 등의 방법으로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35호의3서식의 지정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p> <p>⑦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운영하고 있는 도축업의 영업자가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현장실사 등의 방법을 통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고 별지 제35호의5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06.10.4></p> <p>[본조신설 2004.8.4]</p> |

⑥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운용하여야 하는 도축업의 영업자(종업원을 포함한다)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받기를 희망하거나 지정을 받은 영업자(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농업인에게 위해요소중점관리에 필요한 기술·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4.1.29, 2006.3.24>

제7조의3 (영업자 및 농업인에 대한 교육훈련) ①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영업자 및 농업인에게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종류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0.4>

1. 정기교육훈련 : 매년 1회 이상 4시간 이상. 다만,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정기교육훈련을 이수하고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1년간의 정기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2. 수시교육훈련 : 축산물 위해사고의 발생 및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으로서 1회 8시간 이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사항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관련법령에 관한 사항

| 축산물가공처리법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
|---|--------------|---|
| <p>⑦농림부장관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작업장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때</p> | | <p>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4.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사후관리 및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5.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과 관련된 축산물위생에 관한 사항 ③제7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은 농림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다. <개정 2006.10.4> ④농림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을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교육훈련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시설장비 등에 대한 기준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p> |

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9>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2. 제4조제5항, 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제3항, 제18조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영업의 일부정지를 제외한다) 2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

4. 1년의 기간 이내에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⑧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 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04.1.29>

⑨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

| 축산물가공처리법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
|--|--------------|---|
| <p>작업장등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위촉된 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를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영업자에 대하여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용자사업 등의 우선지원을 할 수 있다.</p> <p><신설 2004.1.29, 2006.3.24></p> <p>⑩농림부장관은 도축장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으며, 그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등의 차등지원을 할 수 있다.</p> <p><신설 2006.3.24></p> <p>⑪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실시기관·실시비용 및 내용 등과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3.24></p> <p>[전문개정 2001.12.31]</p> | | <p>⑤법 제9조제11항에 따라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은 교육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의 교육훈련실시비용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06.10.4></p> <p>1. 강사수당</p> |

2. 교육교재편찬비
3. 교육에 필요한 실험재료비 및 현장 실습비
4. 그 밖에 교육관련 사무용품구입비 등 소요경비

⑥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6.10.4>

[본조신설 2004.8.4]

제7조의4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취소 등) ①법 제9조제7항제3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6조제2항 또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표시를 하거나 허위표시·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한 경우
2.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22조제1항·제4항 또는 법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

| 축산물가공처리법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
|----------|--------------|--|
| | | <p>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p> <p>4. 법 제27조제1항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p> <p>5.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p> <p>②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14의2와 같다.</p> <p>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였거나 당해 작업장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검역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04.8.4]</p> <p>제7조의5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출입·검사) 법 제9조제9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년을 말한다. <개정 2006.10.4></p> |

제9조의2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 기관 지원 등) ①농림부장관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제정 및 작업장 적용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를 담당할 기관을 지정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3.24]

제12조의2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 지정 등) ①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이하 "담당기관"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비영리법인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서 가축의 사육과 축산물의 원료관리·처리·가공·포장·유통과정의 위해요소중점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을 보유한 법인 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본조신설 2004.8.4]

제7조의6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평가 등) ①법 제9조제10항 및 제11항에 따른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정성 여부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은 별표 2의2에 따른다.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정성 여부 평가를 소비자단체 또는 축산관련 기관·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0.4]

| 축산물가공처리법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
|---|--|---------------|
| <p>제10조 (부정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가축에 대하여 강제로 물을 먹이거나 식육에 물을 주입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p> | <p>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담당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이하 이 조에서 "적용작업장등"이라 한다)의 지정사업 2. 적용작업장등의 사후관리사업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운용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p>③농림부장관은 제2항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담당기관에게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담당기관이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06.9.22]</p> | |

로 중량 또는 용량을 늘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의2 (축산물의 포장 등) ①농림부 장관은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영업자에게 축산물을 포장하여 보관·운반·진열 및 판매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대상 축산물의 종류 및 영업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3.24]

제4장 검사

제11조 (가축의 검사) 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축업의 영업자는 작업장에서 도살·처리하는 가축에 대하여 검사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오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축의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체검사원(이하 "자체검사원"

제12조의3 (축산물의 포장 등) ①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포장대상 축산물의 종류는 닭·오리의 식육으로 하고, 포장대상 영업자는 제21조제1호의 도축업의 영업자 중 연간 1일 평균 도축수가 8만 이상인 자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포장대상 축산물의 포장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9.22]

제13조 (자체검사원의 검사대상 가축 등) 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원의 검사로써 검사관의 검사에 갈음할 수 있는 가축 및 식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6.29>

1. 닭 및 그 식육

제7조의7 (축산물의 포장방법 등) 영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축산물의 포장방법 등은 별표 2의3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6.10.4]

제8조 (가축 및 식육의 검사신청 등) ①법 제11조제1항 본문, 법 제12조제1항 본문 및 이 규칙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축검사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검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8.5, 2006.10.4>

| 축산물가공처리법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
|---|---|---|
| <p>이라 한다)의 검사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4.1.29></p> |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오리 및 그 식육 3. 토끼 및 그 식육 4. 칠면조 및 그 식육 5. 거위 및 그 식육 6. 메추리 및 그 식육 7. 꿩 및 그 식육 |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축검사신청을 받은 검사관은 지체없이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8.5></p> <p>③시·도지사는 도축장에서 처리하는 가축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축업의 영업자로 하여금 검사를 받고자 하는 가축을 도축장안의 계류장에 일정기간 계류하게 할 수 있다.</p> <p>제9조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p> <p>①검사관 또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원(이하 "자체검사원"이라 한다)은 당해 도축장의 계류시설·냉장시설 등 도축처리능력을 감안하여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8.5, 2004.8.4></p> <p>②시·도지사는 검사관으로 하여금 월 1회 이상 자체검사원이 행하는 검사업무에 대하여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8.5></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 및 그 식육검사의 항목·방법 및 기준은 별표 3</p> |

②시·도지사는 검사관으로 하여금 착유하는 소 또는 양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③착유하는 소 또는 양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항목·방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축산물의 검사) 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축업의 영업자는 작업장에서 처리하는 식육에 대하여 검사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오리

과 같다. <신설 2004.8.4>

제10조 (착유하는 소 또는 양에 대한 검사) ①시·도지사는 검사관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착유하는 소 또는 양(이하 "착유가축"이라 한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2.8.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착유가축 검사의 항목·방법 및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신설 2004.8.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한 검사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착유가축 검사대장에 그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최종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거나 동서식에 따른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2.8.5, 2006.10.4>

제11조 삭제 <2004.8.4>

제12조 (축산물의 검사기준) 법 제12조 제2항·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항목·방법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04.8.4]

| 축산물가공처리법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
|---|--------------|---|
| <p>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축의 식육의 경우에는 자체검사원의 검사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p> <p>②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유업의 영업자는 집유하는 원유에 대하여 검사관 또는 자체검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2.31></p> | | <p>제13조 (검사증명서의 교부) ①법 제11조제1항 본문 및 법 제1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 및 식육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검사관은 그 검사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도축검사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8.5></p> <p>②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가축 및 식육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한 자체검사원은 당해 가축 및 식육의 도살·처리를 의뢰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도축검사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p> <p>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해당식육을 도축검사신청인 또는 도살·처리의뢰인의 축산물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식육가공품 또는 포장육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도살·처리하는 경우에는 도축검사증명서의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4.8.4></p> |

③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가공한 축산물이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2006.3.24>

④시·도지사는 장비·시설의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작업장에서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하게 할 수 있다.

⑤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검사관으로 하여금 식용란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1.29>

제14조 (영업자의 검사) ①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관한 검사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는 종업원 중에서 검사능력이 있는 자를 지정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8.4, 2006.10.4>

②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검사기록서에 기록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4.8.4, 2006.10.4>

제15조 (축산물의 위탁검사 등) ①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하여야 하는 집유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는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여 그 시료와 함께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해당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1, 2004.8.4, 2006.10.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검사신청을 받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은 제12

| 축산물가공처리법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
|--|--------------|---|
| <p>⑥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항목·방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9></p> <p>제12조의2 (가축의 사육방법 등에 관한 지도)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1조 또는 제12조</p> | | <p>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항목·방법·기준에 따라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검사를 신청하는 자가 검사할 항목을 별도로 정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항목만을 검사할 수 있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은 해당 축산물이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검사시료의 일부를 검사완료일부터 60일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이 곤란하거나 부패하기 쉬운 축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와 관련된 검사기록서를 작성·비치하고 이를 최종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p> <p>제16조 (검사시료의 채취 등)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관·자체검사원 또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축산물을 검사하는 경우 그 검사대상별 시료</p> |

의 규정에 의한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결과 제11조제4항 또는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가축 또는 축산물을 출하한 자에 대하여 가축의 사육방법 등 그 개선에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9]

의 채취량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02.8.5>

②검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거증을 해당영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8.5>

제17조 (검사기록부) 검사관·자체검사원 또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법 제11조제1항, 법 제12조제1항·제2항 및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때에는 검사기록부를 작성·비치하고 이를 최종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2.8.5>

제18조 (검사결과의 통보) ①검사관·자체검사원 또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법 제11조제1항, 법 제12조제1항 및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도축검사신청인, 판매를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한 자 또는 도살·처리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8.5>

②검사관 또는 자체검사원이 법 제11조제1항 또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검사결과를

| 축산물가공처리법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
|---|---|--|
| <p>제12조의3 (검사에 대한 이의신청) ①시·도지사 또는 농림부장관은 제12조 및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을 검사한 결과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적정한</p> | <p>제13조의2 (검사에 대한 이의신청) ①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농림부장관이 해당 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할 통보내용과 통보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 <p>해당도축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8.5></p> <p>③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검사를 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결과를 검사성적서에 의하여 위탁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업을 허가하는 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 또는 영업의 신고를 수리하는 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지체없이 그 뜻을 통보하여야 한다.</p> <p><개정 2004.8.4></p> |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미리 해당 영업자에게 그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영업자가 그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농림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농림부장관은 재검사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해당 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 또는 농림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를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재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영업자에게 그 재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내용 및 통보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3.24]

제13조 (검사관과 자체검사원) ①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검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의사의 자

1. 통보내용 : 당해 검사에 적용한 검사방법, 검체의 채취·취급방법 및 검사결과

2. 통보기한 : 당해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가 작성된 날부터 7일 이내

②법 제12조의3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농림부장관이 해당 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할 통보내용과 통보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보내용 : 재검사 여부 결정결과(사유를 포함한다) 또는 재검사 결과

2. 통보기한 : 재검사 여부 결정결과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재검사 결과는 재검사의 실시를 통보한 날부터 18일 이내

[본조신설 2006.9.22]

제14조 (검사관의 자격·임무)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관은 농림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제19조 (검사관 및 축산물위생감시원 등)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20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생감시원의

| 축산물가공처리법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
|---|--|---|
| <p>격을 가진 자 중에서 검사관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1.12.31></p> | <p>같다) 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행정기관에 한한다)의 소속공무원중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 및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로 한다. <개정 2002.6.29></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개정 2000.10.31, 2002.6.29, 2004.7.29, 2006.9.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 2. 착유하는 소 또는 양의 검사 3. 자체검사원 및 검사보조원의 업무이행여부 확인 4.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실시하는 검사의 적정여부 확인 5.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등에 적합한 용기등(축산물에 대하여 사용하는 용기·기구·포장 또는 검인용색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여부 확인 | <p>증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르며,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보조원의 증표는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다.</p> <p>[전문개정 2006.10.4]</p> |

②제11조제1항 단서,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해당영업자는 이 법에 의한 검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소속수의사 중에서 자체검사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검사관 및 자체검사원의 자격·임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3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원을 지정한 영업자는 자체검사원의 업무를

6. 축산물의 유통에 관한 지도
7. 축산물의 표시기준위반여부 확인
8. 영업장시설의 검사
9. 행정처분의 이행여부 확인
10.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및 축산물의 처리
11. 축산물의 검사 및 수거검사
12. 법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가축 외의 동물 및 그 지육·정육·내장 그 밖의 부분에 대한 검사·처리
13. 기타 가축 및 축산물의 위생관리에 관련된 업무

제15조 (자체검사원의 자격·임무 등) ①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원은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을 받은 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7.29>

1.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
2. 축산물의 검사
3. 영업장시설의 위생관리
4. 종업원에 대한 위생교육

제20조 (자체검사원의 지정 등) 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자체검사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승인을 얻어 지정한 자체검사원의 지정을 해제하고 새로이 자체검사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가 이를 승인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자체검사원

| 축산물가공처리법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
|--|--|-------------------------|
| <p>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로부터 업무 수행상 필요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p> | <p>5.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및 축산물의 처리</p> <p>6. 검사기록의 유지 및 검사에 관한 보고</p> <p>7. 검사보조원의 업무이행여부 확인</p> <p>8. 착유하는 소 또는 양의 위생관리에 관한 지도</p> <p>9. 기타 가축 및 축산물의 위생관리에 관련된 업무</p> <p>③삭제 <2004.7.29></p> <p>제16조 (자체검사원의 지정해제 등) ①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원을 지정한 영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자체검사원의 지정을 해제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자체검사원이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소홀히 하여 인수공통전염병·식중독 등 공중위생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켰거나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당해 자체검사원을 두고 있는</p> | <p>지정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p> |

제14조 (검사보조원) ①농림부장관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관의 검사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보조원을 채용하여 배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6.3.24>

②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장의 허가를 받은 자는 자체검사원의 검사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보조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6.3.24>

영업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자체검사원의 지정을 해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영업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해제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원의 지정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 (검사보조원을 두어야 하는 작업장)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장"이라 함은 도축장 및 집유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6.9.22]

제17조의2 (검사관의 기준 업무량 등)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관이 1일 동안 검사할 수 있는 기준 업무량과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장이나 도축장 등에 두어야 하는 자체

| 축산물가공처리법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
|--|--|---------------|
| <p>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보조원의 자격·임무 및 교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3.24></p> | <p>검사원 및 검사보조원의 수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04.7.29]</p> <p>제18조 (검사보조원의 자격·임무)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검사업무를 보조하는 검사보조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자로 한다. <신설 2006.9.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의학·축산학·식품학·생물학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에 따른 축산기능사 또는 식육처리기능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농림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 축산물위생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

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사보조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0.10.31, 2002.6.29, 2006.9.22>

1.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 축산물위생에 관한 업무에 6월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에 따른 축산기능사 또는 식육처리기능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도축장 또는 집유장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4.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위생교육실시기관에서 소정의 위생교육을 이수한 자
5.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축산물위생관련법인에서 축산물위생 관련업무에 6월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③제1항에 따른 검사보조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6.9.22>

| 축산물가공처리법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검사관이 행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에 대한 보조업무 2. 검사관이 행하는 도축장의 자체위생 관리기준 및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여부 확인에 대한 보조업무 3.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및 축산물의 처리에 관한 보조업무 4. 검사관이 행하는 실험실검사의 보조업무 5. 검사기록부 등 검사와 관련된 문서의 정리 6. 영업장안의 기구·장비 및 시설 등의 위생관리 7. 그 밖에 가축 및 축산물의 위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검사관이 지시하는 업무 <p>④제2항에 따른 검사보조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개정 2002.6.29, 2006.9.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체검사원이 행하는 가축 및 축산물검사에 관한 보조업무 | |

2. 영업장안의 기구·장비·시설 등의 위생관리
3.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및 축산물의 처리에 관한 보조업무
4. 검사기록부 등 검사와 관련된 문서의 정리
5. 기타 가축 및 축산물의 위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검사관 또는 자체검사원이 지시하는 업무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보조원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수행 중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 또는 영업장안의 기구·장비·시설 등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검사관 또는 자체검사원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9, 2006.9.22>

제18조의2 (검사보조원의 교육) ①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보조원(검사보조원이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은 농림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교육실시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

| 축산물가공처리법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
|----------|---|---------------|
| | <p>기관을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교육실시기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교육실시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시설장비 등에 대한 기준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에 따른 검사보조원 교육의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보조원이 되려는 자 : 40시간 이상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사보조원이 되려는 자 : 24시간 이상 3.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보조원 : 매년 4시간 이상 <p>④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항제3호의 경우에는 교육내용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의학에 대한 기초이론 2. 도축장 및 집유장에서의 가축 및 축산물의 검사에 관한 사항 3. 도축장 및 집유장에서의 위해요소중 | |

점관리기준의 적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도축장 및 집유장에서의 축산물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5. 축산물위생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6.9.22]

[종전 제18조의2는 제18조의4로 이동 <2006.9.22>]

제18조의3 (교육실시비용 등) ①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은 교육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의 교육실시비용을 받을 수 있다.

1. 강사수당

2. 교육교재편찬비

3. 교육에 필요한 실험재료비 및 현장 실습비

4. 그 밖에 교육관련 사무용품구입비 등 소요경비

②검사보조원의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6.9.22]

| 축산물가공처리법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
|---|---|---|
| <p>제15조 (수입축산물의 신고 등) ①판매를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농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축산물에 대하여 통관절차 완료전에 검사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그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이로써 전단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갈음하거나 그 검사항목을 조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p> <p><개정 2000.1.21, 2001.12.31></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항목·방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p> | <p>제18조의4 (수입축산물의 검사) 농림부장관은 수입축산물로 인한 위생상 위해의 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된 축산물에 대하여 통관완료전에 동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한 수입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수입신고인에게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물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입축산물(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검역물에 해당하는 수입축산물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검사결과의 확인 또는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축산물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4.7.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무작위표본검사의 대상으로 농림부령이 정하는 축산물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준의 | <p>제21조 (축산물의 수입신고 등)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의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입신고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신고인은 수입하는 축산물의 도착전에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사항중 당해 축산물의 도착항·도착예정일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p> <p><개정 2000.12.11, 2004.8.4, 2006.10.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입하는 축산물이 별표 7의 축산물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에서 정하는 정밀검사대상 축산물로서 검역원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2.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발급한 축산 |

경미한 위반으로서 수입신고인이 통
관후 시중에 판매하기 전에 동 위반
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축산물

[본조신설 2000.10.31]

[제18조의2에서 이동 <2006.9.22>]

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검토서 사본(식육가공품·유가공품 및
알가공품으로서 법 제4조제3항에 해
당하는 축산물에 한한다)

3.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한다)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기재된
서류(지육 및 자사의 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하
다)

4.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또는 허가증
사본(「대외무역법」에 의하여 외화획
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의 제
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압
류·몰수된 수입축산물에 대하여는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첨부서류
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의 수
입신고를 받은 검역원장은 검사관으로

| 축산물가공처리법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
|----------|--------------|---|
| | | <p>하역금 별표 7의 축산물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에 따라 당해 축산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p> <p><개정 2000.12.11, 2002.8.5></p> <p>④영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축산물수입신고필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p> <p><개정 2000.12.11, 2004.8.4, 2006.10.4></p> <p>⑤삭제 <2006.10.4></p> <p>⑥검역원장은 공중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축산물을 수출하는 국가의 정부기관에 대하여 법 제1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의 기재와 관련한 위생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0.12.11></p> <p>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등의 제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수입신고필증의 교부는 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교환 방식으로 할 수 있다.</p> <p><신설 2000.12.11></p> |

⑧영 제18조의4제1호에서 "무작위표본
검사의 대상으로 농림부령이 정하는
축산물"이라 함은 별표 7 제2호라목에
서 규정하는 축산물을 말한다.

<신설 2002.8.5, 2006.10.4>

제22조 (수입축산물의 통관 등) ①검역
원장은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
사결과 불합격한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수입신고인으로 하여금 당해 축산
물을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당해 축산
물의 통관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에
불합격한 사유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중 수분함량에 관한 것으
로서 가공·가열·용도제한 등의 방법으
로 위생상 위해요인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입신고
인으로 하여금 그 위해의 요인을 제거
하게 한 후 다시 수입신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12.11>

| 축산물가공처리법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
|---|--------------|--|
| <p>제16조 (합격표시) 검사관·자체검사원 또는 영업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 결과 검사에 합격한 축산물(원유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p> <p>제17조 (미검사품의 반출금지) 영업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이하 "미검사품"이라 한다)을 작업장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p> | | <p>②법 제1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축산물의 검사를 실시하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은 당해 수입축산물의 검사시료를 채취하기 위하여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에의 출입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당해 보세구역의 관리자에게 제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p> <p><개정 2006.10.4></p> <p>제23조 (합격표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표시는 별표 8에 의한다.</p> |

제18조 (검사불합격품의 처리) 영업자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한 자는 제11조·제12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또는 축산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 (출입·검사·수거) ①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업자로 하여금 축산물의 검사결과 및 수출입

제19조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축산물의 처리)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한 자는 법 제11조, 법 제12조 또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또는 축산물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소각·매몰 등의 방법에 의한 폐기
 2. 식용외의 다른 용도로의 전환
 3. 수출국으로의 반송 또는 다른 나라로의 반출(수입한 축산물에 한한다)
- ②검사불합격품을 소각·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③검사불합격품을 식용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축산물판매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물판매업"이라 함은 제21조제6호의 축산물판매업을 말한다.

제24조 (검사불합격품의 용도전환) 영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을 식용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25조 (영업장의 출입·검사·수거) ①법 제1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장의 출입·검사·수거는 농림부장관, 검역원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 축산물가공처리법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
|---|--------------|---|
| <p>실적 등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관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에 출입하여 축산물·시설·서류 또는 작업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축산 물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작업장·축산물운반업 및 대통령 령이 정하는 축산물판매업을 제외한 그 이후의 판매·유통단계에 있는 축산 물에 대한 위생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 청장이 행한다. <개정 1998.2.28, 1999.2.5, 2001.12.31, 2004.1.29></p> <p>②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은 미검사품을 조사하기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관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식품위생 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 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출입하여 미 검사품의 처리·가공·사용·보관·운반·진 열 또는 판매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축산물</p> | | <p>군수·구청장이 공중위생 또는 축산물 의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다만, 법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의 영 업장에 대하여는 시·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이 연 1회 이상 위생검 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1, 2004.8.4></p> <p>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27조, 법 제28조, 법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나 명령을 받은 영업자의 영업장에 대한 출입·검사·수거는 그 처 분·명령일(영업정지의 경우에는 정지기 간의 만료일)부터 6월 이내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처분이나 명령을 받은 영업자가 그 처분 또는 명령의 이행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 를 실시한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p> |

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4.1.29, 2006.3.24>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수거를 하는 검사관 또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4.1.29>

원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출입·검사등기록부에 검사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영업자에게 교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제26조 (축산물의 수거·검사 등) ①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축산물과 그 수거량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00.12.11>

②검사관이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을 수거한 때에는 당해 영업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1, 2002.8.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을 수거한 검사관은 그 수거한 축산물을 수거한 장소에서 봉합하고 검사관 및 피수거자의 인장 등으로 봉인한 후 지체 없이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그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1, 2002.8.5>

④검역원장 또는 시·도지사는 검사관으로 하여금 축산물의 수거·검사를 하게 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수거검사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 축산물가공처리법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
|---|--------------|---|
| <p>제20조 (축산물위생검사기관) ①농림부장관은 제4조제3항, 제12조, 제15조제2항 또는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 등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p> | | <p>최종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p> <p><개정 2000.12.11, 2002.8.5></p> <p>제27조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 ① 검역원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관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개정 2004.1.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립수의과학검역원 2. 축산연구소 3. 식품의약품안전청 4.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5. 시·도가축위생시험소,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위생검사기관 <p>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외의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은 검역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검사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기관 또는 단체중에서 검역원장이 지정한다.</p> <p>③검역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p> |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별로 검사대상 및 검사항목을 별도로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2.8.5]

제28조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8.4>

1. 검사실 평면도
2. 검사에 필요한 기계 및 기구류 보유 내역
3.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빙하는 서류
4. 검사업무수행에 관한 규정

② 제1항제4호의 검사업무수행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4.8.4>

1. 검사대상 축산물 및 검사항목

| 축산물가공처리법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
|----------|--------------|---|
| | | <p>2. 제품종류별 검사기간</p> <p>3. 검사의 절차와 시료채취에 관한 사항</p> <p>4. 검사수수료에 관한 사항</p> <p>5. 검사증명의 발행에 관한 사항</p> <p>6.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p> <p>7. 그 밖에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p> <p>③검역원장이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당해 신청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축산물위생검사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p> <p>④그 밖에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전문개정 2002.8.5]</p> <p>제28조의2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변경 신고 등) ①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의한</p> |

지정사항변경신고서에 축산물위생검사 기관지정서를 첨부하여 검역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
2. 검사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3. 검사대상 축산물 및 검사항목
4. 검사수수료

②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검사업무의 휴지·폐지 또는 재개시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의하여 검역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8.5]

제28조의3 (보고 및 지도·감독 등) ①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검사결과를 매반기 종료후 1월 이내에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의하여 검역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②검역원장은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검사능력을 관리하거나 그 운영에 대한

| 축산물가공처리법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
|--|--------------|---|
| <p>③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한 때 2. 농림부령이 정하는 검사관련 장부를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 | | <p>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능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④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별지 제15호의 3서식의 검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검사대장은 최종기재일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02.8.5]</p> <p>제28조의4 (검사업무의 정지 등)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검사업무의 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9의2와 같고, 법 제20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은 별표 9의3과 같다.</p> <p>[본조신설 2004.8.4]</p> |

3. 농림부령이 정하는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한 때

4. 검사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수행한 때

제20조의2 (축산물위생감시원) ①제1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의 직무 그 밖의 축산물위생에
관한 지도 등을 하게 하기 위하여 농
림부(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소속기관
을 포함한다),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자치구에 축산물위생감시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위생감시
원의 자격·임명·직무범위는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9]

제20조의2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직무범위 등) ①법 제20조의2제1항에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소속기관"
이라 함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하 "
검역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
산물위생감시원은 농림부장관, 국립수
의과학검역원장(이하 "검역원장"이라
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
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6.9.22>

1. 위생사·식품기술사·식품기사·식품산
업기사 또는 영양사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서의학·한의학·약학·한약학·수의학·
축산학·축산가공학·화학·화학공학·

| 축산물가공처리법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
|----------|---|---------------|
| | <p>식품가공학·식품화학·식품제조학·식품공학·식품과학·식품영양학·위생학·발효공학·미생물학·생물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p> <p>3. 1년 이상 축산물위생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p> <p>③축산물위생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한 점검·지도 2.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의 확인·지도 3.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금지의 위반여부에 관한 점검·지도 4. 법 제33조제1항제7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판매금지 축산물의 판매행위에 대한 점검·지도 | |

제20조의3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①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축산물위생의 관리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하게 하기 위하여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감시원의 위촉·해촉·업무범위와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9]

5.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압류·폐기

6. 그 밖에 행정처분의 이행여부 등 법령에 의한 의무이행사항의 이행여부 확인·지도

[본조신설 2004.7.29]

제20조의3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위촉 등) ①법 제2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1. 축산물의 위생 및 유통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
2. 소비자단체, 축산관련 생산자단체 또는 협회(이하 "단체등"이라 한다)의 소속직원 중에서 당해 단체등의 장이 추천한 자

②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단체등에서 퇴직하거나 해임된 때

| 축산물가공처리법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
|----------|---|---------------|
| | <p>2. 소속단체등의 장이 해촉을 요구한 때</p> <p>3. 사망·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p> <p>③명예감시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축산물위생감시원이 행하는 축산물의 압류·폐기 지원</p> <p>2. 법령 위반행위자에 대한 신고 및 정보제공</p> <p>3. 그 밖에 축산물의 위생 및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홍보·계몽 등의 업무</p> <p>④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⑤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p> <p>[본조신설 2004.7.29]</p> | |

제5장 영업의 허가 및 신고 등

제21조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4.1.29>

1. 도축업
2. 집유업
3. 축산물가공업
- 3의2. 식육포장처리업
4. 축산물보관업
5. 축산물운반업
6. 축산물판매업
7. 삭제 <1999.2.5>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영업의 세부종류와 범위)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10.31, 2004.7.29, 2006.9.22>

제29조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 축산물가공처리법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
|----------|--|---------------|
| | <p>1. 도축업 : 가축을 식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도살·처리하는 영업</p> <p>2. 집유업 : 원유를 수집·여과·냉각 또는 저장하는 영업. 다만,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를 원료로 하여 가공하는 경우로서 원유의 수집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p> <p>3. 축산물가공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p> <p>가. 식육가공업 : 식육가공품을 만드는 영업</p> <p>나. 유가공업 : 유가공품을 만드는 영업</p> <p>다. 알가공업 : 알가공품을 만드는 영업</p> <p>3의2. 식육포장처리업 :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p> <p>4. 축산물보관업 : 축산물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관하는 냉동·냉장업. 다만,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축산물을 제품의 원료로</p> | |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축산물운반업 : 축산물(원유를 제외한다)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축산물을 당해 영업자의 영업장에서 판매하거나 처리·가공 또는 포장할 목적으로 운반하는 경우와 당해 영업자가 처리·가공 또는 포장한 축산물을 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축산물판매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가. 식육판매업 :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 다만,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포장육을 가공없이 판매하는 소매업을 제외한다.

나.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 식육중 부산물로 분류되는 내장(간·심장·위장·비장·창자·콩팥 등을 말한다)과 머리·다리·꼬리·뼈·혈액 등 식용이 가능한 부분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축산물가공처리법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
|--|---|---|
| <p>제22조 (영업의 허가) ①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축업·집유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항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업장별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4.1.29, 2006.3.24></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p> | <p>다. 우유류판매업 : 우유대리점·우유보급소 등의 형태로 직접 마실 수 있는 유가공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p> <p>라. 축산물수입판매업 :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p> <p>7. 삭제 <2000.10.31></p> | <p>제30조 (영업허가의 신청 등)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축산물보관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8.4, 2006.10.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2. 삭제 <2000.12.11> 3. 자체검사원 지정승인신청서(도축업 및 집유업에 한한다) 4. 검사위탁계약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6.3.24>

1.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2. 제21조제1항제1호의 도축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동일 작업장에서 도살·처리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 나. 동일 작업장에서 다른 종류의 가축을 도살·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수 없다. <개정 2001.12.31, 2006.3.24>
 1. 당해 시설이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제22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사항)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축업의 경우: 계류장·작업실 또는 냉장·냉동실
2. 집유업의 경우: 저유조
3.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 또는 포장실

위탁하여 검사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 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물대장등본
 - ③허가신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법 제22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신청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서류외에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축산물가공처리법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
|--|---|--|
| <p>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취소된 허가 같은 종류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 우</p> <p>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 함한다)가 취소된 허가 같은 종류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p> <p>4.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금치산자 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 니한 자인 경우</p> <p>5.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인 경우</p> <p>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 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를 하는 때 에는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 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6.3.24></p> | <p>4. 식육포장처리업의 경우: 원료보관실· 식육처리실·포장실 또는 냉동·냉장실</p> <p>5. 축산물보관업의 경우: 냉동·냉장실 [전문개정 2006.9.22]</p> | <p><개정 2006.6.30, 2006.10.4></p> <p>④허가관청은 영업의 허가를 하는 때에 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허 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 관청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영업허가관 리대장을 작성·보관하거나 동 서식에 의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p> <p>⑤영업자는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 어 못쓰게 되어 허가증의 재교부를 받 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허가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해 당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 여야 한다. <개정 2006.6.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허가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 서 2. 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못 쓰게 된 허가증 |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6.3.24>

제31조 (영업의 변경허가 등) ①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1. 영업자의 성명(영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2.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 제22조에 따른 시설을 제외한 시설

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자가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외에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1. 허가증
2.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 축산물가공처리법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
|--|--------------|--|
| <p>제23조 (조건부 허가 및 조건이행의 신고)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p> | | <p>제32조 (휴업등의 신고) ①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휴업(재개업·폐업) 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동 기간이 만료되어 재개업하는 때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10.4></p> <p>②도축업 및 집유업의 영업자가 영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예정일 5일전까지 하여야 한다.</p> <p>제33조 (조건부허가기간등)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개요 2. 영업장의 위치도 |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제23조 (조건부 허가기간의 연장) 법 제2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건부 허가를 받은 영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정으로 작업장 부지의 조성 또는 장비의 도입이 지연되는 경우
3. 기타 기술적인 문제로 시설의 설치가 지연되는 등의 경우

3. 시설내역 및 배치계획도

4. 사업계획부지의 사용승낙서(신청인이 사업계획부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1.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사업계획부지의 소유자인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물대장등본
3.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허가관청이 조건부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조건부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④조건부영업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12월의 범위안에서 허가

| 축산물가공처리법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
|----------|--------------|---|
| | | <p>관청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6.6.30></p> <p>⑤조건부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허가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조건부허가기간연장신청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p> <p>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허가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허가관청은 6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6.30></p> <p>제34조 (조건이행의 신고등)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시설을 갖추어 허가관청에 신고하는 때에는 제30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허가관청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시설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허가증을</p> |

제24조 (영업의 신고) ①제21조제1항제5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6호의 축산물판매업 중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6.3.24>

교부하여야 한다.

제35조 (영업의 신고등)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운반업 또는 축산물판매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1>

1.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2. 삭제 <2000.12.11>
3. 시설사용계약서(축산물운반업에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신고를 함에 있어서 법 제21조제1항제6호의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동일인이 같은 시설안에서 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및 축산물수입판매업중 2이상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영업별로 각각 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같은 시설안에서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0.4>

| 축산물가공처리법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
|---|--------------|---|
|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p> | | <p>③신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별지 제25호서식의 영업신고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거나 동 서식에 의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p>④영업자가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신고필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고필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2. 신고필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못쓰게 된 신고필증 <p>제36조 (신고사항의 변경등의 신고) ①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신고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신고관청에 그</p> |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6.3.24>

제25조 (품목제조보고)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축산물을 가공하거나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식육을 포장처리하는 때에는 그 품목의 제조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영업자의 성명(영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2.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업장의 소재지
4. 영업장의 면적
5. 축산물운반용 차량수(축산물운반업에 한한다)
6. 삭제 <2000.12.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자가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필증외에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휴업·재개업·폐업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 (품목제조의 보고등)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제조의 보고를 하고자 하는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 축산물가공처리법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
|--|--------------|---|
| <p>방법설명서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2.5, 2006.3.24></p> | | <p>서류를 첨부하여 제품생산 개시전이나 제품생산 개시후 7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1, 2002.8.5, 2004.8.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조방법설명서 2.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발급한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검토서(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축산물에 한한다) 3. 유통기간 및 기간설정 사유서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제조의 보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변경보고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용 가공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해 품목의 제품명 |

2.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의한 주원료

3. 유통기간

제38조 (품목제조보고관리대장) 허가관청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제조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30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관리대장에 기록·보관하거나 동 서식에 의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1>

제39조 (영업허가 등의 보고)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법 제22조 내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허가를 하였거나 영업의 신고를 수리한 사항을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매월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분기별로 종합하여 분기종료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축산물가공처리법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
|--|--------------|--|
| <p>제26조 (영업의 승계) ①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p> <p>②「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p> <p><개정 2002.1.26, 2005.3.31, 2006.3.24></p> <p>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p> <p>④제22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p> | | <p>제40조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①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해당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로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 양도·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6.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업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 2. 상속의 경우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 : 해당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p>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p> |

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의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1. 영업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2. 상속의 경우 : 호적등본

③허가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인이 법 제22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서류외에 신원확인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6.30, 2006.10.4>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가 제31조제2항제2호 또는 제3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를

| 축산물가공처리법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
|---|----------------------------------|--|
| <p>제27조 (허가의 취소 등) ①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01.12.31, 2006.3.24></p> <p>1. 제4조제5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항·제3항, 제13조제2항</p> | <p>제24조 삭제 <2006.9.22></p> | <p>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02.8.5, 2006.6.30></p> <p>⑤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인에게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p> <p>제41조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p> <p>제42조 (행정처분통보 등) ①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보관하거나 동 서식에 따른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p> <p>②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였거나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p> |

- 제4항, 제14조제1항, 제17조, 제18조, 제22조제4항, 제25조, 제29조제2항·제3항, 제30조제2항·제3항, 제31조,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 2. 제2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 3. 제2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 4. 제35조, 제36조제1항·제2항 또는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 5. 「축산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도축장에서 반출한 때(도축장의 경영자에 한한다)
- 6. 「축산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급판정업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도축장의 경영자에 한한다)
- 7.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해서 6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영업소를 폐쇄한 때에는 그 영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소 또는 폐쇄사유, 취소 또는 폐쇄일자 등을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통보하여야 한다.

③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제47조제1항의 위생교육의 실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 축산물가공처리법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
|--|--|---|
| <p>8.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양수인등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등에 대하여 처분의 절차를 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이 양수·상속 또는 합병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농림부령으로 정한다.</p> <p>제28조 (과징금처분) ①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5항·제9</p> | <p>제25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기준)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개정 2002.6.29, 2004.7.29, 2006.9.22></p> <p>1. 법 제5조제2항, 법 제6조제2항,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8항, 법 제11조</p> | <p>제43조 (과징금부과제외대상) 법 제2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부과제외대상은 별표 11과 같다.</p> |

조제2항·제17조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31, 2006.3.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
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
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1.12.31, 2006.3.24>

제1항, 법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법 제13조제2항·제4항, 법 제14조제2
항, 법 제18조, 법 제22조제5항, 법 제
31조제2항 또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
정에 위반한 경우

2.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
은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을 감안하
여 별표 3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③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
한 과징금의 금액을 그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
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
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2.6.29, 2006.9.22>

제26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
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 축산물가공처리법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
|----------|---|---------------|
| | <p>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처분의 대상인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9, 2006.9.22></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납부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9, 2006.9.22></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납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p> | |

제29조 (건강진단) ①농림부령이 정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로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건강진단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는 그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영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종업원으로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건강진단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한다. <개정 2002.6.29, 2006.9.22>

제44조 (건강진단대상자 등) ①법 제2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는 가축의 도살·처리, 원유의 수집·여과·냉각·저장 또는 축산물의 채취·가공·포장·보관·운반·판매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 한다.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에서 완전포장된 축산물을 보관·운반 또는 판매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4.8.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은 위생분야종사자들의건강진단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5조 (영업에 종사할 수 없는 자) 법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할 수 없거나 영업에 종사할 수 없는 자는 다음 각호의 질병이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02.8.5, 2006.10.4>

1.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군전염병중 소화기계 전염병
2.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3군전염병중 결핵(비전염성

| 축산물가공처리법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
|---|--------------|--|
| <p>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 실시방법과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질병의 종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p> <p>제30조 (위생교육) ①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은 영업자 및 농림부령이 정하는 영업자·종업원과 자체검사원은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6.3.24></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로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는 그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③영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아야 하는 종업원 또는 자체검사원으로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검사업무 또는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④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을 한</p> | | <p>인 경우를 제외한다)</p> <p>3. 화농성질환 및 전염성피부병</p> <p>4. 삭제 <2000.12.11></p> <p>제46조 (위생교육대상자) ①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10.4></p> <p>1.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영업자(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자로 하고, 1인의 영업자가 2 이상의 영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영업자가 직접 위생관리를 하지 아니하는 영업장의 경우에는 당해영업장의 위생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자로서 영업자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같다)</p> <p>2. 자체검사원</p> <p>3. 영업장의 종업원</p> <p>4. 법 제27조 및 법 제28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영업자</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대상자</p> |

후 또는 검사업무나 영업에 종사한 후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실시기관·실시비용·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중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교육참석 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도서·벽지에 소재하고 있는 영업장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하여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숙지·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위생교육에 갈음할 수 있다.

제47조 (위생교육기관 등) ①법 제30조에 따른 위생교육의 실시기관(이하 "위생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농림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생교육기관을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위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위생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시설장비 등에 대한 기준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10.4]

제48조 (교육시간) ①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아야 할 자의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따른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

| 축산물가공처리법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
|----------|--------------|---|
| | | <p>반업 또는 축산물판매업을 신규로 하려는 자 :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지정한 날 이내에 6시간</p> <p>2. 법 제27조 및 법 제28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영업자 :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4시간</p> <p>3. 자체검사원 : 매년 4시간</p> <p>4. 자체검사원이 되려는 자 : 24시간</p> <p>5.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검사업무를 행하는 종업원 : 매년 4시간. 다만, 검사업무를 행하는 종업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1인이 교육이수 후 전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p>②법 제21조에 따른 영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은 영업자·자체검사원 또는 종업원이 위생교육을 실시한다.</p> <p>[전문개정 2006.10.4]</p> <p>제49조 (교육교재 등) ①위생교육기관은 축산물위생·개인위생·축산물위생시책·품질관리 등에 관한 교육교재를 편찬하여 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p> |

② 위생교육기관은 위생교육을 받은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위생교육기관이 위생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교육후 1월 이내에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1>

④ 위생교육기관은 수료증교부대장 등 교육에 관한 기록서를 작성·비치하고 이를 교육을 완료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0조 (교육실시비용 등) ① 위생교육기관은 교육대상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교육실시비용을 받을 수 있다.

1. 강사수당
2. 교육교재편찬비
3. 교육에 필요한 실험재료비 및 현장 실습비
4. 기타 교육관련 사무용품구입비 등 소요경비

②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위생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축산물가공처리법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
|--|--------------|--|
| <p>제31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도축업 또는 집유업의 영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축의 도살·처리 또는 집유의 요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②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을 함에 있어서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에 관한 사항 2. 가축과 축산물의 검사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시설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4. 축산물의 위생적인 가공·포장·보관·운반·유통·진열·판매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가축 및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 | | <p>제51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①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와 종업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04.8.4></p> <p>②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와 종업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00.12.11></p> <p>③축산물판매업의 신고를 수리한 신고관청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에게 영업신고필증을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신설 1999.2.18></p> |

제31조의2 (축산물의 자발적 회수) ①영업자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는 당해 축산물로 인하여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당해 축산물의 회수·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회수·폐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9]

제26조의2 (축산물의 자발적 회수) ①법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자발적으로 회수·폐기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축산물의 회수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영업을 허가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허가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회수계획에 따라 당해 축산물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2>

1. 축산물의 명칭
2. 영업자 및 그 업소의 명칭·상호, 판매경로, 판매량,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3. 회수사유
4. 회수방법·기간 및 장소
5. 회수한 축산물의 처리방법
6. 당해 회수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영업장의 주소재지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의 게재가 포함되어야 한다)

| 축산물가공처리법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
|---|---|--|
| <p>제32조 (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제조방법·성분·영양가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표시·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1.29></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과대</p> |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을 회수한 자는 회수기간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축산물의 명칭 2. 생산량·판매량·회수량 및 미회수량 등이 포함된 회수실적 3. 미회수량에 대한 내역 및 조치계획 4.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p>③허가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회수계획 또는 회수결과가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04.7.29]</p> | <p>제52조 (허위표시 등의 범위와 적용)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포장 및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곡·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축산물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p> |

광고 또는 과대포장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가·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2.8.5, 2004.8.4, 2006.10.4>

1.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한 사항 또는 법 제22조·법 제24조 및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이나 신고 또는 보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2.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3. 제품 중에 함유된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4.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5.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 또는 발견한 사실로서 축산가공학·영양학·수의공중보건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외의 표시·광고. 다만, 축산가공학·영양학·수의공중보건학 등에 관한 문헌을 인용하여 문헌의 내용을 정확히

| 축산물가공처리법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
|----------|--------------|--|
| | | <p>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문헌명·발표 연월일을 명시하는 표시·광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6. "주문쇄도"·"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p> <p>7. 외국어의 사용 등으로 외국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외국과 기술제휴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다만, 법령에 의하여 외국상표를 사용하였거나 기술제휴한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8.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이거나 제품의 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게 하는 광고</p> <p>9. "최고"·"가장 좋은" 또는 "특" 등의 표현이나 "특수제법"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이 경우</p> |

외국어중 "베스트"."모스트"."스페셜" 등도 같다.

10.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도안·사진·음향 등을 사용하는 표시·광고

11.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운용하고 있는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또는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운용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이를 작성·운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11의2.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지정을 받은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12.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판매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 축산물가공처리법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
|--|--------------|---|
| <p>제33조 (판매 등의 금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다만,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개정 1999.2.5, 2004.1.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것 3. 병원성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 | <p>범위는 별표 14와 같다.</p> <p><개정 2004.8.4></p> <p>③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과대포장의 범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개정 2004.8.4, 2006.10.4></p> <p>제53조 (판매 등이 허용되는 축산물) 법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사용·수입·보관 또는 진열을 할 수 있는 축산물은 동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축산물로 한다.</p> <p><개정 2000.12.11, 2006.10.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또는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 2.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농림부 |

첨가 기타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5.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7.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

8.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처리·가공 또는 제조한 것

9. 가공기준에 따라 당해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

②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또는 집단급식소의 영업자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식육을 가공·

장관이 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해의 정도가 경미하여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것

| 축산물가공처리법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
|---|--------------|---------------|
| <p>사용·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때에는 당해 영업의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대하여 그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정지 기타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p> <p><개정 2004.1.29, 2006.3.24></p> <p>제33조의2 (위해평가) ①농림부장관은 국내외에서 위해성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으나 위해성이 의심될 수 있는 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축산물이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규정에 의한 축산물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물의 위해요소를 신속히 평가하여 그 위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국민건강을 위하여 신속한 예방조치가 필요한 축산물에 대하여는 판매하거나 판매할</p> | | |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

③농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지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금지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평가 결과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심의 결과 일시금지 조치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된 축산물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지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26조의3 (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33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일시금지 조치로 인하여 영업상의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게 되는 영업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6.9.22]

| 축산물가공처리법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
|--|--|---------------|
| <p>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평가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3.24]</p> | <p>제26조의4 (위해평가의 대상 등) ①법 제33조의2제6항에 따른 축산물의 위해평가(이하 "위해평가"라 한다)의 대상·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위해평가의 대상</p> <p>가.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가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판매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진열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축산물</p> <p>나. 국내외의 연구·검사기관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원료 또는 성분 등을 검출한 축산물</p> <p>다. 위원회가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축산물</p> <p>라. 새로운 원료·성분 또는 기술을 사용하여 처리·가공되거나 안전성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축산물</p> | |

2. 평가대상인 위해요소

가. 축산물에 잔류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식품첨가물, 동물용의약품, 환경오염물질 및 처리·가공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 등 화학적 요인

나. 축산물의 형태 및 이물(異物) 등 물리적 요인

다. 식중독 유발세균, 항생제내성균 등 미생물적 요인

3. 위해평가의 방법 및 절차

가. 위해평가는 축산물에 존재하는 위해요소의 인체 내 독성을 확인하는 위험성 확인과정, 위해요소의 일일섭취허용량 등 인체노출허용량을 산출하는 위험성 결정과정, 위해요소가 인체에 노출되는 양을 산출하는 노출평가과정 및 위험성 확인과정·위험성의 결정과정·노출평가과정의 결과를 종합하는 위해도(危害度) 결정과정을 거쳐 당해 축산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한다. 다만, 농림부장관이 현재의 기술수준이나 위해요소의 특

| 축산물가공처리법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
|----------|---|---------------|
| | <p>성에 따라 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p> <p>나. 위해평가는 검역원장이 실시한다. 다만, 위해평가 업무의 효율성·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국내외의 대학, 축산물위생 관련 학회 또는 축산물위생 관련 전문연구·검사기관에 위해평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검역원장이 부담한다.</p> <p>다. 농림부장관은 제1호에 따른 위해평가의 대상에 대하여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 또는 국내외의 연구·검사기관에서 이미 위해평가를 실시하였거나 위해요소에 대한 과학적 시험·분석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 또는 시험·분석 자료를 위원회의 위해평가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p> <p>②위해평가의 방법·기준 및 절차 등에</p> | |

제6장 감독

제34조 (생산실적 등의 보고)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축실적, 집유실적, 축산물가공품 또는 포장육의 생산실적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4.1.29]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6.9.22]

제54조 (생산실적 등의 보고)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축산물의 생산실적 등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자가 생산실적 등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출력물에 의하여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02.8.5, 2004.8.4>

1. 도축업의 경우 :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하여 월별 도축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2. 집유업의 경우 :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하여 월별 집유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3.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경우 :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하여 연

| 축산물가공처리법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
|--|--------------|--|
| <p>제35조 (시설개수)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시설이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영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개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6.3.24></p> <p>제36조 (압류·폐기 또는 회수) ①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관 또는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축산물위생감시원(이하 "축산물위생감시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이를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그 축산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용도·처리방법 등을 정하여</p> | | <p>도별 생산실적을 당해연도 종료후 1월 이내</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당해 보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검역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8.4></p> |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1.12.31, 2004.1.29>

1. 제4조제5항 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축산물
2.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축산물
3.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축산물
4.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살·처리, 집유, 가공·포장 또는 보관한 축산물
5. 삭제 <1999.2.5>
6. 제3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축산물

②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영업자에 대하여 유통 중인 당해 축산물을 회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당해 축산물의 원료·제조방법·성분 또는 그 배합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1.12.31>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회수·폐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7조 (축산물의 회수명령 등) ①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의 회수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회수대상 축산물의 유통·판매를 중지하고, 5일 이내에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계획을 수립하여 회수명령을 한 관할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회수명령을 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계획에 따라 당해 축산물을 회수한 후 회수기간 종료일부터 7일

| 축산물가공처리법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
|---|---|---------------|
| <p>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 또는 폐기를 하는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개정 2001.12.31, 2004.1.29></p> | <p>이내에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결과를 관할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관할행정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회수계획 또는 회수결과가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04.7.29]</p> <p>제27조의2 (축산물 회수의 지도·감독 등)</p> <p>①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의2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을 회수하는 자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수기간 중에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p> <p>②제26조의2제3항 또는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완요구를 받은 자는 당해 축산물에 대한 보완조치를 완료한 후 7일 이내에 보완을 요구한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p> | |

③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회수명령을 받은 영업자가 회수기간내에 당해 축산물을 회수하여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요구를 받은 자가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 하여금 이를 압류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을 압류하는 때에는 당해 축산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압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법 제31조의2,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회수한 축산물을 소각·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식용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3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4.7.29]

제28조 (공표의 방법)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축산물의 회수광고를 서울특별시에

제37조 (공표) ①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에게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게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의 공표를 명

제55조 (압류증) 영 제2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을 압류하는 때에 교부하는 압류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4.8.4]

| 축산물가공처리법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
|---|--|---|
| <p>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8조 (폐쇄조치) ①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 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재개업하거나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여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에 계속</p> | <p>서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31, 2004.7.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축산물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표제 2. 품목명 3. 회수대상 축산물의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4. 회수사유 5. 회수방법 6. 회수하는 영업자의 명칭·전화번호 및 주소 7. 기타 회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p>제56조 (영업소의 폐쇄조치)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폐쇄조치를 하는 때에는 영업소명·처분내용·처분기간 등을 기재한 게시문을 당해 처분을 받은 영업소의 출입구나 그 밖의 잘보이는 곳에 붙여 두어야 한다.</p> |

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영업소를 폐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6.3.24>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당해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의 폐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를 폐쇄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39조 (포상금) 농림부장관은 제4조제5항·제7조제1항·제10조·제22조제1항·제24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

제29조 (폐쇄조치절차의 예외) 법 제3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지 아니하고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3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위반사유로 인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가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2. 폐쇄대상 영업소가 영업을 계속함으로써 인수공통전염병·식중독 등 공중위생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0조 (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04.7.29>
②삭제 <2004.7.29>

제57조 (포상금의 지급방법 등)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기소중지 또는 기소

| 축산물가공처리법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
|--|--|---|
| <p>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식육을 가공·포장·사용·보관·운반·진열 또는 판매한 자를 관계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 및 검거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1.29></p> <p>제40조 (보조금)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축산물의 위생적인 처리·가공·포장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업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4.1.29></p> <p>②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축산물위생검사기관 또는 위생교</p> | <p>③삭제 <2004.7.29></p> <p>④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p> | <p>유예의 결정이 있는 후에 별지 제37호 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와 검거 또는 검거에 협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그 공로 등을 참작하여 배분액 또는 배분비율을 제1항의 포상금지급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p> |

육질시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04.1.29>

1. 축산물의 수거에 소요되는 경비
2.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의 검사에 소요되는 경비
3.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위생감시원 및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4.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5.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폐기 또는 회수에 소요되는 경비

제40조의2 (가축외의 동물 등의 검사)

①가축외의 동물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식용의 목적으로 도축·처리하는 자는 당해 동물과 그 지육·정육·내장 그 밖의 부분에 대하여 검사관에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검사관은 제1항의 검사를 한 때에는 그 의뢰인에게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축산물가공처리법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
|---|--------------|---|
| <p>③검사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한 동물 또는 그 지육·정육·내장 그 밖의 부분에 대하여 소각·매몰 등의 방법에 의한 폐기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의뢰자에게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④의뢰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한 동물 또는 그 지육·정육·내장 그 밖의 부분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관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p> <p><신설 2004.1.29></p> <p>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신청절차·신청요건, 검사의 방법·기준 및 검사 결과의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01.12.31]</p> <p>제41조 (수수료) ①가축의 도살·처리 또는 집유와 검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 및 교육에 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p> | | <p>제58조 (도살·처리의 수수료 등) ①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업 또는 집유업의 영업자는 가축을 도살·처리하거나 집유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수</p> |

<개정 2006.3.24>

수료를 정하여 받을 수 있다.

1. 도축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가. 도축장시설 사용비

나. 소요인건비

다. 내장처리비

라. 식육의 냉장·냉동비

마. 식육의 포장비

바. 공해방지경비 등 기타 소요경비

2. 집유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가. 원유수집과 관련된 검사비·운송비

나. 집유장에서 원유의 여과·냉각·저장을 위해 사용한 시설사용비

다. 소요인건비

라. 공해방지경비 등 기타 소요경비

②시·도지사는 축산물의 수급 또는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최고한도액을 정하는 등 수수료 조정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9조 (검사수수료 등) ①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1조제1항

| 축산물가공처리법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
|----------|--------------|--|
| | | <p>본문 및 제2항, 법 제12조제1항 본문, 동조제2항·제4항, 법 제12조의3제4항, 법 제15조제2항, 법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는 자는 축산물위생 검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개정 2002.8.5, 2006.10.4></p> <p>②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제7조의2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 등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담당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p> <p>③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제7조의3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대한 교육을 받는 자는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p> <p>④제1항 및 제2항의 수수료는 검사기관이 국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그 밖의 기관인 경우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p> |

②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2조 (공중위생상 위해시의 조치) 농림부장관은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그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43조 (청문)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취소

다만,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납부하는 수수료중 법 제12조제4항·법 제12조의3 제4항 및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8.5, 2006.10.4>

제60조 (허가 등 수수료)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 별표 15와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 축산물가공처리법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
|--|--|---------------|
| <p>2.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 위생검사기관의 지정취소</p> <p>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의 취소</p> <p>[전문개정 2004.1.29]</p> <p>제4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4.1.29></p> | <p>제31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농림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검역원장에게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성분규격 및 위생등급에 관한 기준의 고시 2.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한시적 인정 3.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에 대하여 사용하는 용기·기구·포장 또는 검인용색소에 관한 규격 등의 고시 4.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의 고시 5.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고시 | |

6.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 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받은 영업자에 대한 기술·정보의 제공 및 교육훈련 실시
7.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 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한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
8. 법 제12조의3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검사결과의 통보·이의신청의 접수·재검사 여부 결정통보 및 재검사 결과 통보
9.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 중 검역원 소속 공무원의 검사관 임명
10.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입축산물의 신고수리·검사 및 국내외 검사기관의 인정
11.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축산물의 검사결과와 수출입실적 등의 보고 및 검사관 등에 대한 검사 및 수거 명령
12. 법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지정취소 및 검사업무의 정지명령

| 축산물가공처리법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
|----------|---|---------------|
| | <p>13. 법 제24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에 따른 축산물판매업 중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의 신고수리</p> <p>14.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 (제1호 내지 제13호 및 제17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한한다)</p> <p>15. 법 제28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제14호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에 한한다)</p> <p>16. 법 제34조에 따른 생산실적 등의 보고 명령</p> <p>17. 법 제35조에 따른 시설개수 명령</p> <p>18. 법 제36조에 따른 압류·폐기 또는 회수 명령</p> <p>19. 법 제38조에 따른 영업소의 폐쇄조치</p> <p>20. 법 제43조에 따른 청문의 실시</p> <p>21. 법 제47조(제5호의2를 제외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p> <p>②농림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보조원의 채용·배치에 관한 사항을 「가축전염병</p> | |

②이 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제8장 벌칙

제45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9, 2006.3.24>

1.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 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한 자
2.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 또는 식육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자
3.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에 대한 검사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예방법」 제9조에 따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장에게 위탁한다.

③시·도지사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법 제25조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의 품목제조보고를 받을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전문개정 2006.9.22]

| 축산물가공처리법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
|---|--------------|---------------|
| <p>4.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p> <p>5.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p> <p>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9, 2006.3.24></p> <p>1. 제4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 또는 유통을 행한 자</p> <p>2.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작업장에서 그 규격 등이 적합하지 아니한 용기등을 사용한 자</p> <p>3.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집유하거나 축산물의 가공·포장 또는 보관행위를 한 자</p> | | |

4. 제12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식육에 대한 검사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집유하는 원유에 대하여 검사관 또는 자체검사원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축산물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수입신고를 한 자
6.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미검사품을 작업장밖으로 반출한 자
7.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또는 축산물을 처리한 자
- 7의2.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8. 제3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3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표시·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한 자
- 9의2. 제36조제1항·제2항 또는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 축산물가공처리법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
|--|--------------|---------------|
| <p>10. 제40조의2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에 불합격한 동물 등을 처리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개정 2004.1.29></p> <p>1.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 체검사원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 체검사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자체 검사원의 요청을 거부한 자 3.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축산물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합격표시를 한 자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9, 2006.3.24></p> <p>1.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 나 허위의 표시를 한 자 2. 제1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 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p> | | |

3. 제1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검사를 한 자
 4. 제15조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 또는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출입·수거·압류·폐기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6.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또는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위반한 자
 7. 제22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의 폐쇄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축산물가공처리법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
|--|---|---------------|
| <p>제4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p> <p>제47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4.1.29, 2006.3.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살·처리한 자 3.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체 위생관리기준을 작성 또는 운용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 또는 운용하지 아니한 자 5. 삭제 <2006.3.24> | <p>제3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②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p> | |

5의2. 제1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보관·운반·진열 또는 판매한 자

5의3. 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25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7.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건강진단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자

8. 제2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건강진단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하게 한 자

9.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자

10. 제3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종업

것으로 본다. <개정 2002.6.29>

③부과권자는 과태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4.7.29>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4.8.4, 2006.10.4>

| 축산물가공처리법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
|--|--------------|---------------|
| <p>원 또는 자체검사원을 그 검사업무 또는 영업에 종사하게 한 자</p> <p>11.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의 도살·처리 또는 집유의 요구를 거부한 자</p> <p>12.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개수명령에 위반한 자</p> <p>13.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자</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1.12.31></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p> <p>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p> | | |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6.3.24>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544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특례) 종전의 축산물위생처리법 제2조의2의 규정은 이 법 시행에 불구하고 200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허가 등 행정기관의 행위와 각종 신고 등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부칙 <제15812호,1998.6.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특례) 법률 제5443호 축산물위생처리법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닭·오리·거위·칠면조·토끼와 사육하는 메추리 및 꿩에 대하여는 법 및 이 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안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가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287호,1998.7.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농림부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수출가금및동가공품의뢰검사규칙
2. 가금등의뢰검사규칙

제3조 (검사성적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 또는 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가공업

| 축산물가공처리법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
|--|--|---|
| <p>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p> <p>제4조 (도축업 또는 집유업 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의 설치허가(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도축업 또는 집유업의 조건부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작업장의 설치허가 및 준공검사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도축업 또는 집유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허가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하되, 수수료는 면제한다.</p> <p>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에 대하여 사용하는 용기·기구·포장과 그 원재료 및 검인용색소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용기등제조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하</p> | <p>제3조 (검사보조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하여 도축장 및 집유장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 시행후 6월 이내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보조원을 두어야 한다.</p> <p>제4조 (식품위생법시행령의 개정) 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7조제4호중 "유가공품·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식육·어류·조개류"를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어류·조개류"로 하고, 동조제5호나목(1) 내지 (3)을 각각 삭제하며, 동목(9)중 "(1)"을 "(4)"로 한다.</p> <p>제15조제1항제1호중 "병조림, 우유를 주원료로 한 식품(이하 "유가공품"이라 한다), 식육을 주원료로 한 식품(이하 "식육제품"이라 한다), 건강보조식품"을 "병조림, 건강보조식품"으로 한다.</p> <p>제16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p> | <p>의 영업자가 이 규칙 시행일전에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통보받은 시험성적서는 이를 이 규칙 제2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검사성적서로 본다.</p> <p>제4조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및 적용특례) ①이 규칙 시행당시 법 부칙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영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자로서 이 규칙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영업의 시설기준이 변경되는 영업자는 1998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도축장 설치허가를 받은 도축장에 대하여는 제2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p> |

여야 하되, 수수료는 면제한다.

제5조 (축산물가공업 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중 이 법에 의한 식육가공품·유가공품 또는 알가공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보존업의 허가를 받은 자중 이 법에 의한 축산물을 보관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축산물보관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허가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하되, 수수료는 면제한다.

제6조 (축산물운반업 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운반업의 신고를 한 자중 이 법에 의한 축산물을 운반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축산물운반업의 신고를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식품위생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 영업이 이 영에 의한 영업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 영에 의한 해당 영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축산물위생처리법 및 식품위생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자와 이 규칙 시행전에 적발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각각 종전의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 제38조 및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에 의한다.

제6조 (위생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교육을 받은 자체검사원 및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위생교육을 받은 축산물가공업·축산물보관업·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은 이 규칙 제46조 내지 제5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합격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합격표시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이 규칙에 의한 합격표시와 함께 사용

| 축산물가공처리법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
|---|--------------|--|
| <p>한 것으로 보며,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우유류판매업 또는 식품등수입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중 이 법에 의한 축산물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축산물판매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포장류 제조업의 신고를 한 자중 이 법에 의한 용기등을 제조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용기등제조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하되, 수수료는 면제한다.</p> <p>제7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식품위생법을 포함한다)에 의한다.</p> <p>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동물보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 | <p>할 수 있다.</p> <p>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축산법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1조제2항중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기·기구·포장 또는 검인용 색소에 관한 규격과 그 제조방법에 관한 기준에 의한다"로 한다.</p> <p>제45조제6호중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 제17조제4항"을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30조"로 한다.</p> |

제11조제1호중 "축산물위생처리법"을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한다.

②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축산물위생처리법 제4조"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로 한다.

③보건환경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 "축산물위생처리법"을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한다.

④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장

⑤축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4항중 "축산물위생처리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도축장"을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도축장"으로 한다.

제55조제2항중 "축산물위생처리법 제2조제7호"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9호"로 한다.

| 축산물가공처리법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
|--|--------------|---|
| <p>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축산물위생처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정부조직법) <제5529호,1998.2.28></p> <p>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18항은 1998년 6월 14일부터, ...<생략>...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4조 생략</p> <p>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7>생략 <18>축산물가공처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9조제1항 단서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p> <p><19> 내지 <34>생략</p> | |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288호,1998.8.1></p> <p>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 ①내지 ④ 생략</p> <p>⑤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p> <p>1. 국립수의과학검역원</p> <p>별표 8제2호 라목중 "국립동물검역소장"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으로 한다.</p> |

제6조 및 제7조 생략

부칙(축산법)
<제5720호,1999.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축산물가공처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7
호 및 제8호로 하고, 동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축산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
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
을 도축장에서 반출한 때(도축장의
경영자에 한한다)

6. 축산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
하여 등급판정업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도축장의 경영자에 한한다)

부칙 <제1315호,1999.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축산법시행규칙)
<제1345호,1999.9.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4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제46
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축산물가공처리
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 가목의 표중 제16호를
제18호로 하고, 동표에 제16호 및 제17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생략

부칙(위해축산물의회수절차등에 관한
규칙) <제1358호,2000.3.18>

| 축산물가공처리법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
|---|--------------|---|
| <p>제7조 생략</p> <p>부칙 <제5765호,1999.2.5></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정부조직법) <제5982호,1999.5.24></p> <p>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생략</p> <p>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4> 생략 <35>축산물가공처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2항 단서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p> <p><36> 내지 <78> 생략</p> <p>제4조 내지 제6조 생략</p> | | <p>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다른 법령의 개정)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을 삭제한다.</p> <p>부칙(농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제1360호,2000.3.27></p> <p>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10 제6호 나목(1)(마) 본문중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p> <p>②내지 ⑤생략</p> <p>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협동</p> |

부칙 <제6192호,2000.1.21>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71호,2001.12.31>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작성·운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도축업의 영업자가 갖추고 있는 도축장중 다음 각호의 도축장에 적용되는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작성·운용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

부칙 <제16995호,2000.10.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합법시행규칙, 축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및 인삼협동조합법시행규칙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73호,2000.12.11>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402호,2001.1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 제2호다목8.가.(3)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축산물가공처리법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
|---|---|---|
| <p>고 2003년 6월 30일까지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1. 2001년도 1일 평균 도축실적이 30두 미만인 소 도축장</p> <p>2. 2001년도 1일 평균 도축실적이 300두 미만인 돼지 도축장</p> <p>3. 2001년도 1일 평균 도축실적이 3만수 미만인 닭 도축장</p> <p>③(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부칙(민사집행법) <제6627호,2002.1.26></p> <p>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5조 생략</p> <p>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5> 생략</p> <p><46>축산물가공처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 <p>부칙 <제17652호,2002.6.29></p> <p>이 영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 <p>부칙 <제1424호,2002.8.5></p> <p>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③(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p> |

제26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47>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7134호,2004.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중 식육가공품을 만드는 영업을 하는 자는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식육포장처리업허가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하며, 그 수수료는 면제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부칙 <제18494호,2004.7.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축업의 변경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동일작업장에서 도살·처리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법령을 위반한 자 등을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 및 검거에 협조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회수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회수명령에 대한 조치는 제27조 및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의하여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454호,2004.1.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중 "축산기술연구소"를 "축산연구소"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축산연구소

부칙 <제1478호,2004.8.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 별표 12의 제4호마목·아목·자목, 별표 13의 제3호

| 축산물가공처리법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
|--|--|---|
| <p>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4조 생략</p> <p>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20> 생략</p> <p><121>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6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122>내지 <145>생략</p> <p>제6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915호,2006.3.24></p> <p>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위생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는 영업자부터 적용한다.</p> | <p>제5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 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9조제8항을 삭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9689호,2006.9.22></p> <p>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p> <p>②(축산물 포장대상 영업자에 관한 적용 특례)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연간 1일 평균 도축수의 산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한다.</p> | <p>나목·차목 및 하목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②(다른 법령의 폐지) 위해축산물의회수절차등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p> <p>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유임산물매각규칙」 등 일부개정령)</p> <p style="text-align: center;"><제1529호,2006.6.30></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539호,2006.10.4></p> <p>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

③(축산물수입판매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2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등 행정기관의 행위와 각종 신고 등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⑤(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6항에 따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농림부장관이 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을 최초로 지정한 날부터 적용한다.

③(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별표

- [별표 1] 검사관의 기준 업무량 및 자체검사원·검사보조원의 수 161
(제17조의2관련)
- [별표 2] 검사불합격품의 폐기처리방법과 기준 163
(제19조제2항 및 제27조의2제5항관련)
- [별표 3] 과징금의 산정기준(제25조제2항관련) 164
- [별표3의2] 포상금의 지급기준(제30조제1항관련) 166
- [별표 4] 과태료 부과기준(제32조제3항관련) 167

[별표 1] <개정 2004.7.29, 2006.9.22>

검사관의 기준 업무량 및 자체검사원·검사보조원의 수(제17조의2관련)

1. 검사관의 기준 업무량

도축장에서 검사관이 1일동안 검사할 수 있는 가축의 수에 관한 기준 업무량은 당해 도축장에서 근무하는 검사관의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1인이 근무하는 경우 : 소 30두 이하, 돼지 300두 이하, 닭 2만수 이하

나. 2인이 근무하는 경우 : 소 60두 이하, 돼지 600두 이하, 닭 4만수 이하

다. 3인 이상이 근무하는 경우 : 3인이 근무하는 경우에는 소 90두 이하, 돼지 900두 이하, 닭 6만수 이하로 하되, 검사관 1인이 추가될 때마다 소 60두, 돼지 600두, 닭 4만수를 각각 추가 산정한다.

라. 동일작업장에서 소·돼지를 함께 도축하는 경우에는 소 1두를 돼지 10두로 환산한다.

2. 자체검사원 및 검사보조원의 수

| 구 분 | 가축별 | 일일 도축두수 | 자체검사원의 수 | 검사보조원의 수 |
|-------|-------|------------------|-------------|----------|
| 도축장 | 소 | 1두 ~ 30두 | - | 1인 이상 |
| | | 31두 ~ 60두 | - | 2인 이상 |
| | | 61두 이상 | - | 3인 이상 |
| | 돼지 | 1두 ~ 300두 | - | 1인 이상 |
| | | 301두 ~ 700두 | - | 2인 이상 |
| | | 701두 이상 | - | 3인 이상 |
| | 닭 | 1수 ~ 20,000수 | 1인 이상 | 1인 이상 |
| | | 20,001 ~ 40,000수 | 2인 이상 | 2인 이상 |
| | | 40,001수 이상 | 3인 이상 | 3인 이상 |
| 집 유 장 | 집유농가수 | 500호당 1인 이상 | 100호당 1인 이상 | |

비 고

1. 도축장의 일일 도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말은 소의 기준을,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과 사슴은 돼지의 기준을, 그 밖의 가금류는 닭의 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2. 일일 도축두수(집유농가수)의 산정은 전년도 일일평균 도축두수(집유농가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휴업 등의 이유로 전년도 기준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일 도축두수(집유농가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신규허가의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당해 작업장의 시설규모나 사업계획물량 등을 감안하여 자체검사원 및 검사보조원의 수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작업장의 영업자는 자체검사원 또는 검사보조원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자체검사원 또는 검사보조원을 충원하여야 한다. 다만, 집유업의 경우 자체검사원의 충원은 6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별표 2] <개정 2006.9.22>

검사불합격품의 폐기처리방법과 기준(제19조제2항 및 제27조의2제5항관련)

1. 검사불합격품 등의 처리

- 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에 대하여는 가축의 머리 또는 몸통에 육안으로 잘 보일 수 있도록 적색 또는 청색으로 ×표시를 하여야 한다.
- 나.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가축이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불합격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다.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중 농가에서 원유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에 불합격한 원유에 대하여는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색소를 섞어야 한다.

2. 소각·매몰·정화처리의 방법과 기준

- 가. 동물의 사체, 축산물 등 폐기대상물의 수집·운반·보관 및 소각·매몰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 나. 원유 등 액상물질에 대한 정화처리는 수질환경보전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업장에 설치된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거나,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한다.

[별표 3] <개정 2004.7.29>

과징금의 산정기준(제25조제2항관련)

1. 일반기준

- 가. 영업정지 1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 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도축업과 집유업의 경우에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처분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일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 다. 영업의 일부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영업의 일부정지에 해당하는 가축이나 축산물의 처분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인하여 해당되는 가축이나 축산물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일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2. 과징금기준

| 등 급 | 연간매출금액(단위 : 백만원) | | |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액 (단위 : 원) |
|--------|---|--|-------------------|---------------------------------|
| | 도축업·집유업·축산물 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 업의 영업정지 | 도축업·집유업·축산물 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 업외의 영업정지 | 영업의 일부정지 | |
| 1 | 100 이하 | 50 이하 | 100 이하 | 6만 |
| 2 | 100 초과~200 이하 | 50 초과~100 이하 | 100 초과~200 이하 | 10만 |
| 3 | 200 초과~310 이하 | 100 초과~150 이하 | 200 초과~300 이하 | 14만 |
| 4 | 310 초과~430 이하 | 150 초과~210 이하 | 300 초과~400 이하 | 18만 |
| 5 | 430 초과~560 이하 | 210 초과~270 이하 | 400 초과~500 이하 | 22만 |
| 6 | 560 초과~700 이하 | 270 초과~330 이하 | 500 초과~650 이하 | 26만 |
| 7 | 700 초과~860 이하 | 330 초과~400 이하 | 650 초과~800 이하 | 30만 |
| 8 | 860 초과~1,040 이하 | 400 초과~470 이하 | 800 초과~950 이하 | 34만 |
| 9 | 1,040 초과~1,240 이하 | 470 초과~550 이하 | 950 초과~1,100 이하 | 38만 |
| 10 | 1,240 초과~1,460 이하 | 550 초과~650 이하 | 1,100 초과~1,300 이하 | 41만 |

| | | | | |
|----|---------------------|--------------------|---------------------|------|
| 11 | 1,460 초과~1,710 이하 | 650 초과~750 이하 | 1,300 초과~1,500 이하 | 44만 |
| 12 | 1,710 초과~2,000 이하 | 750 초과~850 이하 | 1,500 초과~1,700 이하 | 47만 |
| 13 | 2,000 초과~2,300 이하 | 850 초과~1,000 이하 | 1,700 초과~2,000 이하 | 50만 |
| 14 | 2,300 초과~2,600 이하 | 1,000 초과~1,200 이하 | 2,000 초과~2,300 이하 | 53만 |
| 15 | 2,600 초과~3,000 이하 | 1,200 초과~1,500 이하 | 2,300 초과~2,700 이하 | 56만 |
| 16 | 3,000 초과~3,400 이하 | 1,500 초과~2,000 이하 | 2,700 초과~3,100 이하 | 59만 |
| 17 | 3,400 초과~3,800 이하 | 2,000 초과~2,500 이하 | 3,100 초과~3,600 이하 | 62만 |
| 18 | 3,800 초과~4,300 이하 | 2,500 초과~3,000 이하 | 3,600 초과~4,100 이하 | 65만 |
| 19 | 4,300 초과~4,800 이하 | 3,000 초과~4,000 이하 | 4,100 초과~4,700 이하 | 68만 |
| 20 | 4,800 초과~5,400 이하 | 4,000 초과~5,000 이하 | 4,700 초과~5,300 이하 | 71만 |
| 21 | 5,400 초과~6,000 이하 | 5,000 초과~6,500 이하 | 5,300 초과~6,000 이하 | 74만 |
| 22 | 6,000 초과~6,700 이하 | 6,500 초과~8,000 이하 | 6,000 초과~6,700 이하 | 77만 |
| 23 | 6,700 초과~7,500 이하 | 8,000 초과~10,000 이하 | 6,700 초과~7,400 이하 | 80만 |
| 24 | 7,500 초과~8,600 이하 | 10,000 초과 | 7,400 초과~8,200 이하 | 83만 |
| 25 | 8,600 초과~10,000 이하 | | 8,200 초과~9,000 이하 | 86만 |
| 26 | 10,000 초과~12,000 이하 | | 9,000 초과~10,000 이하 | 89만 |
| 27 | 12,000 초과~15,000 이하 | | 10,000 초과~11,000 이하 | 92만 |
| 28 | 15,000 초과~20,000 이하 | | 11,000 초과~12,000 이하 | 95만 |
| 29 | 20,000 초과~25,000 이하 | | 12,000 초과~13,000 이하 | 98만 |
| 30 | 25,000 초과~30,000 이하 | | 13,000 초과~15,000 이하 | 101만 |
| 31 | 30,000 초과~35,000 이하 | | 15,000 초과~17,000 이하 | 104만 |
| 32 | 35,000 초과~40,000 이하 | | 17,000 초과~20,000 이하 | 107만 |
| 33 | 40,000 초과 | | 20,000 초과 | 110만 |

[별표 3의2] <신설 2004.7.29>

포상금의 지급기준(제30조제1항관련)

| 포상금 지급대상자 | 포상금액 |
|---|---|
| 1.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을 도살·처리하거나 집유한 자 또는 축산물을 가공한 자를 신고·고발하거나 검거한 자 및 검거에 협조한 자(이하 이 표에서 “신고자등”이라 한다) | 20만원 이하 |
| 2.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한 자에 대한 신고자등 | 지방세법 제23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가 조사·결정한 당해 가축의 시가(이하 이 표에서 “시가”라 한다)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
| 3. 법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에 대하여 강제로 물을 먹이는 등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신고자등 | 당해 가축의 시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4.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식육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사용·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에 대한 신고자등 | 관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해당식육의 소비자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5.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에 대한 신고자등 | 30만원 이하 |
| 6.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에 대한 신고자등 | 10만원 이하 |

비 고 : 농림부장관은 제2호 내지 제4호의 기준에 불구하고 신고·고발 또는 검거 건당 포상금의 지급 최고한도액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포상금의 지급은 관계공무원이 직접 확인한 가축이나 축산물에 한한다.

[별표 4] <개정 2006.9.22>

과태료 부과기준(제32조제3항관련)

(단위 : 만원)

| 위 반 행 위 | 해당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법 제47조제1항제1호 | 300 |
| 2. 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도살·처리한 자 | 법 제47조제1항제2호 | 100 |
| 3.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하지 아니한 자 | 법 제47조제1항제3호 | |
| 가. 도축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 | 300 |
| 나.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 | 150 |
| 다. 그 밖의 영업자 | | 20 |
| 4.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운용하지 아니한 자 | 법 제47조제1항제3호 | |
| 가. 도축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 | 150 |
| 나.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 | 100 |
| 다. 그 밖의 영업자 | | 10 |
| 5.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하지 아니한 자(도축업에 한한다) | 법 제47조제1항제4호 | 300 |
| 6.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운용하지 아니한 자(도축업에 한한다) | 법 제47조제1항제4호 | 150 |
| 7. 법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보관·운반·진열 또는 판매한 자 | 법 제47조제1항제5호의2 | 100 |
| 8. 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법 제47조제1항제5호의3 | 100 |
| 9. 법 제25조 또는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 법 제47조제1항제6호 | 30 |
| 10.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자 | 법 제47조제1항제7호 | 30 |
| 10의2.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자 | 법 제47조제1항제7호 | 100 |

| | | |
|--|---------------|----------------------|
| 11. 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하게 한 자 가. 종업원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 대상자의 50퍼센트 이상 위반 (2) 대상자의 50퍼센트 미만 위반 나. 종업원의 수가 4인 이하인 경우 (1) 대상자의 50퍼센트 이상 위반 (2) 대상자의 50퍼센트 미만 위반 | 법 제47조제1항제8호 | 50 30 30 20 |
| 12. 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하게 한 자 | 법 제47조제1항제8호 | 100 |
| 13.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자 | 법 제47조제1항제9호 | 30 |
| 14. 법 제30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하게 한 자 가. 종업원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 대상자의 50퍼센트 이상 위반 (2) 대상자의 50퍼센트 미만 위반 나. 종업원의 수가 4인 이하인 경우 (1) 대상자의 50퍼센트 이상 위반 (2) 대상자의 50퍼센트 미만 위반 | 법 제47조제1항제10호 | 30 20 20 10 |
| 15. 법 제30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체검사원을 그 검사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 | 법 제47조제1항제10호 | 10 |
| 16.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의 도살·처리 또는 집유의 요구를 거부한 자 | 법 제47조제1항제11호 | 50 |
| 17. 법 제35조에 따른 시설개수명령에 위반한 자 | 법 제47조제1항제12호 | 200 |
| 18.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자 | 법 제47조제1항제13호 | 50 |

비 고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위 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표

| | | |
|----------|---|-----|
| [별표 1] |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제2조관련) | 171 |
| [별표 2] | 영업장 또는 업소의 위생관리기준(제6조관련) | 176 |
| [별표2의2] |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정성 여부 평가기준 및 절차 등(제7조의6관련) | 179 |
| [별표2의3] | 축산물의 포장방법 등(제7조의7관련) | 180 |
| [별표 3] |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기준(제9조제3항관련) | 181 |
| [별표3의2] | 착유가축검사의 항목·방법 및 기준(제10조제2항관련) | 188 |
| [별표 4] | 축산물의 검사기준(제12조관련) | 189 |
| [별표 5] | 축산물가공업영업자의 검사기준(제14조관련) | 191 |
| [별표 6] | 검사시료의 채취 및 축산물의 수거기준(제16조 및 제26조관련) | 192 |
| [별표 7] | 축산물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제21조관련) | 194 |
| [별표 8] | 식육의 합격표시(제23조관련) | 198 |
| [별표 9] | 검사불합격품의 용도전환의 방법과 기준(제24조관련) | 200 |
| [별표9의2] |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검사업무정지의 처분기준 (제28조의4관련) | 202 |
| [별표9의3] |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제28조의4관련) | 204 |
| [별표 10] |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제29조관련) | 206 |
| [별표 11] | 행정처분기준(제41조 및 제43조관련) | 230 |
| [별표 12] |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제51조제1항관련) | 256 |
| [별표 13] |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제51조제2항관련) | 260 |
| [별표 14] |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제52조제2항관련) | 264 |
| [별표14의2]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기준(제7조의4제2항관련) | 265 |
| [별표 15] | 허가 등 수수료(제60조관련) | 266 |
| [별도 1] | 검인(포유류) | 267 |
| [별도 1의2] | 검인(포유류가축의 머리·꼬리등의 표면) | 267 |
| [별도 2] | 검인(가금류) | 268 |

| | | |
|--------|----------------------|-----|
| [별도 3] | 가금육 포장지의 표시 | 269 |
| [별도 4] | 도축장(포유류) 시설배치도 | 270 |
| [별도 5] | 도축장(가금류) 시설배치도 | 271 |

[별표 1] <개정 2002.8.5, 2006.10.4>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제2조관련)

1. 소·말·양·돼지 등 포유류(토끼를 제외한다)

가. 도살방법

- (1) 가축은 도살전에 가축의 몸의 표면에 묻어 있는 오물을 제거한 후 깨끗하게물로 씻어야 한다.
- (2) 도살은 타격법·전살법·총격법·자격법 또는 CO₂ 가스법을 이용하여야 하며, 방혈전후 연수 또는 척수를 파괴할 목적으로 철선을 사용하는 경우 그 철선은 스테인리스철재로서 소독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3) 방혈법
 - (가) 방혈은 목동맥을 절단하여 실시한다.
 - (나) 목동맥 절단시에는 식도 및 기관이 손상되어서는 아니된다.
 - (다) 방혈시에는 뒷다리를 매달아 방혈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처리방법

부위별 절단은 다음 방법에 의한다.

- (1) 가축의 깍질과 털은 해당가축의 특성에 맞게 벗기거나 뽑는 등 위생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돼지의 경우에는 뜨거운 물에 담근 후 털을 뽑는 방식(이하 "탕박"이라 한다)을 권장한다.
- (2) 머리
 - (가) 소
 - 1) 뒷머리뼈와 제1목뼈 사이를 절단한다.
 - 2) 머리부위에는 하악림프절·인두후림프절 및 귀밑림프절을 부착시킨다.
 - (나) 양·돼지 등
소의 방법에 의하여 머리부위를 절단하되, 림프절은 머리에 부착시킨다.
- (3) 앞다리
앞발목뼈와 앞발허리뼈 사이를 절단한다. 다만, 탕박을 하는 돼지의 경우에는 절단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뒷다리

뒷발목뼈와 뒷발허리뼈 사이를 절단한다. 다만, 탕박을 하는 돼지의 경우에는 절단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장기

배쪽의 정중선에 따라 절개한 후 다음 방법에 의한다.

- (가) 절개시에 음경·고환 및 유방(새끼를 낳은 소에 한한다)을 제거한다.
- (나) 항문·외음부 및 그 주위부분을 제거한 후 횡경막의 부착부분부터 절개한다.
- (다) 가슴뼈와 치골결합 사이를 종단한다.
- (라) 장 내용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항문을 묶는다.
- (마) 흉강장기·복강장기를 끄집어낸다.
- (바) 식용에 제공하기 위한 간은 그 밖의 장기와 구분·채취하여 위생적인 용기에 담는다.
- (사) 식용에 제공하기 위한 위·소장 및 대장은 그 밖의 장기와 구분하여 처리하되, 내용물이 눈에 보이지 아니할 때까지 세척하여 전용 위생용기에 담는다.

(6) 도체

다음 방법에 의하여 2등분 또는 4등분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 (가) 도체를 2등분으로 절단할 경우에는 엉덩이사이뼈·허리뼈·등뼈 및 목뼈를 좌우평등하게 절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의 도체는 제1허리뼈와 최후등뼈 사이가 일부 절단되도록 하여야 한다.
- (나) 도체를 4등분으로 절단할 경우에는 제1허리뼈와 최후등뼈(제13등뼈) 사이를 절단하여야 한다.
- (다) 도체의 절단은 전기톱을 이용하여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 (라) 삭제 <2002.8.5>

2. 닭·오리·칠면조 등 가금류

가. 도살방법

- (1) 도살은 자격법 또는 CO₂ 가스법을 이용한다.
- (2) 방혈은 목동맥을 절단하여 실시하며, 도체에 상처나 울혈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처리방법

- (1) 가금의 처리는 충분히 방혈한 후 탕지(털을 제거하기 위하여 뜨거운 물에 담그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탈모·머리절단·발절단·항문 제거·개복·장기적출·수세냉각·냉장·냉동(냉동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포장(포장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등의 순서로 실시하여야 한다.
- (2) 탕지는 가금이 죽은 후에 하여야 하고, 탕지하는 물은 식육이 익지 않을 정도의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일정한 주기로 새로운 물을 투입하여 깨끗한 상태이어야 한다.
- (3) 가금의 털은 도체를 식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거하되 도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4) 가금의 절단작업은 도체를 식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머리·발·기도·허파·식도·심장·모이주머니·내장 등을 제거하고, 해체된 식육은 더럽혀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내장의 적출은 항문의 주위를 도려낸 후 실시하여야 한다.
- (5) 냉장·냉동(냉동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포장(포장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은 해체된 식육을 신속히 냉각한 후에 하여야 한다.
 - (가) 도축장에서 반출되는 식육의 온도는 5℃ 이하로 유지되어야 하며,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심부온도가 2℃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 (나) 빙수냉각
 - 1) 빙수냉각은 식용얼음을 사용하여 위생적인 방법으로 취급·저장되어야 한다. 다만, 제빙기가 없는 도축장에서는 수냉각장치에 의한다.
 - 2) 식육은 다음에 규정된 시간내에 5℃ 이하로 냉각하여야 하며,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포장시까지 이 온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 도 체 중 량 | 시 간 |
|-------------------|-----|
| 1.8kg 미만 | 4 |
| 1.8kg 이상~3.6kg 미만 | 6 |
| 3.6kg 이상 | 8 |

- 3) 식육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식육은 5℃ 이하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각탱크에 24시간까지 보관할 수 있다.

가) 보관기간 중에는 5℃ 이하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얼음을 보충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세척·냉각수는 포장시의 습기흡수율 및 수분함유율을 최소한으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냉동 또는 냉동포장을 하는 식육의 경우 세척 및 냉각수로 인한 최대 허용습기흡수량 및 수분함유량은 다음에서 정한 백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냉각세척후 중량증가 허용기준

| 식육의 종류 | 구 분 | 허용기준 |
|--------|-----------------|------|
| 닭고기 | | 8% |
| 칠면조고기 | 4.5kg 미만 | 8% |
| | 4.5kg 이상~9kg 미만 | 6% |
| | 9kg 이상 | 4.5% |
| 기타 가금육 | | 6% |

라) 빙수냉각을 한 냉동식육의 최대 허용습기흡수량 및 수분함유량은 증가된 중량의 백분율이 19%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냉각시설의 온도는 1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공기냉각의 경우에는 해체후 식육의 심부온도가 신속하게 5℃ 이하로 되어야 하며, 공기유통과 적정습도가 잘 유지되어야 한다.

(6) 식육의 포장은 별표 2의3에 따른다.

3. 토끼

토끼의 도살·처리방법은 제1호의 기준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개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4. 집유의 방법

가. 농장으로부터의 집유는 보냉탱크집유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

나. 집유시에는 보냉탱크집유차량의 집유전에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에서 검사실시가 불가능한 검사항목에 대하여는 검사시료를 채취하여 시험실에서 검사를 실시한다.

다. 집유된 원유는 신속하게 집유장 또는 유가공장에 운송하여 여과·냉각 또는 저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수출 등 특수한 목적의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기준

가. 수출을 목적으로 도살·처리하는 가축에 대하여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가축의 도살·처리기준에 의할 수 있다.

나. 바베큐 또는 제수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가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살·처리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다. 가목 및 나목외의 목적으로 도체의 절단방법 및 집유의 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그 방법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별표 2] <개정 2004.8.4>

영업장 또는 업소의 위생관리기준(제6조관련)

1. 작업개시전 위생관리

- 가. 작업실, 작업실의 출입구, 화장실 등은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나. 축산물과 직접 접촉되는 장비·도구 등의 표면은 흙·고기찌꺼기·털·쇠붙이 등 이물질이나 세척제 등 유해성 물질이 제거된 상태이어야 한다.

2. 작업중 위생관리

- 가. 작업실은 축산물의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급적 안쪽부터 처리·가공·유통공정의 순서대로 설치하고, 출입구는 맨 바깥쪽에 설치하여 출입시 발생할 수 있는 축산물의 오염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나. 축산물은 벽·바닥 등에 닿지 아니하도록 위생적으로 처리·운반하여야 하고, 냉장·냉동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저장·운반하여야 한다.
- 다. 작업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항상 손을 씻도록 하여야 한다.
- 라. 위생복·위생모 및 위생화 등을 착용하고, 항상 청결히 유지하여야 하며, 위생복 등을 입은 상태에서 작업장 밖으로 출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마. 작업중 화장실에 갈 때에는 앞치마와 장갑을 벗어야 한다.
- 바. 흡연·음식물 섭취 및 껌을 씹는 행위 등은 삼가하여야 한다.
- 사. 시계·반지·귀걸이 및 머리핀 등의 장신구가 축산물에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영업자·검사관 및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책무

- 가. 영업자는 작업개시전 또는 작업종료후에 시설·장비 및 도구 등에 대한 위생상태 및 작동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나.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은 자체위생관리기준이 효율적으로 시행되는지의 여부를 감독하고, 그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영업자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명하여 이를 즉시 시정·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다. 영업자 또는 관리책임자는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이 지시한 사항을 즉시 시정·보완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정·보완이 될 때까지 작업을 일시 중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개별기준

가. 도축업

- (1) 도살작업은 가축을 매단 상태 또는 가축이 바닥과 닿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하여야 한다.
- (2) 종업원은 지육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중에 수시로 작업칼·기구·톱 등 작업에 사용하는 도구를 적어도 83℃ 이상의 뜨거운 물로 세척·소독하여야 한다.
- (3) 종업원은 작업종료후 오염물질 및 지방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작업대·운반도구 및 용기 등 식육과 직접 접촉되는 시설 등의 표면을 깨끗이 세척하여야 한다.
- (4) 가축도살·지육처리 및 내장처리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각 작업장별로 구분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다른 작업장으로 이동하여야 하는 때에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생복 및 앞치마를 갈아입고 위생화 등을 세척·소독하는 등의 위생조치를 하여야 한다.
- (5) 도살 및 처리 작업 중에 지육이 분변 또는 장의 내용물에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집유업

- (1) 원유를 직접 취급하는 자는 작업중 수시로 손을 세척·소독하여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2) 집유차량의 보냉(保冷)탱크, 검사용 기구, 집유(수유)호스 등은 수시로 이를 세척·소독하여 항상 청결히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3) 작업장에 출입할 때에는 반드시 위생화를 소독조에 세척·소독하여야 한다.
- (4) 작업전에 집유(수유)설비의 작동상태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5) 집유차량의 보냉탱크 및 저유조내 원유는 냉장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6) 집유차량의 집유호스 및 저유조 수유호스 등은 벽·바닥 등과 닿지 아니하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 (1) 종업원은 축산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중 수시로 손·장갑·칼·가공작업대 등을 세척·소독하여야 한다.
- (2) 모든 장비·컨베이어벨트 및 작업대 그 밖에 축산물과 직접 접촉되는 시설 등의 표면은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 (3) 종업원이 원료작업실에서 가공품작업실로 이동하는 때에는 교차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위생복 또는 앞치마를 갈아입거나 위생화 또는 손을 세척·소독하는 등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축산물보관업

- (1) 오염된 기구를 만지거나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작업을 한 경우 등은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 (2) 축산물을 취급할 때에는 포장재가 파손되거나 제품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파손된 제품이 작업장내에 방치되지 아니하도록 위생조치를 하여야 한다.
- (3) 냉장(냉동)실 출입문이 개방된 상태에서 작업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축산물운반업

- (1) 축산물의 상·하차 작업시 위생복·위생모·위생화 및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항상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 (2) 작업전에 운반차량 적재함·작업도구 및 위생화 등을 세척 소독하여야 한다.
- (3) 냉장(냉동)기를 가동하여 적정온도가 유지된 후 지육의 운반을 시작하여야 한다.
- (4) 식육은 벽이나 바닥에 닿지 아니하도록 위생적으로 취급 운반하여야 한다.
- (5) 식육을 운반하는 때에는 냉장 또는 냉동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바. 축산물판매업

- (1) 식육을 판매하는 종업원은 위생복·위생모·위생화 및 위생장갑 등을 착용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 (2) 작업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칼·칼갈이·도마 및 기구 등을 70% 알콜 또는 동등한 소독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세척·소독하여야 한다.
- (3) 식육 작업완료후 칼, 칼갈이 등은 세척·소독하여 위생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 (4) 냉장(냉동)실 및 축산물 운반차량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내부는 적정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 (5) 진열상자 및 전기냉장(냉동)시설 등의 내부온도는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 이하로 항상 청결히 유지되어야 한다.
- (6) 우유류를 배달하거나 판매하는 때에 사용하는 운반용기는 항상 청결히 유지되어야 한다.

[별표 2의2] <신설 2006.10.4>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정성 여부 평가기준 및 절차 등(제7조의6관련)

1. 평가대상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운영하는 도축업
영업자의 도축장

2. 평가기준

| 구 분 | 평 가 항 목 |
|---------------------|---|
| 인프라 구축 정도 | 도축검사 라인, 구내 조명, 민원·악취 발생, 폐수처리, 도축장내 식육포장비율, 실험실 구축 및 실험자 능력 정도, 도축장의 전체 면적 등 |
|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 운용 실태 | 도축장의 위생관리·시설관리·위해요소의 분석·중요관리점의 감시 등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운용 실태 |

3. 평가절차 및 방법 등

가. 평가 수행기관 또는 단체는 평가의 효율적인 추진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나. 평가방법에는 현장실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별표 2의3] <신설 2006.10.4>

축산물의 포장방법 등(제7조의7관련)

1. “포장”이라 함은 축산물의 오염을 방지하고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용기 또는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 소매단위 포장(1~5마리 단위의 포장을 권장), 부위별 포장(20kg이하 단위의 포장을 권장) 또는 벌크 포장(25마리 이하 단위의 포장을 권장)한 것으로서 그 외부에 별표 8에 따른 합격표시(이하 “합격표시”라 한다)를 한 것을 말한다.
2. 도축장 외부로 반출하는 닭·오리의 식육은 포장한 후 그 외부에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
3. 포장에 사용되는 용기 및 재료는 「식품위생법」의 관련 규정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3] <개정 2004.8.4>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기준(제9조제3항관련)

1. 도축하는 가축의 검사기준

가. 소·말(당나귀 포함)·양·돼지 등 포유류

- (1) 검사는 도축장안의 계류장에서 가축을 일정기간 계류한 후에 생체검사장에서 실시한다.
- (2) 검사대상가축이 별지 제2호서식의 도축검사신청서에 기재된 가축인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 (3) 개체별검사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 (가) 가축의 자세·거동·영양상태·호흡상태 등을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 맥박·체온을 측정한다.
 - (나) 피부와 털의 상태를 확인한다.
 - (다) 필요한 경우 안검(眼瞼)·비강·구강·항문·생식기·직장검사를 실시한다.
- (4) 검사관은 생체검사결과 이상이 있는 가축에 대하여는 격리장에서 일정시간 이상 계류시킨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 도축허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나. 닭·오리·칠면조 등 가금류

- (1) 검사는 군별검사와 개체별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군별검사는 도축장안의 계류장에서 실시하고, 개체별검사는 도축장안의 생체검사대에서 실시한다.
- (2) 검사대상가축의 군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도축검사신청서에 기재된 가축인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 (3) 수송중 죽었거나 손상이 심하여 식육으로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가축은 골라내어 폐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 (4) 군별검사는 가축의 자세·거동상태 등을 관찰한다.
- (5) 개체별검사는 군별검사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 실시하며, 털의 상태 및 안검·비강·항문 등의 이상유무를 검사한다.
- (6) 검사관 또는 자체검사원은 생체검사결과 이상이 있는 가축에 대하여

는 계류장에서 일정시간 이상 계류시킨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 도축허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 검사관 또는 자체검사원은 가축의 검사결과 다음의 1에 해당되는 가축에 대하여는 도축을 금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다음의 가축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

(가) 우역(牛疫)·우폐역(牛肺疫)·구제역(口蹄疫)·탄저(炭疽)·기종저(氣腫疽)·불루팅병·리프트계곡열·림프스킨병·가성우역(假性牛疫)·소유행열·결핵병(結核病)·부루세라병·요네병(전신증상을 나타낸 것에 한한다)·스크래피·소해면상뇌증(海綿狀腦症 : BSE)·소백혈병(임상증상을 나타낸 것에 한한다)·아나플라즈마병(아나플라즈마 마지나레에 한한다)·바베시아병(바베시아 비제미나 및 보비스에 한한다)·타이레리아병(타이레리아 팔마 및 에놀라타에 한한다)

(나) 돼지콜레라·아프리카돼지콜레라·돼지수포병(水疱病)·돼지텃센병·돼지단독·돼지일본뇌염

(다) 양두(羊痘)·수포성구내염(水疱性口內炎)·비저(鼻疽)·말전염성빈혈·아프리카마역(馬疫)·광견병(狂犬病)

(라) 뉴캐슬병·가금콜레라·추백리(雛白痢)·가금(家禽)인플루엔자·닭전염성후두기관염·닭전염성기관지염·가금티프스

(마) 현저한 증상을 나타내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과상풍·농독증·패혈증·요독증·황달·수종·종양·중독증·전신쇠약·전신빈혈증·이상고열증상·주사반응(생물학적제제에 의하여 현저한 반응을 나타낸 것에 한한다)

(2) 강제로 물을 먹였거나 먹였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

2. 식육의 검사기준

가. 소·말(당나귀 포함)·양·돼지 등 포유류

(1) 검사항목

(가) 혈액 및 가축

(나) 머리·혀·인두후·목부위 및 그 인근 림프절

(다) 폐·폐문·폐림프절 및 폐종격

(라) 심장·심낭

(마) 횡격막

(바) 간·간문 및 그 인근 림프절

(사) 위·장간막림프절 및 망막

(아) 비장·췌장·신장 및 그 인근 림프절

(자) 방광·고환·음경·난소·자궁·질 및 외음부

(차) 지육

(2) 검사방법

(가) 소

1) 내외교근은 하악과 병행하여 절개하여 검사한다.

2) 간장은 담관 및 우엽·좌엽을 가로로 절개하여 검사한다.

3) 신경은 지방을 분리한 후 검사한다.

4) 자궁은 절개하여 검사한다.

5) 심장·심낭은 양심실을 동맥에 따라 절개하여 검사한다.

(나) 말·당나귀

두부를 횡단하여 비중격을 절개하여 점막을 검사한다.

(다) 면양·산양

간·폐 및 두부를 절개하여 검사한다.

(라) 돼지

복근·횡격막·목·심장·혀 및 인두후를 절개하여 검사한다.

(3) 검사기준 및 폐기범위

| 구 분 | 대상질병 | 폐기범위 | | | 가축별 |
|------|--------------|------|----|---------------------------|------|
| | | 일부 | 전체 | 폐기세부내용 | |
| 위장관 | 농양 | ○ | | | 포유류 |
| | 복막염 | | ○ | 위장관 전체폐기 | 포유류 |
| | 장염 | | ○ | 장관 전체폐기 | 소·돼지 |
| | 직장협착 | | | 살모넬라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식육 전체폐기 | 돼지 |
| | 제2위염 | ○ | | 제2위-횡경막-심장막 누관형성시 식육 전체폐기 | 반추류 |
| | 제1위비장염 | | ○ | 위장관 전체폐기 | 반추류 |
| 비종 | 비종 | | ○ | 비장폐기·전신성 병변여부 확인 | 포유류 |
| | 장간막립프절결핵 | | ○ | 식육 전체폐기 | 포유류 |
| | 오염 | ○ | | 오염부위 폐기, 심한 경우 위장관 전체 폐기 | 포유류 |
| | | | | | |
| 간 | 복막염 | ○ | | | 포유류 |
| | 농양 | | ○ | 간 폐기 | 포유류 |
| | 간경화 | ○ | | | 포유류 |
| | 간출혈 | ○ | | | 포유류 |
| | 지방간 | | ○ | 간 폐기 | 포유류 |
| | 부맥반 | ○ | | | 포유류 |
| | 결핵 | | ○ | 간을 포함한 모든 장기를 정밀검사 실시 | 포유류 |
| | 간질증 | | ○ | 간 폐기 | 소 |
| | 밀크반점 | | ○ | 간 폐기 | 돼지 |
| | 세경낭미충 | | ○ | 간 폐기 | 돼지 |
| | 파라티프스결절 | | ○ | 간을 포함한 모든 장기에 대한 정밀검사 실시 | 소·돼지 |
| | | | | | |
| 심장·폐 | 점상출혈 | | | 전신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관련 심장·폐 폐기 | 포유류 |
| | 심장지방의 아교양 위축 | | ○ | 심장 전체폐기 | 포유류 |
| | 심근농양 | | ○ | 내장·머리 및 지육폐기 | 포유류 |
| | 폐수종 | | ○ | 폐 폐기 | 포유류 |
| | 흡입성출혈 | | ○ | 폐 폐기 | 포유류 |
| | 간질성폐기종 | | ○ | 폐 폐기 | 포유류 |
| | 기관지확장증 | | ○ | 폐 폐기 | 포유류 |
| | 화농성기관지폐렴 | | ○ | 폐 폐기 | 포유류 |

| | | | | |
|------|--------------------|---|--|------------|
| | 심장내막염 폐렴·흉막염 | | ○ 심장 폐기 ○ 폐 폐기, 폐와 늑골흉막의 분리가 불가능하면 심장·폐·전체갈비부위 폐기 | 포유류 포유류 |
| 신 장 | 점상출혈 | | ○ 신장 폐기, 전신성감염증으로 추정시 다른 장기와 지육을 정밀검사 실시 | 포유류 |
| | 농양 | | ○ 신장 폐기, 신장림프절에 농양시 다른 장기와 지육 정밀검사 실시 | 포유류 |
| | 백반신과신우신염 | | ○ 신장 폐기 | 포유류 |
| | 신낭 | | ○ 신장 폐기 | 포유류 |
| | 오염 | | ○ 신장 폐기 | 포유류 |
| 머리·혀 | 농양 | ○ | ○ 관련장기 폐기 | 포유류 |
| | 오염 | | ○ 오염부위 폐기 | 포유류 |
| | 결핵 | | 정밀검사 실시 | 소·돼지 |
| | 방선균증, 악티노바실러스증 | | ○ 관련장기 폐기 | 소 |
| | 눈편평상피암 | | ○ 머리 폐기 | 소 |
| | 림프절의 혈액흡수 | | ○ 관련머리 정밀검사 실시 | 돼 지 |
| 지 육 | 화농성 병변 | ○ | 농양부위 폐기 | 포유류 |
| | 관절염 | ○ | 관련부위 폐기, 전신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머리·지육 및 내장 폐기 | 포유류 |
| | 복막염 | ○ | 관련부위 폐기 | 포유류 |
| | 흉막염 | ○ | 관련부위 폐기 | 포유류 |
| | 창상, 좌상 | ○ | 악취가 나면 전체지육 폐기 | 포유류 |
| | 오염 | ○ | 관련부위 폐기 | 포유류 |
| | 결핵 | ○ | 전체지육 폐기, 정밀검사 실시 | 소·돼지 |
| | 방선균증 | ○ | 관련부위 폐기 | 소 |
| | 피부병변 (농양·구진·농포) | ○ | 관련부위 폐기, 다이아몬드형 구진시 정밀검사 실시, 척추의 농양시 전체지육 폐기, 피부청색증시 정밀검사 실시 | 포유류 |

(4) 실험실검사

실험실검사는 식육의 검사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가) 병리·조직학적 검사를 실시하여 질병감염여부를 확인한다.

(나) 식육 중의 유해성잔류물질·특정병원성미생물의 검사는 이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검사로 하고, 식육에 물을 주입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 또는 용량을 늘린 식육(이하 “부정행위식육”이라 한다)의 검사는 수분단백비 등 이화학적 검사로 한다.

나. 닭·오리·칠면조 등 가금류

(1) 검사구분

해체전 검사 및 해체후 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 검사내용 및 방법

(가) 해체전 검사

- 1) 우모 및 잔모의 제거상태
- 2) 발목부위의 기형과 목뼈의 적정제거여부 확인
- 3) 백혈병·패혈증·독혈증·관절염·염증·농양·궤양·피부기생충증·황색종증의 감염여부 검사
- 4) 멍들거나 도살전에 죽은 도체, 방혈불량도체, 이물질오염도체, 과당지도체(껍질이 익은 것을 말한다), 부패도체, 복부팽만도체여부 검사

(나) 해체후 검사

- 1) 정상적인 도체절단 및 장기제거상태 확인
- 2) 내부장기·조직·체벽을 검사하여 병변·삼출물 및 이물질오염여부 검사
- 3) 비장은 으깨어 보고 간은 손으로 진단하여 경변정도 및 표면의 이상여부 검사

(3) 검사기준 및 폐기범위

(가) 도체와 내장 전부폐기

- 1) 결핵병 또는 백혈병에 감염된 도체
- 2) 서로 다른 장기에 2개 이상의 종양이 있는 도체
- 3) 심한 기낭염·복막염·복수증·내장유착 등이 있는 도체

4) 죽은 도체, 방혈불량도체, 부패도체 등 식용에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도체

(나) 부분폐기

1) 생체 및 도체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서 1개의 장기에만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장기만을 폐기하고, 2개 이상의 장기가 이상이 있을 때에는 장기 전체를 폐기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장기에 이상이 있어 전신성 질병이 있다고 의심되면 도체전부를 폐기한다.

2) 생체 또는 도체에 약간의 이상이 있는 것으로서 1개 이상의 장기에 이상이 있으면 장기를 포함한 도체전부를 폐기한다.

(4) 실험실검사

실험실검사는 식육의 검사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가) 병리·조직학적 검사를 실시하여 질병감염여부를 확인한다.

(나) 식육 중의 유해성잔류물질·특정병원성미생물의 검사는 이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검사로 한다.

다. 식육의 검사결과 부정행위식육으로 의심되는 식육에 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불합격품의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별표 3의2] <신설 2004.8.4>

착유가축검사의 항목·방법 및 기준(제10조제2항관련)

1. 착유시설 및 착유가축의 위생관리에 대한 검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착유가축 검사대장의 검사항목에 의한다.
2. 검사관 또는 자체검사원은 착유가축의 검사결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가축에 대하여는 납유를 금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
 - 나.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핵병 또는 부루세라병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가축
 - 다. 항생물질·합성항균제 등을 사용한 후 그 제제의 휴약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가축
 - 라. 생물학적제제의 주사로 인한 뚜렷한 이상반응을 나타내는 가축
 - 마. 황달·방선균증·농독증·유방염·패혈증·부패성자궁염·중독증 또는 원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
 - 바. 분만후 5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가축 또는 이상유를 분비하는 가축

[별표 4] <개정 2004.8.4, 2006.10.4>

축산물의 검사기준(제12조관련)

1. 삭제 <2004.8.4>

2. 원유의 검사

가. 검사구분

원유위생검사 및 시설위생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나. 검사요령

(1) 원유위생검사

(가) 집유전 검사

관능검사·비중검사·알콜검사(또는 pH검사) 및 진애검사는 다목의 검사기준에 따라 집유전에 실시한다. 다만, 진애검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나) 실험실검사

적정산도시험·세균수시험·체세포수시험·세균발육억제물질검사·성분검사 및 기타검사는 시험항목별로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세균수시험 및 체세포수시험은 각각 농가별로 15일에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새로 원유를 납유하는 농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착유가축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가축으로부터 착유한 원유를 납유한 농가 기타 실험실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원유를 납유한 농가의 원유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검사를 실시한다.

(다) 농가에서의 집유시 원유의 냉각온도는 5℃ 이하이어야 한다.

(2) 시설위생검사

집유전후 각 1회 이상 실시한다.

다. 검사기준

(1) 일반기준

(가) 중화·살균·균증식억제 및 보관을 위한 약제가 첨가되어서는 아니된다.

(나) 우유와 양유는 동일 작업시설에서 수유하여서는 아니되고 혼입하여서도 아니된다.

(2) 품목별 기준

(가) 우유(착유된 그대로의 것)

- 1) 세균수 및 체세포수 :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위생 등급에 관한 기준에 의한다.
- 2) 비중 : 15℃에서 1.028 내지 1.034
- 3) 산도 : 홀스타인종우유 0.18% 이하, 기타품종우유 0.20% 이하
- 4) 알콜시험 : 적합
- 5) 진애검사 : 2.0mg 이하
- 6) 관능검사 : 적합
- 7) 가수검사 및 가염검사 :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의한다.

(나) 산양유(착유된 그대로의 것)

- 1) 세균수(표준한천평판배양법) : 1ml당 50만 이하
- 2) 비중 : 15℃에서 1.028 내지 1.034
- 3) 산도 : 0.2% 이하

라. 시험방법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시험방법에 의한다.

3. 식용란의 검사

가. 식용란의 표면은 분변·혈액·난내용물·깃털 등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나. 식용란은 변질되거나 부패되지 않아야 한다.

다. 식용란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방법 등에 관한 기준과 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중 알의 잔류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가공·가열처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람이 섭취하는 용도의 식용란에서는 살모넬라균(*Salmonella enteritidis*)이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4. 가공품의 검사

식육가공품·유가공품 및 알가공품에 대한 검사항목·방법·기준 등에 대하여는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의한다.

5. 수출용 축산물의 검사기준

수출을 목적으로 검사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검사기준에 의할 수 있다.

[별표 5] <개정 2006.10.4>

축산물가공업영업자의 검사기준(제14조관련)

1. 검사기준

가. 가공품의 검사

- (1) 축산물의 검사는 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 (2) 품질검사주기의 적용시점은 제품제조일을 기준으로 한다.
- (3) 검사항목의 적용은 당해 제품의 해당항목에 한한다. 다만, 축산물의 가공과정 중 특정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 (4) 동일 생산단위별로 1회 이상 성상·이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5) 가공품의 품목별 성분규격에 대한 검사는 매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알가공품은 6월마다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원료의 검사

- (1) 원료가 입고되는 시점에서 원료의 종류별로 성상·이물 등이 가공품 원료로서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원료를 이미 다른 영업자가 검사한 경우,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 검사한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를 원료로 하여 가공하는 경우로서 법 제22조에 따른 집유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유가공업의 영업자는 별표 4 제2호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유전 검사는 매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수출용 축산물의 검사기준 등

수출을 목적으로 처리·가공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제1호에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검사기준에 의할 수 있다.

3. 그 밖에 축산물가공업영업자의 검사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6] <개정 2004.8.4>

검사시료의 채취 및 축산물의 수거기준(제16조 및 제26조관련)

1. 무상 채취·수거 대상

- 가. 법 제12조, 법 제15조 및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필요한 축산물
- 나.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 또는 수거·폐기하여야 하는 축산물
- 다. 식중독·인수공통전염병발생 등 공중위생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서 원 인규명·역학조사를 목적으로 검사하는 축산물

2. 채취(수거)량 기준

가. 축산물

| 축산물의 종류 | 채취·수거량(단위) | 비 고 |
|-----------|------------|---------------|
| 식 육·포 장 육 | 500(g) | |
| 원 유 | 500(ml) | 농가별 채취량은 20ml |
| 식 용 란 | 5(개) | |
| 식 육 가 공 품 | 500(g/ml) | |
| 유 가 공 품 | 500(g/ml) | |
| 알 가 공 품 | 200(g/ml) | |

비 고

1. 수거량은 검체의 개수별 무게 또는 용량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2. 검사에 필요한 시험재료는 수거량의 범위안에서 채취하되, 검사시료의 최소포장단위가 기준량을 초과하더라도 검사시료 채취로 인한 오염 등으로 검사결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최소 포장단위 그대로 채취할 수 있다.
3. 검사항목의 수가 많을 경우에는 채취·수거량을 초과할 수 있다.
4. 2 이상의 검사시료를 채취·수거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과 제조연월일이 같은 것이어야 한다.
5. 미생물검사를 위한 식육의 검사시료는 표면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용량검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준량을 초과하더라도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한 용량검사에 필요한 양을 추가하여 채취할 수 있다.

7. 세관검사항목이 있는 경우와 멸균처리된 병·통조림 및 레토르트 축산물은 최소한 6개 이상을 수거하여야 한다.
 8. 채취(수거)대상 축산물이 채취(수거)량 기준보다 적을 경우에는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을 채취(수거)할 수 있다.
- 나. 삭제 <2000.12.11>

[별표 7] <개정 2004.8.4, 2006.10.4>

축산물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제21조관련)

1.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축산물

- 가.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수입하는 공용의 축산물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및 그 가족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자가소비용 축산물
- 나. 여행자가 휴대한 것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축산물
- 다.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축산물
- 라. 관세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으로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서 사용하는 축산물
- 마. 기타 검역원장이 공중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축산물

2. 검사의 종류 및 대상

가. 서류검사 및 그 대상

서류검사라 함은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를 말하며, 다음의 축산물을 대상으로 한다.

- (1)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축산물
- (2)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또는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자가 자사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입하는 축산물(이하 "자사제품 원료용 축산물"이라 한다)
- (3) 연구·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축산물
- (4) 과거 정밀검사를 받은 축산물과 동일한 축산물(생산국·가공업소·제품명 및 가공방법이 같은 축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다시 수입하는 경우의 축산물

나. 관능검사 및 그 대상

관능검사라 함은 제품의 성상·맛·냄새·색깔·표시·포장상태 및 과거 정밀검사실시여부 등을 종합하여 그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를 포함하며, 다음의 축산물을 대상으로 한다.

- (1) 및 (2) 삭제 <2000.12.11>
- (3) 가목의 서류검사대상중 검역원장이 관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산물
- (4)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세구역안에서 압류·몰수하여 검사요구한 것으로서 그 물량이 별표 6에 의한 수거량의 10배 이하인 축산물

다. 정밀검사 및 그 대상

정밀검사라 함은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 및 관능검사를 포함하며, 다음의 축산물을 대상으로 한다.

- (1) 최초로 수입하는 축산물[가목(1)의 축산물(대외무역법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용으로 수입하는 축산물을 제외한다) 및 가목(3)의 축산물과 나목(3) 및 (4)의 축산물을 제외한다]
- (2) 국내외에서 유해성물질 등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제기된 축산물
- (3) 과거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 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축산물과 동일한 축산물로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부터 수입신고건수를 기준으로 5회까지 수입되는 경우의 축산물
- (4)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수거검사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축산물과 동일한 축산물로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부터 수입신고건수를 기준으로 5회까지 수입되는 경우의 축산물
- (5) 관능검사결과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축산물
- (6) 허위서류를 첨부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판정을 받아 수입된 사실이 있는 축산물
- (7) 영 제1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위반한 수입신고인이 수입하는 축산물

라. 무작위표본검사 및 그 대상

무작위표본검사라 함은 정밀검사대상을 제외한 축산물에 대하여 검역원장의 표본추출계획에 의하여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로서 다음의 축산물을 대상으로 한다.

- (1) 과거 정밀검사를 받은 축산물과 동일한 축산물

- (2)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용으로 수입하는 축산물
 - (3) 자사제품 원료용 축산물
 - (4)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지정검역물에 해당하는 축산물
- 다. 수입축산물의 목적외 용도사용
- 가목(2)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는 서류검사를 받은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한 축산물을 당초 수입한 목적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역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축산물의 정밀검사방법 등

가. 검사기관 및 검사기관의 유의사항

- (1) 수입축산물의 정밀검사는 검역원에서 행한다. 다만, 수입신고인의 검사요청을 받았거나 검역원장의 검사의뢰가 있는 경우에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 할 수 있다.
- (2) 수입신고인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외의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당해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3) 최초로 수입하는 축산물의 수입신고량이 검역원장이 고시하는 수입최소량에 미달되는 축산물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 (4) 검역원장은 수입신고한 축산물이 (3)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 회사의 동일한 축산물이라 하더라도 그 수입신고량이 검역원장이 고시하는 수입최소량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로 수입최소량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새로이 정밀검사를 실시하거나 수입자로 하여금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나. 시료의 채취 및 취급방법

- (1) 시료의 채취 및 취급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중 시료의 채취 및 취급방법에 의한다.
- (2) 시료의 채취 및 취급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검사관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2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의사가 수입신고인 또는 당해 수입축산물의 관리자가 참여한 가운데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3) 시료의 채취량은 별표 6의 기준에 의한다.

다. 시료의 정밀검사방법 및 그 결과의 통보

- (1) 시료에 대한 정밀검사는 당해 축산물이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 (2) 수입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검사는 종전의 정밀검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검출빈도가 높거나 인체의 위해도가 높은 잔류농약·중금속·병원미생물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할 수 있다.
- (3) 수입신고인의 검사요청을 받았거나 검역원장으로부터 검사의뢰를 받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신속하게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검역원장(수입신고인의 검사요청에 의한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4) 검역원장이 영 제18조의4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검사결과의 확인 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정밀검사결과를 수입신고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라. 국내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검사증명서 또는 검사성적서 인정 등

수입신고인이 검역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검사증명서 또는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축산물에 대한 정밀검사에 갈음하거나 그 검사항목을 조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마. 표시기준·허위표시 등의 확인

검역원장은 수입축산물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표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법 제32조 및 이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별표 13 제3호하목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여부를 확인하거나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2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의사로 하여금 현물검사시 이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수입축산물의 전산관리

- 가. 검역원장은 수입축산물의 신고사항 등을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나. 수입축산물의 신고필증은 전산기기로 출력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기기의 고장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다.

5. 신고 및 검사업무의 세부기준 등

- 가. 수입축산물의 신고 및 검사업무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나. 유통기한 표시대상 축산물에 대한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그 유통기한 만료일을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별표 8] <개정 2002.8.5, 2006.10.4>

식육의 합격표시(제23조관련)

1. 합격표시방법

가. 합격표시는 다음의 식육종류별로 별도 1 또는 별도 2의 규격에 의한 스탬프식 검인을 이용하여 식육에 표시한다. 다만, 도축장에서 도살·처리한 후 지육을 분할하지 아니한 상태로 포장하여 도축장밖으로 반출하는 가금육의 경우에는 그 포장에 별도 3의 규격에 의한 합격표시를 한다.

- (1) 소·말·양·돼지 등 포유류의 식육 : 별도 1의 검인. 단, 머리·꼬리 등의 표면에는 별도 1의2의 검인
- (2) 닭·오리·칠면조 등 가금류의 식육
 - (가) 포장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별도 2의 검인
 - (나) 포장을 하는 경우 : 별도 3의 표시사항

나. 표시부위

- (1) 지육 : 어깨·등·가슴·배·앞다리·뒷다리 등의 표면
- (2) 기타 식용으로 제공되는 머리·꼬리 등의 표면

2. 검인의 부호·번호 및 규격

가. 시·도별 검인부호

| 시·도 | 부 호 | 시·도 | 부 호 |
|-------|-----|-------|-----|
| 서울특별시 | 서 울 | 강 원 도 | 강 원 |
| 부산광역시 | 부 산 | 충청북도 | 충 북 |
| 대구광역시 | 대 구 | 충청남도 | 충 남 |
| 인천광역시 | 인 천 | 전라북도 | 전 북 |
| 광주광역시 | 광 주 | 전라남도 | 전 남 |
| 대전광역시 | 대 전 | 경상북도 | 경 북 |
| 울산광역시 | 울 산 | 경상남도 | 경 남 |
| 경 기 도 | 경 기 | 제 주 도 | 제 주 |

나. 도축장별 검인번호는 시·도지사가 부여한 두자리의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한다.

다. 별도 1과 별도 2의 스탬프식 검인의 "검"자, 시·도별 부호 및 도축장별 번호는 각각 평면에서 5mm 이상 양각되어야 한다.

라. 수출을 목적으로 검사한 식육의 합격표시에 사용하는 검인의 부호·번호 및 규격에 대하여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3. 검인용 색소

가. 검인용 색소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첨가물의 식용색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검인용 색소는 식육의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사용한다.

(1) 한우고기 : 식용색소 적색3호

(2) 육우고기(새끼를 낳지 아니한 젃소고기 및 국내에서 사육한 수입소의 고기를 포함한다) : 식용색소 황색4호와 식용색소 청색1호를 4:1로 배합한 색소(녹색을 나타낸다)

(3) 젃소·돼지 등 기타 가축의 고기 : 식용색소 적색3호와 식용색소 청색1호를 4:1로 배합한 색소(청색을 나타낸다)

다. 나목외의 검인용 색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검인의 사용

가. 합격표시의 검인은 식육을 도축장밖으로 반출하기 전에 검사관 또는 자체검사원이 직접하거나 검사관 또는 자체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검사보조원이 행한다.

나. 냉장을 하는 경우의 합격표시는 냉장후 출고하기 전에 할 수 있다.

다. 검인기 및 검인용 색소는 검사관 또는 자체검사원이 관리하여야 하며, 검인기보관상자는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별표 9] <개정 2006.10.4>

검사불합격품의 용도전환의 방법과 기준(제24조관련)

1. 용도전환대상 축산물

가. 법 제12조 및 법 제15조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

(1) 항생물질·농약 등 유해성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및 병원성미생물의 검출기준을 초과한 축산물

(2)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부적합한 축산물

나. 법 제10조에 따른 부정행위로 중량이 늘어난 식육

다. 법 제31조의2에 따라 회수하는 축산물

라. 법 제36조에 따라 압류된 축산물

마. 가축의 도살·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식용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가축의 털·내장·피·가죽·발굽·머리·유방 등

바. 검사시료에 사용된 잔여 식육 등

2. 용도전환의 방법 등

가. 농장·동물원 등에서 동물의 사료로 직접 사용한다.

나. 사료 또는 비료(이하 “사료등”이라 한다)제조업체나 렌더링시설(도축부산물 열처리정제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골분·육분·육골분·우모분 등 사료등의 원료로 사용한다.

다. 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을 동물원·농장 및 사료등제조업체 등에 사료 또는 사료등의 원료로 제공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 또는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그 사실을 검사불합격품등 재활용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최종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라. 검사불합격품 등의 물량이 적거나 사료등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를 찾지 못하여 사료등으로 활용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당해 축산물은 「폐기물관리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 용도전환의 기준

가. 축산물의 보관상태에 대한 검사결과 변질 또는 부패되지 아니한 축산물이어야 한다.

나. 해당축산물에는 쇠붙이·합성수지 등 이물질이 붙어있거나 혼입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 항생물질·농약 등 유해성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및 병원성미생물의 검출기준을 초과한 축산물의 경우에는 당해 축산물을 검사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이 기준초과 또는 안전성 확보방법 등을 감안하여 동물의 사료 및 비료이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별표 9의2] <신설 2004.8.4>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검사업무정지의 처분기준(제28조의4관련)

| 위 반 내 용 | 근거 법령 | 처분기준 | | | |
|---|-------------------------|-----------------------|-----------------------|----------------------|----------------------|
| | | 1차 | 2차 | 3차 | 4차 |
| 1.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한 때 | 법 제20조 제3항제 1호 | 지정 취소 | | | |
| 2. 검사관련 시험성적서, 검사대장, 시험기록서 등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때 | 법 제20조 제3항제 2호 | 검사 업무 정지 3월 | 검사 업무 정지 6월 | 지정 취소 | |
| 3.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한 경 우로서 | 법 제20조 제3항제 3호 | | | | |
| 가. 별표 9의3 제2호(지정요건에 적합한 기계· 기구류와 검사원수를 위반한 경우) 또는 동표 제8호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을 위반한 때 | | 검사 업무 정지 1월 | 검사 업무 정지 2월 | 검사 업무 정지 3월 | 지정 취소 |
| 나. 별표 9의3 제1호 또는 제8호마목 내지 야목 의 규정을 위반한 때 | | 검사 업무 정지 15일 | 검사 업무 정지 1월 | 검사 업무 정지 2월 | 검사 업무 정지 3월 |
| 다. 별표 9의3 제4호 내지 제7호 또는 동표 제8 호자목의 규정을 위반한 때 | | 검사 업무 정지 7일 | 검사 업무 정지 15일 | 검사 업무 정지 1월 | 검사 업무 정지 2월 |

비 고

1.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의하며, 처분기준
이 모두 검사업무정지인 경우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2. 검사와 관련한 위반사항이 검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거나 단순착오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그 처분기준이 검사업무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검사업무정지 처분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내에서, 지정취소에 해당하는 때에는 검사업무정지 3월 이상의 범위내에서 각각 경감할 수 있다.
3.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5차 위반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한다.

[별표 9의3] <신설 2004.8.4, 개정 2006.10.4>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제28조의4관련)

1.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지정받은 검사대상 축산물 및 검사항목에 한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2.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이 규칙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역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검사기계·기구류와 검사원을 갖추고 검사하여야 한다.
3.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시험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험과 관련된 검사의 절차·방법 및 판정 등의 내용이 기록된 검사일지 또는 기록서(시험일시, 검체사용량, 시험방법 및 표준시료·시약의 사용내역을 기재한 것과 분석기기 출력물 자료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최종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4.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정한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되, 검사결과의 신뢰성·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검역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시험방법으로 검사할 수 있다.
5.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가. 업소명 및 소재지
 - 나. 의뢰자 및 의뢰기관명
 - 다. 의뢰 또는 접수번호
 - 라. 제품명 및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 마.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 바. 검사기준·규격 및 결과(검사수치 등), 적·부 여부의 판정
 - 사. 검사기관명
6.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실시하여야 하는 당해 축산물가공품의 성분에 관한 규격항목중 일부항목에 대하여 검사의뢰를 한 경우에도 그 항목에 대한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7.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이 규칙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검사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8.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축산물의 시험·검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표준용액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검사하는 것

나. 의뢰받은 검사물체별로 검사하지 아니하고 검사물체를 혼합·조제하여 검사하는 것

다. 다른 검사물체의 시험결과를 인용하는 것

라. 미생물시험시 배양시간을 단축하여 실험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판정하는 것

마. 실험결과 검출된 성분에 대한 확인시험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것

바. 공시험(Blind test)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것

사. 유효기간이 경과된 표준물질 및 시약을 사용하는 것

아. 판정이 모호한 측정치(Peak)에 대하여 확인을 위한 재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것

자. 그 밖에 이 규칙 제28조제1항제4호의 검사업무의 수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제29조관련)

1. 도축업

가. 포유류 가축의 도축업

(1) 공통시설기준

- (가) 도축장에는 계류장·생체검사장·격리장·작업실·검사시험실·소독준비실·폐수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가축수송차량의 세척 및 소독시설·탈의실·목욕실·휴게실 등이 있어야 하며, 별도의 식당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나) 계류장·생체검사장·격리장·작업실의 바닥은 콘크리트·돌 등 내수성이 있고 견고한 재료를 사용하여 미끄럼을 방지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100분의 1 정도의 경사를 유지하여야 한다.
- (다) 계류장은 가축의 종류별로 구획하여 개방식으로 설치하되, 가축을 하역할 수 있는 시설과 사람 및 가축의 출입통제가 가능한 출입문이 있어야 한다.
- (라) 계류장에는 가축의 몸통을 세척할 수 있는 샤워시설과 가축이 물을 먹을 수 있는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마) 생체검사장은 작업실과 인접한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생체검사에 편리한 보정틀·조명장치(밝기가 110룩스 이상이어야 한다) 등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 (바) 생체검사장과 작업실 사이에는 가축이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구획된 통로가 있어야 한다.
- (사) 작업실 안의 바닥과 벽, 바닥으로부터 1.5미터 이하의 벽과 벽 사이의 모서리는 곡선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타일·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로 시공하여 작업과 청소가 쉽도록 하여야 한다.
- (아) 작업실의 천정은 내수성재료를 사용하여 이물이나 먼지 등이 붙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천정에 설치하는 아이빔은 도체를 매달 때 도체가 바닥에 닿지 아니할 정도의 높이를 두어야 한다.
- (자) 작업실 안은 작업과 검사가 용이하도록 자연채광 또는 인공조명장치를 하고 환기장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밝기는 220룩스 이상

- (검사장소의 경우에는 540룩스 이상을 권장한다)이 되어야 하며, 조명장치는 과열시 식육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보호망 등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 (차) 작업실은 도살실·지육처리실·내장처리실로 구획하여 설치하고, 창은 방충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배수구에는 쥐 등의 드나듦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 (카) 작업라인에는 일정간격으로 83℃ 이상의 온수가 나오는 설비를 하여 해체작업과 검사에 사용되는 칼을 소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타) 작업실은 가축이 들어가는 입구를 제외하고는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며, 소·돼지 도축장의 경우 출입문은 공기스크린 장치를 하거나 자동 또는 반자동문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파) 도체에 직접 접촉되는 기계·기구류는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하고 부식이 되지 않는 스테인리스철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로 설치하여야 한다.
- (하) 검사시험실은 검사관실과 시험실을 구획하여 설치하되, 검사관실에는 서류보관함·옷장·신발장·검사기구상자 등이 있어야 하고, 검사기구상자에는 체온계·청진기·해부기·검인기 등이 있어야 하며, 시험실에는 냉·온수가 나오는 급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 (거) 소독준비실 바닥은 내수성재료로 시공하여야 하며, 소독준비실에는 소독에 필요한 장비와 약품 등이 있어야 한다.
- (너) 급수시설은 수돗물 또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더) 배수구는 암거를 원칙으로 하며, 실내에서 실외로 통하는 배수구는 트랩(U자관)을 설치하여 냄새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실내의 배수구 덮개는 스테인리스철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 상부 개폐식으로 설치하고 덮개의 구멍은 쥐 등의 드나듦을 막을 수 있는 크기여야 한다.
- (러) 화장실은 작업실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고 수세설비와 방충·방서설비를 하여야 하며, 수도꼭지는 반자동 또는 자동으로 작동되는 구조로 설치하여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머) 도축장의 진입로·주차장 및 건물과 건물 사이는 포장을 하여야 한다.
- (버) 폐수처리시설은 「수질환경보전법」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한다.
- (서)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하며, 그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거나 폐기물을 퇴비로 활용하는 증명서류가 있어야 한다.
- (어) 탈의실은 작업실과 인접한 곳에 구획하여 설치하고 탈의실 안에는 종업원 개인별로 옷·신발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이 있어야 한다.
- (저) 도축장의 주위는 외부에서 도축장의 내부가 보이지 아니하도록 담장 등 차단시설을 하여야 한다.

(2) 개별시설기준

(가) 소 도축업

- 1) 각 시설의 배치는 별도 4를 기준으로 한다.
- 2) 도축장 부지는 2천㎡ 이상이어야 한다.
- 3) 도축장에는 공통시설기준에 따른 시설 외에 원피처리실, 냉장·냉동실, 계량시설 등이 있어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은 퇴비화시설 또는 동물성폐기물소각로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
- 4) 영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도축장 안에 발골정형실을 따로 설치하는 경우 발골정형실은 작업실과 구획하여 설치하되, 실내온도가 15℃ 이내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설치하고 그 안에는 도체현수시설·발골작업대 및 83℃ 이상의 온수가 나오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 5) 각 시설별 면적은 다음과 같다.

| 시설명 | 면적 | 시설명 | 면적 |
|-------|-------------------------|--------|-------------------------------|
| 계류장 | 150㎡ 이상 (1두당 3.3㎡이상) | 냉장·냉동실 | 41.25㎡ 이상 (평면 3.3㎡당 4두 기준) |
| 생체검사장 | 15㎡ 이상 | 탈의실 등 | 도축능력 및 종업원의 |
| 작업실 | 100㎡ 이상 | 부대시설 | 이용에 적절한 면적 |
| 검사시험실 | 20㎡ 이상 | | |
| 원피처리실 | 30㎡ 이상 | | |

- 6) 작업실과 냉장·냉동실에는 아이빔을 설치하여 일괄작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아이빔의 높이와 간격은 도체가 바닥이나 벽에 닿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7) 작업실 또는 냉장·냉동실의 아이빔은 식육운반차량의 상차대까지 연결하여 설치하되 자동이송장치의 설비를 권장한다.
- 8) 작업실에는 도체를 매다는 라인별로 지육검사대와 내장검사대가 있어야 하며, 검사대는 2인 이상이 동시에 서서 검사하기에 편리한 크기로 하되, 지육과 내장을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거나 검사자가 검사위치를 자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9) 작업실에는 도체를 절단하는 전기톱과 지육세척장치가 있어야 한다.
- 10) 작업실은 실내온도가 15℃ 이내로 유지될 수 있도록 냉방시설의 설비를 권장한다.
- 11) 도살실에는 소가 매달린 상태에서 충분히 방혈될 수 있는 설비가 있어야 하며, 피를 식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별도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 12) 내장처리실은 작업실 안에 구획하여 설치하거나 도축장 안에 따로 설치하되, 내장검사대와 연결되도록 하여야 하고, 내장처리실에는 내장처리대·내장운반구 및 세척용수조가 있어야 하며, 그 재질은 스테인리스철재로 만들어진 것이어야 한다.
- 13) 냉장·냉동실은 평면 3.3㎡당 우지육 4두를 초과할 수 없는 면적으로 하되, 냉장을 하는 경우에는 입고 후 냉장실 내부온도가 10℃ 이하가 되는 성능이어야 하고, 냉장·냉동실 벽면의 재질은 내수성·무독성 재료로 시공되어야 한다.
- 14) 냉장·냉동실은 온도조절이 가능하도록 시공하되, 문을 열지 않아도 온도를 알아볼 수 있는 온도계를 외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냉장·냉동실 안의 현수시설은 도체가 서로 닿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15) 가축수송차량세척·소독시설은 가능한 한 해당차량이 가축을 하역한 후 차량을 돌리지 아니한 상태로 진행하면서 세척·소독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말 도축업

- 1) 공통시설기준 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소 도축업의 시설기준을 준용한다.
- 2) 도축장의 위치·구조·규모·시설배치 등에 대하여는 허가관청이 말과 말고기의 국내수급상황·지역여건 등을 감안하고, 위생상 위해가 없는 범위 안에서 시설기준을 조정하거나 일부시설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 3) 소 도축업의 영업자가 말 도축업의 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도축장시설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말 도축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관청은 당해 도축장의 도축능력을 감안하여 그 영업을 허가할 수 있다.

(다) 양 도축업

- 1) 공통시설기준 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돼지 도축업의 시설기준을 준용한다.
- 2) 도축장의 위치·구조·규모·시설배치 등에 대하여는 허가관청이 양과 양고기의 국내수급상황·지역여건 등을 감안하고 위생상 위해가 없는 범위 안에서 그 시설기준을 조정하거나 일부시설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 3) 소 또는 돼지 도축업의 영업자가 당해 도축장의 도축능력 범위 안에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소 또는 돼지 도축장시설을 이용하여 양 도축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양 도축업의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돼지 도축업

- 1) 각 시설의 배치는 별도 4를 기준으로 한다.
- 2) 도축장의 부지면적은 3천㎡ 이상이어야 한다.
- 3) 도축장에는 공통시설기준에 따른 시설 외에 원피처리실(박피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냉장·냉동실 등이 있어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은 퇴비화시설 또는 동물성폐기물소각로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
- 4) 영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도축장 안에 발골정형실을 따로 설치하는 경우 발골정형실은 작업실과 구획하여 설치하되, 실내온도가 15℃ 이내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설치하고 그 안에는 도체현수시설·발골작업대 및 83℃ 이상의 온수가 나오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5) 각 시설별 면적은 다음과 같다.

| 시설명 | 면 적 | 시설명 | 면 적 |
|-------|---|--------|--|
| 계 류 장 | 100m ² 이상 (1두당 0.83m ² 이상) | 냉장·냉동실 | 61.88m ² 이상 (평균 3.3m ² 당 8두 기준) |
| 생체검사장 | 15m ² 이상 | 탈의실 등 | 도축능력 및 종업원의 |
| 작 업 실 | 200m ² 이상 | 부대시설 | 이용에 적절한 면적 |
| 검사시험실 | 20m ² 이상 | | |
| 원피처리실 | 30m ² 이상 | | |

- 6) 작업실과 냉장·냉동실에는 아이빔을 설치하여 일괄작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아이빔의 높이와 간격은 도체가 바닥이나 벽에 닿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7) 작업실 또는 냉장·냉동실의 아이빔은 식육운반차량의 상차대까지 연결하여 설치하되 자동이송장치의 설비를 권장한다.
- 8) 작업실에는 도체를 매다는 라인별로 지육검사대와 내장검사대가 있어야 하고, 검사대는 2인 이상이 동시에 서서 검사하기에 편리한 크기로 하되, 지육과 내장을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거나 검사자가 검사위치를 자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9) 작업실에는 도체를 절단하는 전기톱과 지육세척장치가 있어야 한다.
- 10) 작업실은 실내온도가 15℃ 이내로 유지될 수 있도록 냉방시설의 설비를 권장한다.
- 11) 도살실에는 돼지가 매달린 상태에서 충분히 방혈될 수 있는 설비가 있어야 하며, 피를 동물의 사료 또는 퇴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팀처리시설 등의 설치를 권장한다.
- 12) 내장처리실은 작업실 안에 구획하여 설치하거나 도축장 안에 따로 설치하되 내장검사대와 연결되도록 하여야 하고, 내장처리실에는 내장처리대·내장운반구 및 세척용수조가 있어야 하며, 그 재질은 스테인리스 철재로 만들어진 것이어야 한다.
- 13) 냉장·냉동실은 평균 3.3m²당 돈지육 8두를 초과할 수 없는 면적으

로 하되, 냉장을 하는 경우에는 입고 후 냉장실 내부온도가 10℃ 이하가 되는 성능이어야 하고 냉장·냉동실 벽면의 재질은 내수성·무독성 재료로 시공되어야 한다.

14) 냉장·냉동실은 온도조절이 가능하도록 시공하되, 문을 열지 않아도 온도를 알아볼 수 있는 온도계를 외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냉장·냉동실 안의 현수시설은 도체가 서로 닿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5) 가축수송차량세척·소독시설은 가능한 해당차량이 가축을 하역한 후 차량을 돌리지 아니한 상태로 진행하면서 세척·소독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 그 밖에 포유류 가축의 도축업

1) 공통시설기준 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소 도축업의 시설기준을 준용한다.

2) 도축장의 위치·구조·규모·시설배치 등에 대하여는 허가관청이 해당가축과 그 식육의 국내수급상황·지역여건 등을 감안하고 위생상 위해가 없는 범위 안에서 시설기준을 조정하거나 일부시설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나. 가금류 가축의 도축업

(1) 공통시설기준

(가) 도축장에는 계류장·도살방혈실·작업실·검사시험실·포장실(지육을 포장하여 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소독준비실·폐수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가축수송차량세척소독시설·탈의실·목욕실·휴게실 등이 있어야 하며, 별도의 식당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나) 계류장·도살방혈실·작업실의 바닥은 콘크리트·돌 등 내수성이 있고 견고한 재료를 사용하여 미끄럼을 방지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100분의 1 정도의 경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계류장은 도축장 안에 설치된 가금의 투입라인에 연결하여 개방식 구조로 설치하되, 차광·송풍 및 물뿌림시설이 있어야 하고, 가금수송차량 또는 가금수송용기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면적으로 하여야 하며, 조명장치의 밝기는 최소한 11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라) 도살방혈실은 작업실과 차단하여 설치하되, 방혈대에서 작업실의 탕지시설까지의 라인은 도체의 방혈이 충분하게 될 수 있는 길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마) 생체검사대는 도살방혈실 옆에 설치하되, 조명장치의 밝기는 최소한 11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바) 작업실 안의 바닥과 벽, 바닥으로부터 1.5미터 이하의 벽과 벽 사이의 모서리는 곡선으로 처리하고 타일·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내수성 재료로 시공하여 작업과 청소가 쉽도록 하여야 한다.
- (사) 작업실의 천정은 내수성재료를 사용하여 이물이나 먼지 등이 붙지 아니하는 구조로 시공하여야 한다.
- (아) 작업실 안에는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1) 도체에 직접 접촉되는 기계·기구류는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하고 부식이 되지 아니하는 스테인리스철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로 설치하여야 한다.
 - 2) 탕지시설·탈모시설·잔모처리시설·내장적출시설·도체절단기 및 냉각시설로 구획하여 일괄작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내장적출라인별로 도체검사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3) 작업실 안은 작업과 검사가 용이하도록 자연채광 또는 인공조명장치를 하고 환기장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밝기는 220룩스 이상(검사장소의 경우에는 540룩스 이상을 권장한다)이 되어야 하며, 조명장치는 과열시 식육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보호망 등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 4) 작업실의 창은 방충설비를 하고 배수구에는 쥐 등의 드나듦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 5) 작업라인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83℃ 이상의 온수가 나오는 설비를 하여 가금의 해체작업과 검사에 사용되는 칼을 소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6) 작업실의 출입구는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자동 또는 반자동문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7) 탕지시설은 콤베어식 연속탕지조 또는 자동탕지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 8) 탈모시설은 콤베어식·이동식탈모기 또는 자동식탈모기로 설치하

여야 한다.

9) 내장적출시설 안에는 콤베어식내장운반기 또는 작업대를 설치하여야 하고 충분한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0) 냉각시설은 냉풍냉각·수냉각 또는 빙수냉각장치로 설치하여야 한다.

11) 내장처리시설은 충분한 면적으로 설치하고 내장처리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자) 검사시험실은 자체검사원실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검사시험실 안에는 심부온도계·시료채취기 등 시험기구류와 해부기구세트, 청진기, 기구보관상자, 색소·검인기보관상자(지육을 포장하여 반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냉장고 등 검사에 필요한 기구와 장비가 있어야 하고, 냉·온수가 나오는 급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차) 소독준비실의 바닥은 내수성재료로 시공하여야 하며, 소독준비실에는 소독에 필요한 장비와 약품 등이 있어야 한다.

(카) 급수시설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검사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타) 배수구는 암거를 원칙으로 하고, 실내에서 실외로 통하는 배수구는 트랩(U자관)을 설치하여 냄새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실내의 배수구 덮개는 스테인리스철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 상부 개폐식으로 설치하고, 덮개의 구멍은 쥐 등의 드나들음을 막을 수 있는 크기여야 한다.

(파) 화장실은 작업실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고 수세설비와 방충·방서설비를 하여야 하며, 수도꼭지는 자동 또는 반자동으로 작동되는 구조로 하여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하) 도축장의 진입로·주차장 및 건물과 건물사이는 포장을 하여야 한다.

(거) 폐수처리시설은 「수질환경보전법」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한다.

(너)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하며, 그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거나 또는 폐기물을 퇴비로 활용하는 증명서류가 있어야 한다.

(더) 탈의실은 작업실과 인접한 곳에 구획하여 설치하고, 탈의실 안에는 종업원 개인별로 옷·신발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이 있어야 한다.

(러) 도축장의 주위는 외부에서 도축장의 내부가 보이지 아니하도록 담장 등 차단시설을 하여야 한다.

(2) 개별시설기준

(가) 닭 도축업

- 1) 각 시설의 배치는 별도 5를 기준으로 한다.
- 2) 도축장 부지면적은 2천백㎡ 이상이어야 한다.
- 3) 도축장에는 공통시설기준에 따른 시설 외에 냉장·냉동실, 가축수송용기세척·소독시설이 있어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은 동물성폐기물소각로시설 또는 렌더링시설의 설비를 권장한다.
- 4) 각 시설별 면적은 다음과 같다.

| 시설명 | 면적 | 시설명 | 면적 |
|--------|---------|-------|---------------------------|
| 냉장·냉동실 | 100㎡ 이상 | 탈의실 등 | 도축능력 및 종업원의 이용에 적절한 면적 |
| 작업실 | 200㎡ 이상 | 부대시설 | |
| 검사시험실 | 20㎡ 이상 | | |

- 5) 작업실은 일괄작업이 가능하도록 도축기계를 자동식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실내온도가 15℃ 이내로 유지될 수 있도록 냉방시설의 설비를 권장한다.
- 6) 탕지시설은 도체의 이동방향과 반대로 온수가 공급되어 깨끗한 온수가 나오는 곳에서 도체를 꺼낼 수 있도록 자동탕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7) 향문제거기, 허파제거기, 기도·식도인출기, 내외부세척기·내장적출시설은 자동설비를 권장한다.
- 8) 검사시험실에는 (1)공통시설기준 중 (자)의 시설·장비 외에 현미경과 혈청검사 또는 잔류물질검사에 필요한 간이검사기구류가 있어야 한다.
- 9) 냉장·냉동실은 온도조절이 가능하도록 시공하되, 문을 열지 않아도 온도를 알아볼 수 있는 온도계를 외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 10) 가축수송차량세척·소독시설은 해당차량이 가축을 하역한 후 차량을 돌리지 아니한 상태로 진행하면서 세척·소독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닭 수송용기의 세척·소독시설은 작업실과 구

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1) 영업자가 도축과정에서 발생하는 우모·내장 등 동물성폐기물을 이용하여 사료의 원료를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축장 안에 렌더링설비를 할 수 있다.

(나) 그 밖에 가금류 가축의 도축업

1) 공통시설기준 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닭 도축업의 시설기준을 준용한다.

2) 도축장의 위치·구조·규모·시설배치 등에 대하여는 허가관청이 해당가축과 그 식육의 국내수급상황·지역여건 등을 감안하고 위생상 위해가 없는 범위 안에서 시설기준을 조정하거나 일부시설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다. 공동사용시설의 설치생략 등

(1) 도축업의 영업자가 같은 도축장에서 2종류 이상의 가축을 도살하거나 동일 작업장 안에서 추가로 시설을 갖추어 다른 종류의 가축을 도살하고자 하는 경우 검사시험실, 소독준비실, 원피처리실, 내장처리실, 폐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탈의실, 목욕실, 휴게실, 냉장·냉동실, 가축수송차량세척·소독시설 등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냉장·냉동실의 면적은 가축의 지육별 수용기준을, 도축장의 부지면적은 가축별 면적기준을 각각 합산한 면적이 되어야 한다.

(2)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부장관은 외국으로 수출하는 가축을 도살·처리하는 도축업의 영업자로 하여금 수출상대국의 정부기관 또는 수입자의 요구기준에 적합한 식육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2. 집유업

가. 집유장은 원유취급실 및 검사실 등으로 구획되어야 한다.

나. 집유장의 주위환경은 매연·먼지 및 악취 등이 없어야 하며, 위생적으로 원유를 받거나 저장할 수 있도록 다른 목적의 시설과 격리되어야 한다.

다. 주차장·차도 등은 먼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포장하여야 하며, 배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라. 원유취급실에는 다음 설비를 하여야 한다.

- (1) 저유조 및 밀크펌프 등이 있어야 하고 유량기 및 냉각기는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으며, 원유와 직접 접촉되는 부분은 스테인리스철재 또는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로서 세척·분해·조립이 쉬운 것으로 설치하되 법 제5조에 따른 용기등의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저유조와 밀크펌프는 차량에 부착된 것을 이용할 수 있다.
- (2) 면적은 작업에 충분하도록 하여야 하며, 바닥·내벽·천정 및 출입문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가) 바닥은 타일·콘크리트·돌 등 내수성자재를 사용하고 청소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 (나) 내벽은 내수성자재를 사용하고 바닥에서 최소한 1.5미터까지는 타일·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자재로 사면을 축조하고 청소하기 쉽도록 하여야 한다.
 - (다) 작업실의 창은 방충설비를 하고 배수구에는 쥐 등의 드나듦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 (라) 천정은 내수성재료를 사용하여 이물이나 먼지 등이 붙지 아니하는 구조로 시공하여야 한다.
 - (마) 출입구는 개폐식으로 하고 그 입구에는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 (3) 채광·조명이 충분하여야 하고 환기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 (4) 사용이 편리한 위치에 위생적인 수세설비 및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5) 저유조는 뚜껑이 있어야 하고 8시간 이상 원유를 저장할 수 있도록 보냉 또는 냉각이 용이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6) 계량기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마. 검사실

- (1) 검사실은 30㎡ 이상의 면적으로 하고 원유검사에 필요한 기구·기계 및 시약을 비치하여야 하며, 집유장의 소독 및 악취제거 등을 위한 기구·약품을 상비하여야 한다.
- (2) 원유검사에 필요한 기구 및 장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유성분검사기·세균수검사기 및 체세포검사기는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 | | | |
|--------------------|-------|----------------------|----------|
| 1. 우유비중계 | 5개 이상 | 28. 알콜시험판 또는 알콜시험관 | 5개 이상 |
| 2. 원통실린더 | 5개 이상 | 29. 온도계 | 2종 이상 |
| 3. 주정계 | 5개 이상 | 30. 냉장고 | |
| 4. 진액검사기 | | 31. 집락계산기 | |
| 5. 산도측정장치 | | 32. 페트리디쉬 | 20개 이상 |
| 6. 증류수 제조장치 | | 33. 가스버너 또는 전기풍로 | 2개 이상 |
| 7. 젤베르 유지계 | | 34. 비이커(대·중·소) | 각 5개 이상 |
| 8. 유지방 원심분리기 | | 35. 삼각플라스크(대·중·소) | 각 5개 이상 |
| 9. 피펫 10ml(황산용) | 5개 이상 | 36. 메스플라스크(대·중·소) | 각 3개 이상 |
| 10. 피펫 11ml(우유용) | 5개 이상 | 37. 피펫(0.01-10ml 5종) | 10개 이상 |
| 11. 피펫 1ml(아밀알콜용) | 5개 이상 | 38. 자불소독기 | 3개 이상 |
| 12. 항온수조 | 2개 이상 | 39. 뷰우렛 | 3개 이상 |
| 13. 건열멸균기(드라이오븐) | | 40. 깔때기 | 2개 이상 |
| 14. 고압멸균기 | | 41. 메스실린더 | 5개 이상 |
| 15. 원심분리기 | | 42. 시험관 | 필요량 |
| 16. 화학천평 | 1대 이상 | 43. 평량병 | 10개 이상 |
| 17. 교반기 | | 44. 시약병(대·중·소) | 각 10개 이상 |
| 18. pH메타 또는 pH페이퍼 | | 45. 스탠드 | 3개 이상 |
| 19. 부란기(인큐베이터) | | 46. 클램프 | 2개 이상 |
| 20. 데시케이터 | 1대 이상 | 47. 시험관꽂이 | 10개 이상 |
| 21. 시약스푼 | 2개 이상 | 48. 삼발이 | 2개 이상 |
| 22. 가위 | 2개 이상 | 49. 진열장(시약보관용) | |
| 23. 핀셋 | 2개 이상 | 50. 현미경 | |
| 24. 솔 | 2개 이상 | 51. 유성분 검사기 | |
| 25. 시험검사에 필요한 시약 | | 52. 세균수 검사기 | |
| 26. 시험대(세척대를 포함한다) | | 53. 체세포수 검사기 | |
| 27. 알콜램프 | 2개 이상 | | |

- (3) 검사실 안은 검사가 용이하도록 자연채광 또는 인공조명장치를 하고 환기장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밝기는 220룩스 이상(검사장소의 경우에는 540룩스 이상을 권장한다)이 되어야 한다.
 - (4) 검사실은 실내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냉·온방설비를 하여야 한다.
 - (5) 검사실 안의 온도계와 습도계는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 바. 위생·편의시설
- 종업원이 이용하기에 충분한 면적의 탈의실 및 휴게실이 있어야 하며 수세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사. 급수시설
- 급수시설은 수도물이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아. 하수구는 암거 또는 상부개폐식으로 하여야 한다.
- 자. 화장실
- (1) 화장실은 작업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고 위생적인 수세설비를 하여야 한다.
 - (2) 화장실의 바닥·벽 및 천정은 타일·콘크리트 등 내수성자재로 시설되어야 하고 방충·방서시설을 하여야 한다.
- 차. 「수질환경보전법」에 적합한 폐수처리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
- 카. 그 밖의 시설
- (1) 집유에 필요한 기계 및 도구 등을 보관하여야 하고 집유탱크 등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시설·장비가 있어야 한다. 다만, 타인과 시설사용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동 시설·장비를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 (2) 집유장의 주위는 외부에서 집유장의 내부가 보이지 아니하도록 담장 등으로 차단시설을 하여야 한다.
- 타. 공동사용시설의 설치생략 등
- (1) 허가관청은 집유업의 영업자가 집유한 원유를 유가공업의 작업장에서 처리·가공하는 경우 제3호 축산물가공업의 시설기준중 검사실(검사시험기구 및 장비를 포함한다)·창고·급수시설·화장실·위생편의시설 등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 (2) 허가관청은 집유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농가에서 집유한 원유를 집유장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유가공업의 작업장 안에 있는 집유시설로 직송하는 경우 원유의 위생적인 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일부 시설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3. 축산물가공업

가. 공통시설기준

- (1) 축산물의 가공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치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의 위치 등
- (가)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의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축산물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할 정도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 (나) 건물의 구조는 가공하고자 하는 축산물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 (다) 건물의 자재는 축산물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축산물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 (2) 작업장
- (가) 작업장(원료처리실·가공실·포장실 그 밖에 축산물의 처리·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한다)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층 등에 의하여 별도의 방으로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 (나) 작업장은 시설별로 분리 또는 구획(칸막이·커튼 등에 의하여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가공공정의 자동화 또는 시설·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 또는 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각각의 시설이 서로 구분(선·줄 등에 의하여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정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1)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2) 내벽 및 천정은 이물이나 먼지 등이 쌓이지 아니하도록 표면이 미끄러워야 한다.

3)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치하거나 세균방지용페인트를 칠하여야 한다.

(라) 작업장의 밝기는 220룩스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동화시설의 설치 등으로 직접 원료나 축산물을 처리하지 아니하는 곳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바) 작업장에는 쥐 등의 드나듦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3) 축산물취급시설 등

(가) 축산물을 처리·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축산물취급시설은 축산물의 특성에 따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용기등에 관한 규격 등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축산물취급시설 중 축산물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재질[스테인리스·알루미늄·에프알피(FRP)·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다)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5) 화장실

(가)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 및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의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를 칠할 것을 권장한다.

(다) (가) 및 (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또는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창고 등의 시설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하고, 그 바닥에는 양탄자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창고에 갈음할 수 있는 냉동·냉장시설을 따로 갖춘 업소에서는 창고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검사실

(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축산물위생검사기관과 위탁계약을 맺은 경우 또는 2개소 이상의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는 동일 법인·동일 영업자가 자사의 기존 검사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검사실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자가검사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시약류를 갖추어야 한다.

나. 개별시설기준

(1) 식육가공업

(가) 식육가공품은 가공과정을 자동화시설로 설치하여야 하며(원료의 배합과정에서 제품의 포장과정까지 필요한 시설에 한하며, 베이컨·건조저장육 등 제품의 특성상 자동화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한다), 그 밖의 시설기준은 가목에 의한 공통시설기준에 따른다.

(나) 식육가공품의 가공실은 그 실내온도가 15℃ 이내로 유지될 수 있는 온도조절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열처리를 실시하는 장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유가공업

(가) 유가공품은 가공과정을 자동화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원료의 배합 과정에서 제품의 포장과정까지 필요한 시설에 한하며, 버터·치즈 등 제품의 특성상 자동화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한다)

(나)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로 하여 가공하는 경우로서 법 제22조에 따른 집유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집유업 시설

기준에 따른 시설을 함께 설치하여야한다. 다만, 허가관청은 원유의 수집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유의 위생적인 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시설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3) 알가공업

(가) 제조가공실에는 검란기·세란기·파란장치·살균시설 등 알의 처리·가공에 필요한 장비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알가공품은 가공과정을 자동화시설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다. 공동사용시설의 설치생략

허가관청은 동일한 영업자가 2 이상의 업종의 영업을 할 때 또는 2 이상의 가공품을 처리·가공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의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제품과 동일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때에는 그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작업장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4. 축산물보관업

가.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나. 작업장에는 상하차대·냉동예비실·냉동실 및 냉장실이 있어야 하며,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냉동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냉동예비실과 냉동실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작업장의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물이 고이거나 습기가 차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냉동예비실·냉동실 및 냉장실은 온도조절이 가능하도록 시공하되, 문을 열지 아니하고도 온도를 알아볼 수 있는 온도계를 외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 작업장의 조명시설은 75룩스 이상이어야 하고,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배출시키기 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바. 작업장에는 쥐 등의 드나듦을 막을 수 있는 방서·방충시설을 하여야 한다.

사. 상호 오염원이 될 수 있는 축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서로 분리하여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 작업장 안에서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 중 축산물에 직접 접촉하

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재질로서 씻기 쉬우며, 살균·소독이 가능한 것 이어야 한다.

자.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1) 화장실은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2)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 (3) (2) 단서에 따라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4)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또는 작업장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의2. 식육포장처리업

가. 건물의 위치 등

- (1)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의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육포장처리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할 정도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 (2) 건물의 구조는 적정한 온도가 유지되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 (3) 건물의 자재는 축산물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축산물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작업장(원료보관실·식육처리실·포장실 그 밖에 식육처리·포장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한다)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정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1)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2) 내벽 및 천정은 이물이나 먼지 등이 쌓이지 아니하도록 표면이 미끄러워야 한다.
- (3)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치하거나 세균방지용페인트를 칠하여야 한다.

라. 작업장의 밝기는 220룩스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원료나 식육포장처리를 하지 아니하는 곳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을 환기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바. 작업장에는 쥐 등의 드나듦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사. 작업장의 실내온도가 15℃ 이내로 유지될 수 있도록 온도조절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식육과 직접 접촉하는 시설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자. 냉동·냉장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차. 수돗물이나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검사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작업실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또는 작업장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타. 원료와 포장육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하고, 그 바닥에는 양탄자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창고에 갈음할 수 있는 냉동·냉장시설을 따로 갖춘 업소에서는 창고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파. 공동사용시설의 설치 생략

허가관청은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판매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5. 축산물운반업

가. 운반시설

(1)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자동차관리법」

에 따라 등록된 차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선박이 있어야 한다.

- (2) 냉동 또는 냉장시설로 된 적재고의 내부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문을 열지 아니하고도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외부에 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 (3) 적재고는 혈액·오수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고 냄새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4) 도축장에서 지육을 운반하는 냉장차량의 경우 지육을 매달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나. 세차시설

세차장은 「수질환경보전법」에 적합한 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세차장을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동일 영업자가 공동으로 세차장을 설치하거나 타인의 세차장을 사용계약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다. 차고

축산물운반용 차량을 주차시킬 수 있는 전용차고를 두어야 한다. 다만, 전용차고를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타인의 차고를 사용계약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라. 영업장

영업활동을 위한 영업소를 두어야 한다.

6. 축산물판매업

가. 공통시설기준

- (1) 영업장(축산물수입판매업을 제외한다)
 - (가) 건물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 (나) 식육판매업의 작업실은 제3호 가목(2)의 규정을 준용한다.
- (2) 급수시설(우유류판매업·축산물수입판매업 등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영업장을 제외한다)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 검사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3)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가) 화장실은 작업장 및 판매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 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 (다) (나) 단서에 따라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라)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또는 작업장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축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를 하거나 소비자에게 직거래를 통한 가격안정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 내에 특정장소에서 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나. 개별시설기준

(1) 식육판매업

- (가) 영업장의 면적은 26.4㎡ 이상을 권장한다.
- (나) 영업장에는 전기냉동시설·전기냉장시설·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식육을 전문적으로 다른 업소 등에 납품만 하는 경우로서 소비자에게 직접 진열·판매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진열상자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다) 전기냉동시설은 식육을 -18℃ 이하로 냉동보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전기냉장시설 및 진열상자는 식육을 10℃ 이하로 냉각하여 보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내·외부에는 온도계를 비치하여야 한다.
- (라) 식육을 자기업소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스스로 운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5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 (마) 시설기준의 적용특례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식육판매업의 동업자조합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식육판매업의 영업장을 두고 식육판매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식육판매시설을 갖춘 차량을 이용

하여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식육을 판매할 수 있다.

- 1) 판매차량은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 2) 판매차량에는 칼·도마 등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물탱크, 진열상자, 판매대 및 저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 3) 진열상자는 식육을 10℃ 이하로 냉각하여 보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내부에는 온도계를 비치하여야 한다.
- 4) 판매차량의 세차 및 차고에 대하여는 제5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 5) 판매차량의 외부에는 식육판매업의 영업소 명칭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바) 공동사용시설의 설치 생략

신고관청은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식육포장처리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2)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 (가) 세척시설·보관시설·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세척시설은 부식성이 없고 내수성 재질이어야 한다.
- (다) 보관시설은 10℃ 이하의 전기냉장 또는 영하 18℃ 이하의 전기냉동이 가능하여야 하고, 내부에는 온도계를 비치하여야 한다.
- (라) 진열상자는 식육부산물을 종류별로 진열하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 (마) 진열상자는 내부에 온도계를 비치하고 10℃ 이하를 유지하여야 하며, 진열한 식육부산물을 소비자가 보기 쉽도록 하여야 한다.
- (바) 식육부산물을 채취·수집·운반하는 기구는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3) 우유류판매업

- (가) 판매장에는 우유류를 10℃ 이하로 냉각하여 보존할 수 있는 우유류 전용의 전기냉장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그 내부에는 온도계를 비치하여야 한다.
- (나) 소비자에게 배달판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생적인 운반용기

가 있어야 한다.

(4) 축산물수입판매업

(가)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나)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실온에서 보관할 수 없는 축산물의 경우에는 냉장·냉동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나)의 규정에 불구하고 축산물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창고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11] <개정 2006.10.4>

행정처분기준(제41조 및 제43조관련)

1. 일반기준

가. 2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1) 그 위반행위가 영업정지에만 해당하거나, 영업의 일부정지에만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2) 그 위반행위가 1 이상의 영업정지와 1 이상의 영업의 일부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각의 영업정지·영업의 일부정지처분기간을 가목에 따라 산정한 후, 그 영업정지기간이 영업의 일부정지기간보다 길거나 같으면 그 영업정지 처분만을 하고, 그 영업정지기간이 영업의 일부정지기간보다 짧으면 그 영업정지처분과 그 초과기간에 대한 영업의 일부정지처분을 병과하며, 그 위반행위가 1 이상의 영업의 일부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준용하여 처분한다.

나.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산정은 최근 1년간(다만, 법 제4조제5항·제9조제2항·제11조제1항·제12조·제17조·제18조·제22조제2항·제32조·제33조제1항 및 제36조 위반은 3년으로 한다)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수거검사에 따른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같은 날 가공한 같은 제품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같은 위반행위로 본다.

라. 4차 이상 위반의 경우에 있어서 3차 위반의 처분기준이 영업의 일부정지인 경우에는 영업의 일부정지 6월의 처분을 하고,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6월 또는 영업취소처분을 한다.

마. 가목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는 뒤에 다시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각 행정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본다.

- 바. 축산물의 수거검사결과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가 당해 축산물의 처리·가공·운반·진열·보관 또는 판매 과정 중 어느 과정에서 기인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원인제공자에 대하여 처분한다.
- 사. 축산물운반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 2차 위반까지는 위반행위를 한 당해차량에 대하여 처분을 하고, 3차 위반부터는 당해 축산물운반업의 영업신고를 한 전체차량에 대하여 처분한다.
- 아. 축산물수입판매업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 그 처분이 영업의 일부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의 일부정지기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영업정지처분을 한다.
- 자. 법 제26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의 경우에는 그 승계 전에 당해 영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그 영업을 승계받은 자가 이를 승계한다.
- 차.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 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 (1)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경미한 위반의 경우로서 인수공통 전염병·식중독 등 공중위생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 (2) 축산물의 표시기준의 위반의 경우로서 일부 가공품에 대한 제조일자 등의 표시누락 등 그 위반사유가 영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단순한 기계작동상의 오류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
 - (3) 축산물을 처리·가공하거나 수입만 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아니한 때
 - (4)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축산물의 회수 및 폐기와 법 제37조에 따른 축산물의 회수에 관한 사실의 공표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그 밖에 축산물의 수급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2. 개별기준

가. 도축업·집유업

| 위 반 행 위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
|---|------------|-------------|-------------|-------------|
|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1.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가축의 도살·처리·집유 등의 기준위반 가. 도축업 | 법 제27조 제1항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 (1) 가축을 매달지 아니한 상태로 방혈을 한 때 | | | | |
| (2) 그 밖에 가축의 도살·처리 기준을 위반한 때 | | 경고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 나. 집유업 |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 (1) 보냉탱크집유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집유한 때 | | | | |
| (2) 그 밖에 집유의 기준을 위반한 때 | | 경고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 2. 법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또는 법 제32조제1항 위반 |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정지 3월 |
| 가.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하지 아니한 때 | | | | |
| 나. 작성된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운용하지 아니한 때 | | 경고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 다.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하지 아니한 때(도축업에 한한다) |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정지 3월 |
| 라. 작성된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운용하지 아니한 때(도축업에 한한다) | | 경고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 마.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 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 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때 |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정지 3월 |

| | | | |
|---|-------------|-------------|-------------|
| 3.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가축에 대하여 강제로 물을 먹이거나 식육에 물을 주입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 또는 용량을 늘리는 행위를 한 때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허가 취소 |
| 4. 법 제11조제1항·제4항 및 법 제12조제1항·제2항 위반 가. 가축과 식육에 대하여 검사관 또는 자체검사원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나. 점유하는 원유에 대하여 검사관 또는 자체검사원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다. 착유가 금지된 가축으로부터 점유한 때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 5. 법 제13조제2항·제3항·제4항 위반 가. 자체검사원을 지정하지 아니한 때 나. 자체검사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수행상 필요한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때 다. 작업장에 두어야 하는 자체검사원의 수가 기준에 미달한 때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 6. 법 제14조 위반 가. 검사보조원을 두지 아니한 때 나. 작업장에 두어야 하는 검사보조원의 수가 기준에 미달한 때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 7.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가 없는 식육을 반출한 때 | 경고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4일 |
| 8.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미검사품을 반출한 때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 | | | |
|--|----------------------------|-------------|----------------------------|
| 가. 도축업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 나. 집유업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 9. 법 제18조 위반 | | | |
| 가.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또는 축 산물을 소각·매몰 등의 방법으 로 폐기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 과 기준에 위반한 때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월 |
| 나.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또는 축 산물을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 그 방법과 기준 에 위반한 때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 10.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검사관의 검사를 거부·방해한 때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 11. 법 제21조제1항, 법 제22조제2항· 제4항 및 제5항 위반 | | | |
| 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장을 이전한 때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 | |
| 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 업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 거한 경우로서 | | | |
| (1) 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당해 시설이 멸실된 때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 | |
| (2) 시설 일부를 철거하여 당해 시설이 멸실된 때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
| 다.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 시설의 구조 또는 작업장 면적을 변경하여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정지 3월 |

| | | | |
|---|-------------|-------------|-------------|
| 라.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허가 취소 |
| 마. 영업의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 경고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 바. 급수시설기준에 위반한 때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 사. 허가를 받은 업종의 영업행위가 아닌 다른 업종의 영업행위를 한 때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정지 3월 |
| 아. 가목 내지 사목 외의 경우로서 허가 또는 신고사항 중 | | | |
| (1) 시설기준에 위반한 때 | 시설개수 명령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 (2)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때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 12.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경고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 13. 법 제27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6월 이상 휴업한 때 | 영업허가 취소 | | |
| 14. 법 제31조제2항 위반 | | | |
| 가. 별표 12의 도축업·집유업·축산물 가공업·식용포장처리법 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 | | |
| (1) 제1호 마목을 위반한 때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 (2) 제2호 가목·나목·다목 또는 마목을 위반한 때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 (3) 제3호 가목·다목 또는 라목을 위반한 때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 나. 가목 외의 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경우로서 | | | |
| (1) 2개 사항 이상을 위반한 때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월 |

| | | | | |
|---|-----------------------------------|----------------------------|-------------|-------------|
| (2) 1개 사항을 위반한 때 |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 14의2.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위생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 | 경고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 15. 영업정지처분기간 중에 영업을 한 때 |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 | |
| 16. 「축산법」 제28조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상장하거나 반출한 때 | 「축산법」 제33조제1항 제1호 및 제 2호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30일 |
| 17. 「축산법」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사의 등급판정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 「축산법」 제33조제1항 제3호 | 경고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30일 |
| 1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5호를 제외한 법 위반 |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나. 축산물가공업 · 식육포장처리업 · 축산물수입판매업

| 위 반 행 위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
|---|---------------|-------------------------------|---------------------------|---------------------------|
|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1. 법 제4조제5항 위반 | 법 제27조 제1항 | | | |
| 가.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정하지 아니한 축산물을 가공한 때 | | 영업정지 15일과 당해 제품폐기 | 영업정지 1월과 당해 제품폐기 | 영업정지 3월과 당해 제품폐기 |
| 나. 비소·카드뮴·납·수은·중금속·메탄올 및 시안화물의 기준을 위반한 때 | | 영업의 일부정지 1월과 당해 제품폐기 | 영업정지 1월과 당해 제품폐기 | 영업정지 2월과 당해 제품폐기 |

| | | | |
|---|--|--|--|
| <p>다. 바륨·포름알데히드·올소톨루엔·설펜아미드·방향족탄화수소·폴리옥시에틸렌 또는 세레늄의 기준을 위반한 때</p> | <p>영업의 일부정지 15일과 당해 제품폐기</p> | <p>영업의 일부정지 1월과 당해 제품폐기</p> | <p>영업정지 1월과 당해 제품폐기</p> |
| <p>라. 방사능잠정허용기준을 위반한 때</p> | <p>영업의 일부정지 1월과 당해 제품 및 원료폐기</p> | <p>영업정지 1월과 당해 제품 및 원료폐기</p> | <p>영업정지 3월과 당해 제품 및 원료폐기</p> |
| <p>마.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식육을 원료로 사용한 때</p> | <p>영업의 일부정지 1월과 당해 제품 및 원료폐기</p> | <p>영업정지 1월과 당해 제품 및 원료폐기</p> | <p>영업정지 3월과 당해 제품 및 원료폐기</p> |
| <p>바. 아플라톡신잠정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을 원료로 사용한 때</p> | <p>영업의 일부정지 1월과 당해 제품 및 원료폐기</p> | <p>영업정지 1월과 당해 제품 및 원료폐기</p> | <p>영업정지 3월과 당해 제품 및 원료폐기</p> |
| <p>사. 항생물질 등의 잔류허용기준(항생물질·합성항균제 또는 합성호르몬제)을 초과한 것을 원료로 사용한 때</p> | <p>영업의 일부정지 1월과 당해 제품 및 원료폐기</p> | <p>영업정지 1월과 당해 제품 및 원료폐기</p> | <p>영업정지 3월과 당해 제품 및 원료폐기</p> |

| | | | |
|---|--------------------------------------|-------------------------------------|-------------------------------------|
| <p>아. 병원성미생물(살모넬라·황색포도상구균·장염비브리오 또는 크로스트리디움 등)이 검출된 때</p> | <p>영업의 일부정지 1월과 당해</p> | <p>영업정지 1월과 당해 제품폐기</p> | <p>영업정지 3월과 당해 제품폐기</p> |
| <p>자. 산가·동·과산화물가·대장균·대장균군 또는 일반세균 시험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때</p> | <p>제품폐기 영업의 일부정지 15일과 당해</p> | <p>제품폐기 영업의 일부정지 1월과 당해</p> | <p>제품폐기 영업의 일부정지 3월과 당해</p> |
| <p>차. 주석·포스파타제·암모니아성 질소·아질산근 또는 형광중백제 시험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때</p> | <p>제품폐기 영업의 일부정지 1월과 당해</p> | <p>제품폐기 영업의 일부정지 2월과 당해</p> | <p>제품폐기 영업정지 1월과 당해</p> |
| <p>카. 식품첨가물의 사용 및 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p> | <p>영업정지 1월과 당해</p> | <p>영업정지 2월과 당해</p> | <p>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p> |
| <p>(1) 허용한 식품첨가물 외의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였거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첨가물을 사용한 때</p> | <p>제품폐기</p> | <p>제품폐기</p> | <p>제품폐기</p> |
| <p>(2) 사용 또는 허용량기준을 초과한 경우로서</p> | <p>(가) 30퍼센트 이상 초과한 때</p> | <p>영업의 일부정지 1월과 당해</p> | <p>영업정지 2월과 당해</p> |
| <p>(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초과한 때</p> | <p>제품폐기 영업의 일부정지 15일과 당해</p> | <p>제품폐기 영업의 일부정지 1월과 당해</p> | <p>제품폐기 영업정지 1월과 당해</p> |

| | | | |
|--|--|---|---|
| <p>(다) 10퍼센트 미만 초과한 때</p> <p>타. 나목 내지 카목 외의 성분규격 위반 또는 법 제25조에 따라 품목제조보고한 성분배합비율을 위반한 경우로서</p> <p>(1) 30퍼센트 이상 부족하거나 초과한 때</p> <p>(2)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때</p> <p>(3)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때</p> <p>(4) 1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때</p> | <p>경고</p> <p>영업의 일부정지</p> <p>2월과 당해</p> <p>제품폐기</p> <p>영업의 일부정지</p> <p>1월과 당해</p> <p>제품폐기</p> <p>영업의 일부정지</p> <p>15일</p> <p>경고</p> | <p>영업의 일부정지</p> <p>1월</p> <p>영업의 일부정지</p> <p>2월과 당해</p> <p>제품폐기</p> <p>영업의 일부정지</p> <p>1월과 당해</p> <p>제품폐기</p> <p>영업의 일부정지</p> <p>1월</p> <p>영업의 일부정지</p> <p>7일</p> <p>영업의 일부정지</p> <p>7일</p> | <p>영업의 일부정지</p> <p>2월</p> <p>영업정지</p> <p>2월과 당해</p> <p>제품폐기</p> <p>영업정지</p> <p>1월과 당해</p> <p>제품폐기</p> <p>영업의 일부정지</p> <p>2월</p> <p>영업의 일부정지</p> <p>15일</p> <p>영업의 일부정지</p> <p>15일</p> |
| <p>파. 이물 등이 혼입된 때</p> <p>하.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원료의 구비요건이나 가공기준을 위반한 경우(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p> <p>(1) 축산물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동·식물성 원료를 사용한 때</p> | <p>경고</p> <p>영업의 일부정지</p> <p>7일</p> <p>영업의 일부정지</p> <p>7일</p> <p>영업의 일부정지</p> <p>15일과 당해</p> <p>제품폐기</p> | <p>경고</p> <p>영업의 일부정지</p> <p>7일</p> <p>영업의 일부정지</p> <p>7일</p> <p>영업의 일부정지</p> <p>1월과 당해</p> <p>제품폐기</p> | <p>영업의 일부정지</p> <p>15일</p> <p>영업의 일부정지</p> <p>15일</p> <p>영업의 일부정지</p> <p>15일</p> <p>영업의 일부정지</p> <p>2월과 당해</p> <p>제품폐기</p> |

| | | | |
|---|--------------------------------------|---|---|
| (2)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을 축산물 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한 때 | 영업의 일부정지 10일과 당해 제품폐기 경고 | 영업의 일부정지 20일과 당해 제품폐기 영업의 일부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의 일부정지 5일 | 영업의 일부정지 1월과 당해 제품폐기 영업의 일부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의 일부정지 10일 |
| (3)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때 | | | |
| 거.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때 | 영업정지 7일 경고 | 영업정지 15일 영업의 일부정지 5일 | 영업정지 1월 영업의 일부정지 10일 |
| 나. 가목 내지 거목 외의 사항을 위반한 때 | | | |
| 2. 법 제6조제2항 및 법 제32조제1항 위반 | | | |
| 가. 일정부위에 일괄표시할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일부항목을 누락한 경우로서 | | | |
| (1) 3개 사항 이상을 위반한 때 | 영업의 일부정지 1월 | 영업의 일부정지 3월 | 영업정지 2월 |
| (2) 3개 사항 미만을 위반한 때 | 영업의 일부정지 15일 | 영업의 일부정지 2월 | 영업의 일부정지 3월 |
| 나. 일정장소에 일괄표시할 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것으로서 | | | |
| (1) 3개 사항 이상을 허위로 표시한 때 | 영업의 일부정지 1월 | 영업의 일부정지 3월 | 영업정지 2월 |
| (2) 3개 사항 미만을 허위로 표시한 때 | 영업의 일부정지 15일 | 영업의 일부정지 2월 | 영업의 일부정지 3월 |
| 다. 제품명의 표시가 표시기준에 위반된 때 | 영업의 일부정지 7일 | 영업의 일부정지 15일 | 영업의 일부정지 1월 |
| 라. 화학적 합성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함유된 식품첨가물의 명칭 또는 용도표시기준을 위반한 때 | 영업의 일부정지 5일 | 영업의 일부정지 10일 | 영업의 일부정지 1월 |

| | | | |
|---|---|---|--|
| <p>마.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p> | | | |
| <p>(1)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p> | <p>영업의 일부정지 15일과 당해 제품 폐기</p> | <p>영업의 일부정지 1월과 당해 제품 폐기</p> | <p>영업의 일부정지 2월과 당해 제품 폐기</p> |
| <p>(2) 유통기한의 표시를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한 내용과 달리 초과하여 표시하거나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유통기한을 초과하여 표시한 때</p> | <p>영업의 일부정지 10일과 당해 제품 폐기</p> | <p>영업의 일부정지 20일과 당해 제품 폐기</p> | <p>영업의 일부정지 1월과 당해 제품 폐기</p> |
| <p>바.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변조하는 등의 행위를 한 때</p> | <p>영업정지 1월과 당해 제품 폐기</p> | <p>영업정지 2월과 당해 제품 폐기</p> | <p>영업정지 3월과 당해 제품 폐기</p> |
| <p>사. 무게·용량·개수 등이 표시된 양과 실제량과의 부족량의 허용오차를 위반한 것으로서</p> | <p>영업의 일부정지 2월 영업의 일부정지 1월 경고</p> | <p>영업의 일부정지 3월 영업의 일부정지 2월 영업의 일부정지 15일</p> | <p>영업정지 2월 영업의 일부정지 3월 영업의 일부정지 1월</p> |
| <p>(1) 20퍼센트 이상 부족한 때</p> | <p>영업의 일부정지 2월</p> | <p>영업의 일부정지 3월</p> | <p>영업정지 2월</p> |
| <p>(2)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부족한 때</p> | <p>영업의 일부정지 1월</p> | <p>영업의 일부정지 2월 영업의 일부정지 15일</p> | <p>영업의 일부정지 3월 영업의 일부정지 1월</p> |
| <p>(3) 10퍼센트 미만 부족한 때</p> | <p>경고</p> | <p>영업의 일부정지 15일</p> | <p>영업의 일부정지 1월</p> |
| <p>아.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이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를 한 때</p> | <p>영업정지 15일</p> | <p>영업정지 1월</p> | <p>영업정지 2월</p> |
| <p>자.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한 때</p> | <p>영업의 일부정지 1월</p> | <p>영업의 일부정지 3월</p> | <p>영업정지 2월</p> |

| | | | |
|---|--------------------|--------------------|--------------------|
| 차.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위반하여 포장한 때(카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경고 | 영업의 일부정지 10일 | 영업의 일부정지 20일 |
| 카. 포장한 2개 이상의 제품을 다시 1개로 재포장한 것으로서 그 내용물이 재포장용량의 2분의 1에 미달되는 때 | 영업의 일부정지 1월 | 영업의 일부정지 3월 | 영업정지 2월 |
| 타. 가목 내지 카목을 제외한 표시기준 및 허위표시 위반의 경우로서 위반사항이 (1) 3개 사항 이상인 때 | 영업의 일부정지 1월 | 영업의 일부정지 3월 | 영업정지 2월 |
| (2) 3개 사항 미만인 때 | 경고 | 영업의 일부정지 15일 | 영업의 일부정지 1월 |
| 3. 법 제8조제2항 또는 법 제32조제1항 위반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정지 3월 |
| 가.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하지 아니한 때 | 경고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 나. 작성된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운용하지 아니한 때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정지 3월 |
| 다.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 등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명칭을 사용한 때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정지 3월 |
| 4. 법 제12조제3항 위반 | 영업의 일부정지 1월 | 영업의 일부정지 3월 | 영업의 일부정지 3월 |
| 가.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1) 시험항목의 전부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 | 영업의 일부정지 15일 | 영업의 일부정지 1월 | 영업의 일부정지 3월 |
| (2) 검사실시비율이 시험항목의 50% 미만인 때 | 경고 | 영업의 일부정지 15일 | 영업의 일부정지 1월 |
| (3) 검사실시비율이 시험항목의 50% 이상인 때 | 경고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 나. 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때 | 경고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 | | | |
|--|--|--|---|
| <p>5. 법 제15조 위반</p> <p>가. 축산물 수입신고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때</p> <p>나. 검사결과의 확인 또는 위반사항 보완 전에 부여한 조건 등을 위반한 때</p> | <p>영업정지 1월</p> <p>영업정지 1월</p> | <p>영업정지 2월</p> <p>영업정지 2월</p> | <p>영업정지 6월</p> <p>영업정지 6월</p> |
| <p>6. 법 제18조 위반</p> <p>가. 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을 소각·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에 위반한 때</p> <p>나. 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을 식용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 그 방법과 기준에 위반한 때</p> <p>다. 수입축산물인 경우 당해 수출국으로의 반송 또는 다른 나라로의 반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p> | <p>영업의 일부정지 15일</p> <p>경고</p> <p>경고</p> | <p>영업의 일부정지 1월</p> <p>영업의 일부정지 15일</p> <p>영업정지 15일</p> | <p>영업의 일부정지 2월</p> <p>영업의 일부정지 1월</p> <p>영업정지 1월</p> |
| <p>7.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검사관의 검사를 거부·방해한 때</p> | <p>영업정지 7일</p> | <p>영업정지 15일</p> | <p>영업정지 1월</p> |
| <p>8. 법 제21조제1항, 법 제22조제2항·제4항·제5항 및 법 제24조 위반</p> <p>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장을 이전한 때</p> <p>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한 경우로서</p> <p>(1) 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당해 시설이 멸실된 때</p> <p>(2) 시설 일부를 철거하여 당해 시설이 멸실된 때</p> <p>다. 변경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시설의 구조 또는 작업장 면적을 변경하여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p> | <p>영업허가 취소 (축산물수입판매업의 경우에는 영업정지 6월로 한다)</p> <p>영업허가 취소</p> <p>영업정지 1월</p> <p>영업정지 1월</p> | <p>영업정지 6월</p> <p>영업정지 3월</p> <p>영업정지 3월</p> | <p>영업정지 1월</p> <p>영업허가 취소</p> <p>영업허가 취소 (축산물수입판매업의 경우에는 영업정지 6월로 한다)</p> |

| | | | |
|--|-------------|-------------|-------------|
| 라.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 마. 급수시설기준에 위반한 때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 바. 허가를 받은 업종의 영업행위가 아닌 다른 업종의 영업행위를 한 때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정지 3월 |
| 사. 가목 내지 바목 외의 경우로서 허가 또는 신고사항 중 | | | |
| (1) 시설기준에 위반된 때 | 시설개수 명령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 (2)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때 | 경고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 9.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경고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 10. 법 제27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6월 이상 휴업한 때 | 영업허가 취소 | | |
| 11.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 경고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 12. 법 제31조제2항 위반 | | | |
| 가. 별표 12의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 | | |
| (1) 제1호 마목을 위반한 때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 (2) 제4호 가목·라목·바목·사목 또는 아목을 위반한 때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 나. 별표 13의 축산물보관업·운반업·판매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제3호 다목·아목·자목·카목·타목 또는 파목을 위반한 때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 | | | |
|---|--|-------------------------------------|--|
| <p>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영업자 준수 사항 위반의 경우로서 위반사항이</p> <p>(1) 2개 이상인 때</p> <p>(2) 1개 사항인 때</p> | <p>영업정지 5일 경고</p> | <p>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5일</p> | <p>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0일</p> |
| <p>13.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로서 당해 축산물이</p> <p>가.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해당되는 때</p> <p>나.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있는 것 또는 병원성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해당되는 때</p> | <p>영업정지 1월과 당해 제품폐기</p> <p>영업허가 취소(축산물 가공업에 한한다). 영업정지 6월과 당해 제품폐기</p> | <p>영업정지 3월과 당해 제품폐기</p> | <p>영업허가 취소(축산물 가공업에 한한다). 영업정지 6월과 당해 제품폐기</p> |
| <p>다.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해당되는 때(제1호의 위반행위에 해당되는 축산물을 제외한다)</p> | <p>영업정지 1월과 당해 제품폐기</p> | <p>영업정지 2월과 당해 제품폐기</p> | <p>영업허가 취소(축산물 가공업에 한한다). 영업정지 6월과 당해 제품폐기</p> |

| | | | |
|--|---|---|--|
| <p>라. 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영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가공한 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때</p> | <p>영업정지 2월과 당해 제품폐기</p> | <p>영업정지 3월과 당해 제품폐기</p> | <p>영업허가 취소(축산물 가공업에 한한다). 영업정지 6월과 당해 제품폐기</p> |
| <p>마. 수입이 금지되거나 수입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축산물(식용 외의 용도로 수입된 것을 식용으로 사용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되는 때</p> | <p>영업정지 2월과 당해 제품폐기</p> | <p>영업정지 3월과 당해 제품폐기</p> | <p>영업허가 취소(축산물 가공업에 한한다). 영업정지 6월과 당해 제품폐기</p> |
| <p>바. 가공기준에 따라 당해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경과한 때</p> | <p>영업의 일부정지 1월과 당해 제품폐기</p> | <p>영업의 일부정지 2월과 당해 제품폐기</p> | <p>영업의 일부정지 3월과 당해 제품폐기</p> |
| <p>14. 법 제36조 위반</p> | | | |
| <p>가. 유통 중인 축산물의 회수 또는 폐기명령에 위반한 때</p> | <p>영업정지 1월</p> | <p>영업정지 2월</p> | <p>영업정지 3월</p> |
| <p>나. 유통 중인 축산물의 원료·가공방법·성분 또는 그 배합비율의 변경 명령에 위반한 때</p> | <p>영업의 일부정지 1월</p> | <p>영업의 일부정지 2월</p> | <p>영업의 일부정지 3월</p> |
| <p>다. 압류·회수한 축산물을 폐기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과 기준에 위반한 때</p> | <p>영업의 일부정지 7일</p> | <p>영업의 일부정지 15일</p> | <p>영업의 일부정지 1월</p> |
| <p>라. 압류·회수한 축산물을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방법과 기준에 위반한 때</p> | <p>영업의 일부정지 5일</p> | <p>영업의 일부정지 10일</p> | <p>영업의 일부정지 20일</p> |
| <p>15.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위해발생 사실의 공표명령에 위반한 때</p> | <p>영업정지 1월</p> | <p>영업정지 2월</p> | <p>영업정지 3월</p> |

| | | | |
|--------------------------------|-----------------------------------|-----------------------------------|----------|
| 16. 영업정지처분기간 중에 영업을 한 때 | 영업허가 취소(축산물 가공업에 한한다). 영업정지 6월 | | |
| 17. 영업의 일부정지기간 중에 그 영업을 한 때 | 영업정지 2월 | 영업허가 취소(축산물 가공업에 한한다). 영업정지 6월 | |
| 1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7호를 제외한 법 위반 | 경고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다.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축산물수입판매업을 제외한다)

| 위 반 행 위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
|--|------------|------------------|-------------------|------------------|
|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1. 법 제4조제5항 위반 | 법 제27조 제1항 | | | |
| 가. 병원성미생물(살모넬라·황색포도상구균·크로스트리디움 또는 장염비브리오 등)이 검출된 때 | | 영업정지 1월과 당해 제품폐기 | 영업정지 2월과 당해 제품폐기 | 영업정지 3월과 당해 제품폐기 |
| 나. 산가·과산화물가·대장균·대장균군 또는 일반세균 시험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때 | | 영업정지 7일과 당해 제품폐기 | 영업정지 15일과 당해 제품폐기 | 영업정지 1월과 당해 제품폐기 |
| 다. 이물 등이 혼입된 때 | | 경고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 라.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때 |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 | | | |
|---|--|---|---|
| <p>마. 그 밖에 가목 내지 라목 외의 사항을 위반한 때</p> <p>2. 법 제6조제2항 및 법 제32조제1항 위반</p> <p>가.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아니한 축산물을 보관·진열·운반·판매한 때</p> <p>나.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하는 등의 행위를 한 때</p> <p>다. 무게·용량 또는 개수의 실제량이 표시된 양보다 부족한 축산물을 보관·진열·운반·판매한 경우로서</p> <p>(1) 30퍼센트 이상 부족한 때</p> <p>(2)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부족한 때</p> <p>(3) 10퍼센트 미만 부족한 때</p> <p>라.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이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를 한 때</p> <p>마.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한 때</p> <p>바. 가목 내지 마목을 제외한 표시기준 및 허위표시 등 위반사항이 있는 축산물을 보관·진열·운반·판매한 경우로서 위반사항이</p> <p>(1) 3개 사항 이상인 때</p> <p>(2) 3개 사항 미만인 때</p> | <p>경고</p> <p>영업정지 7일과 당해 제품폐기 영업정지 1월과 당해 제품폐기</p> <p>영업정지 1월</p> <p>영업정지 15일</p> <p>경고</p> <p>영업정지 15일</p> <p>영업정지 5일</p> <p>영업정지 7일 경고</p> | <p>영업정지 5일</p> <p>영업정지 15일과 당해 제품폐기 영업정지 2월과 당해 제품폐기</p> <p>영업정지 2월</p> <p>영업정지 1월</p> <p>영업정지 7일</p> <p>영업정지 10일</p> <p>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7일</p> | <p>영업정지 10일</p> <p>영업정지 1월과 당해 제품폐기 영업정지 3월과 당해 제품폐기</p> <p>영업정지 3월</p> <p>영업정지 2월</p> <p>영업정지 15일</p> <p>영업정지 2월</p> <p>영업정지 20일</p> <p>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15일</p> |
|---|--|---|---|

| | | | |
|--|---|-------------|-------------|
| 3. 법 제8조제2항 또는 법 제32조제1항 위반 | | | |
| 가.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하지 아니한 때 | 경고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 나. 작성된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운용하지 아니한 때 | 경고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 다.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 등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명칭을 사용한 때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정지 3월 |
| 4. 법 제18조(검사불합격품의 처리)를 위반하여 검사불합격품을 보관·운반·판매한 때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 5.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검사관의 검사를 거부·방해한 때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 6. 법 제21조제1항, 법 제22조제2항·제4항·제5항 및 법 제24조 위반 | | | |
| 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장을 이전한 때 | 영업허가 취소 (축산물 보관업에 한한다). 영업정지 6월 | | |
| 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한 경우로서 | 영업허가 취소 (축산물 보관업에 한한다). 영업폐쇄 영업정지 7일 | | |
| (1) 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당해 시설이 멸실된 때 | | | |
| (2) 시설 일부를 철거하여 당해 시설이 멸실된 때 |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 | | | |
|--|--|---|--|
| <p>다. 시설기준에 따른 냉장·냉동시설이 없거나 냉장·냉동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때</p> <p>(1) 축산물보관업</p> <p>(2) 축산물운반업</p> <p>(3) 축산물판매업</p> | <p>영업정지 1월 당해차량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p> | <p>영업정지 3월 당해차량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p> | <p>영업허가 취소 전체차량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p> |
| <p>라.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p> <p>마. 급수시설기준을 위반한 때</p> <p>바. 허가를 받은 업종 또는 신고한 업종의 영업행위가 아닌 다른 업종의 영업행위를 한 때</p> | <p>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p> | <p>영업정지 3월 2월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p> | <p>영업정지 6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p> |
| <p>사. 가목 내지 바목 외의 경우로서 허가 또는 신고사항 중</p> <p>(1) 시설기준에 위반한 때</p> <p>(2)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때</p> | <p>시설개수 명령 경고 경고</p> | <p>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7일</p> | <p>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15일</p> |
| <p>7.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p> | <p>영업허가 취소(축산물보관업에 한한다)</p> | <p>영업정지 5일</p> | <p>영업정지 10일</p> |
| <p>8. 법 제27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해서 6월 이상 휴업한 때</p> <p>9.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p> <p>10. 법 제31조제2항 위반 가. 별표 13의 축산물보관업·운반업·판매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중</p> | <p>영업정지 5일</p> | <p>영업정지 10일</p> | <p>영업정지 10일</p> |

| | | | |
|---|--------------------|---------------------|---|
| (1) 제2호 가목을 위반한 때 | 당해차량 영업정지 7일 | 당해차량 영업정지 15일 | 전체차량 영업정지 10일 |
| (2) 제3호 가목·아목 또는 차목을 위반한 때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 나. 가목 외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의 경우로서 위반사항이 | | | |
| (1) 2개 사항 이상인 때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축산물 운반업은 전체차량 영업정지 10일) |
| (2) 1개 사항인 때 | 경고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축산물 운반업은 전체차량 영업정지 5일) |
| 11.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로서 당해 축산물이 | | | |

| | | | |
|--|--|---------------------------|--|
| 가.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해당되는 때 | 영업정지 1월과 당해 제품폐기 | 영업정지 3월과 당해 제품폐기 | 영업허가 취소 (축산물 보관업에 한한다). 영업정지 6월과 당해 제품폐기 |
| 나.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있는 것 또는 병원성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해당되는 때 | 영업허가 취소 (축산물 보관업에 한한다). 영업정지 6월과 당해 제품폐기 | 영업정지 1월과 당해 제품폐기 | 영업허가 취소 (축산물 보관업에 한한다). 영업정지 6월과 당해 제품폐기 |
| 다.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해당되는 때(제1호의 위반행위에 해당되는 축산물을 제외한다) | 영업정지 1월과 당해 제품폐기 | 영업정지 2월과 당해 제품폐기 | 영업허가 취소 (축산물 보관업에 한한다). 영업정지 6월과 당해 제품폐기 |
| 라.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른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때 | 경고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축산물 운반업은 전체차량 영업정지 7일) |

| | | | |
|--|--------------------------------------|--------------------------------------|---|
| <p>마. 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영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처리 또는 가공한 축산물을 보관·운반·판매한 때</p> | <p>영업정지 2월과 당해 제품폐기</p> | <p>영업정지 3월과 당해 제품폐기</p> | <p>영업허가 취소 (축산물 보관업에 한한다). 영업정지 6월과 당해 제품폐기</p> |
| <p>바. 수입이 금지되거나 수입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식용 외의 용도로 수입된 것을 식용으로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한 축산물을 보관·운반·판매한 때</p> | <p>영업정지 2월과 당해 제품폐기</p> | <p>영업정지 3월과 당해 제품폐기</p> | <p>영업허가 취소 (축산물 보관업에 한한다). 영업정지 6월과 당해 제품폐기</p> |
| <p>사. 축산물검사에 합격한 표시가 없는 축산물에 해당되는 때</p> | <p>영업정지 7일</p> | <p>영업정지 15일</p> | <p>영업정지 1월 (축산물 운반업은 전체차량 영업정지 15일)</p> |
| <p>아. 가공기준에 따라 당해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경과한 때</p> | <p>영업정지 1월과 당해 제품 폐기</p> | <p>영업정지 2월과 당해 제품 폐기</p> | <p>영업정지 3월과 당해 제품 폐기</p> |
| <p>12. 법 제36조 위반 가. 유통 중인 축산물의 회수 또는 폐기명령에 위반한 때</p> | <p>영업정지 1월</p> | <p>영업정지 2월</p> | <p>영업정지 3월 (축산물 운반업은 전체차량 영업정지 2월)</p> |

| | | | |
|--|---|------------|-------------|
| 나. 압류·회수한 축산물을 폐기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과 기준에 위반한 때 | 경고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 다. 압류·회수한 축산물을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방법과 기준에 위반한 때 | 경고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 13.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위해발생사실의 공표명령에 위반한 때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정지 3월 |
| 14. 영업정지처분기간 중에 영업을 한 때 | 영업허가 취소 (축산물 보관업에 한한다). 영업정지 6월 | | |
| 1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4호를 제외한 법 위반 | 경고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3. 과징금 제외대상

각 업종별 개별기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정지 또는 영업을 일부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때 또는 축산물수급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도축업·집유업

- (1)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때
- (2) 제3호에 해당하는 때
- (3)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 (4) 제7호에 해당하는 때
- (5) 제8호에 해당하는 때
- (6) 제10호에 해당하는 때
- (7) 제11호 라목 또는 사목에 해당하는 때

- (8) 3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때
- 나.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수입판매업
- (1) 제1호 나목·라목·마목·바목·사목·아목·카목(1)·카목(2)·타목(1)·하목(1) 또는 하목(2)에 해당하는 때
 - (2)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 (3) 제8호 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때
 - (4) 제13호 각 목의 어느 하나(다목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때
 - (5) 제17호에 해당하는 때
 - (6) 3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때
- 다.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 및 축산물판매업(축산물수입판매업을 제외한다)
- (1)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때
 - (2) 제6호 라목 또는 바목에 해당하는 때
 - (3) 제11호 가목·마목 또는 사목에 해당하는 때
 - (4) 3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때

[별표 12] <개정 2006.10.4>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제51조제1항관련)

1. 공통사항

- 가. 작업장의 시설 및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나. 작업장 안에서 종업원의 위생복·위생모(도축장의 경우 안전모) 및 위생화의 착용여부 및 개인의 위생상태를 점검하여 작업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다. 검사관·자체검사원 또는 영업자가 지정하지 아니한 자를 작업장 안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 라. 행정관청에 의하여 시정명령·폐기처분·시설개수명령 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후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처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마. 수돗물이 아닌 물(지하수 등)을 축산물에 사용하거나 가공품의 원료(배합수)로 사용하는 때에는 「먹는물관리법」 제35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1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 바. 작업장 안에서는 법 제5조에 따른 용기등의 규격 등에 적합한 용기·기구·포장 또는 검인용색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 사. 영업자는 자체적인 위생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영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제46조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은 영업자·자체검사원 또는 종업원이 매월 1시간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아. 제25조제3항에 따른 출입·검사등기록부는 최종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도축업영업자의 준수사항

- 가. 다른 작업장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장 등에서 종사하고 있는 자 또는 직접 검사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자를 자체검사원으로 지정하거나 검사보조원으로 임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제8조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도축검사신청서에 기재된 도축의뢰자 및 가축의 출하농가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다. 검사를 받고자 하는 가축을 도축장 안의 계류장에서 계류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계류기간을 지켜야 한다.
- 라. 도축장의 계류시설·냉장시설 등 도축처리능력을 초과하여 검사관 또는 자체검사원에게 도축검사신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마. 검사관 또는 자체검사원의 작업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작업을 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바. 자체검사원의 검사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주어야 하며, 자체검사원이 시험실검사를 위한 장비나 재료 등의 확보요구를 하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 도축장에서 반출되는 지육은 병원성미생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장하여 반출하는 것을 권장하며, 포장을 하는 경우 포장지는 「식품위생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아. 도살·처리의 명목으로 제58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외에 금품을 받거나 작업인의 동원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집유업영업자의 준수사항

- 가. 다른 작업장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장 등에 종사하고 있는 자 또는 직접 검사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자를 자체검사원으로 지정하거나 검사보조원으로 임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자체검사원의 검사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주어야 하며, 자체검사원이 시험실검사를 위한 장비나 재료 등의 확보요구를 하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 집유의 명목으로 제58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외에 금품을 받거나 작업인의 동원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라. 집유의 명목으로 원유대금 이외의 별도의 보조성 경비 등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마. 집유가 금지된 원유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착유가축검사를 받지 아니한 농가에서 착유된 원유를 집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영업자의 준수사항

- 가.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수

- 불관계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최종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서류를 허위로 작성·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가공품을 텔레비전·인쇄물 등을 통하여 광고하는 때에는 제품명 또는 업소명을 포함하여야 하고,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제품을 구입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 다. 장난감·그릇 등과 가공품을 함께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장난감·그릇 등이 가공품의 보관·섭취에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공품과 구분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 라. 조제유류에 관하여 신문·잡지·라디오·텔레비전 등을 통한 광고를 하거나 조제유류의 용기 또는 포장에 유아·여성의 사진 또는 그림 등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유와 같은”, “모유처럼” 또는 이와 유사한 글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조제유류의 사용이 모유보다 좋은 것으로 오도 또는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제유류를 의료기관·모자보건시설에 무료 또는 저가로 공급하는 판매촉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마. 부패·변질되었거나 폐기된 제품 또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 바.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영업허가를 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환 품목명·중량·보관방법 및 유통기간을 보고하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냉장포장육으로 유통·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아.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는 가공한 축산물이 「식품위생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표시기준의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고시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1조제7호에 따른 구분유통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자.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를 원료로 하여 가공하는 경우로서 법 제22조에 따른 집유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유가공업의 영업자는 별표 4 제2호에 따른 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축산물위생

검사기관등에 검사를 위탁하여야 한다.

5. 도축업·잡유업·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의 종업원 준수사항
검사관·자체검사원 또는 영업자의 축산물위생업무와 관련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별표 13] <개정 2006.10.4>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제51조제2항관련)

1. 공통사항

- 가. 축산물은 위생적으로 보관·운반·판매하여야 한다.
- 나. 축산물의 포장·용기가 파손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폐기처분·시설개수명령 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후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처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라. 제13조에 따른 도축검사증명서 및 제25조에 따른 출입·검사등기록부는 최종발급(기재)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물운반업의 경우에는 식육을 운반하는 운전자(식육판매업소의 자가운반차량 운전자를 포함한다) 등으로 하여금 도축검사증명서를 휴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 마.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35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검사를 받아 그 결과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다른 업소에 대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가 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1) 일부항목 검사 : 1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간이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 다만, 전항목 검사를 실시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 (2) 전항목 검사 : 3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 바. 영업자는 자체적인 위생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영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제46조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은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매월 1시간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축산물운반업영업자의 준수사항

- 가. 운반차량(식육판매업소의 자가운반차량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살아있는 가축을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운반차량은 수시로 세척·소독하여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다. 도축장에서 반출되는 소·돼지 등 가축의 지육은 매단 상태로 운반하여야 하며, 우지육의 경우에는 포장한 상태로 운반하는 것을 권장한다.
- 라. 축산물을 운반하는 때에는 냉장 또는 냉동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축산물판매업영업자의 준수사항

- 가.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판매를 위하여 부위명·등급·용도 및 그램당 가격이 표시된 표지판을 당해 식육의 전면에 놓아야 하고, 식육은 식육종류 및 원산지를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하며, 그 표시를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육을 용기에 담아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진열·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육의 부위명·등급·원산지·포장일자·유통기한·보관방법 및 용도가 표시된 스티커를 붙이거나 비닐 등에 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식육의 부위명 및 등급의 결정과 그 구별방법, 식육의 종류 및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또한 음식점의 영업자 등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 및 원산지를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 나.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영업자는 식육부산물을 종류별로 진열·보관하여야 한다.
- 다.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축산물수입판매거래내역서에 제품명·판매일·판매처·판매량·수입일·수입신고필증번호·수출국 및 수출회사명 등을 기록하고 그 축산물수입판매거래내역서를 수입일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거래내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거래내역서와 관련된 수입신고필증·수입승인서·선적서 및 내용명세서 등의 사본을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라. 별표 12 제4호다목을 위반한 축산물을 수입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마. 부패·변질되었거나 폐기된 제품 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 바. 식육판매업 및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영업자는 식육의 처리에 사용한

- 기계·기구류 등을 수시로 세척·소독하여야 한다.
- 사.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식육을 냉장·냉동실에 보관하여야 하며, 지육상태로 판매장 안에 걸어 놓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냉동지육을 해동하기 위하여 판매장에 걸어놓을 때에는 먼지나 파리 등이 지육에 직접 붙지 아니하도록 포장을 벗기지 아니한 상태를 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아. 식육판매업 및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자는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냉장 식육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 조제유류에 관하여 신문·잡지·라디오·텔레비전 등을 통한 광고를 하거나 조제유류의 용기 또는 포장에 유아·여성의 사진 또는 그림 등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유와 같은”, “모유처럼” 또는 이와 유사한 글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조제유류의 사용이 모유보다 좋은 것으로 오도 또는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제유류를 의료기관·모자보건시설에 무료 또는 저가로 공급하는 판매촉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차.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거래내역서에 식육의 종류·물량·원산지 및 매입처 등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식육 매입일부터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 카.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자는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영업신고를 한 신고관청에 전환 품목명·중량·보관방법 및 유통기한을 신고하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타.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자는 수입하는 제품에 대한 공중위생상 위해정보를 입수하였거나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관계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위해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파.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자는 수입하는 축산물가공품이 「식품위생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의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고시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1조제7호에 따른 구분유통증명서를 갖추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 및 축산물판매업의 종업원 준수사항
검사관 또는 영업자의 축산물위생업무와 관련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별표 14] <개정 2004.8.4, 2006.10.4>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제52조제2항관련)

1. 삭제 <2004.8.4>

2. 표시(축산물의 용기·포장에 기재하는 문자·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광고(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영상, 인터넷, 제품판매와 관련한 제품설명서, 특정회원용 제품설명서 등 인쇄물을 통한 제품선전 및 소개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가. 유용성

(1) 신체조직기능의 일반적인 증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표현. 다만,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사항을 표현할 수 없다(예시 : 건강유지·건강증진·체질개선·식이요법·영양보급 등의 표현은 가능하나 당뇨병·변비 등 질병예방과 치료라는 표현 등은 할 수 없다).

(2) 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의 표현(예시 : 임신수유기영양보급, 병후회복시 영양보급, 노약자영양보급, 환자에 대한 영양보조 등)

(3) 제품에 함유된 주요 영양성분의 영양학적 기능·작용에 대한 표현(예시 : 비타민·칼슘·철·아미노산 등의 기능 및 작용)

나. 용도

(1) 제품의 제조목적이나 주용도에 따른 표시·표현(예시 : 유아식·환자식 등)

(2) 특정질병을 지칭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권장내용의 표현(예시 : 발육기·성장기·임신수유기·갱년기·노화기에 좋다 등)

다. 용법·용량

제품의 성질상 섭취방법과 섭취량을 표현하여야 할 경우 해당제품의 영양학적 기준으로 볼 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섭취방법 및 섭취량

[별표 14의2] <신설 2004.8.4>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기준(제7조의4제2항관련)**

| 위 반 내 용 | 근거법령 | 처분기준 |
|---|--------------|------|
|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법 제9조 제7항 | 시정명령 |
| 2. 법 제4조제5항, 법 제8조제2항, 법 제12조제2항·제3항, 법 제18조 또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영업의 일부정지를 제외한다) 2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 법 제9조 제7항 | 지정취소 |
| 3. 법 제6조제2항, 법 제32조제1항, 법 제21조제1항, 법 제22조제1항·제4항 또는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영업의 일부정지를 제외한다) 2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 법 제9조 제7항 | 지정취소 |
| 4. 법 제2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때 | 법 제9조 제7항 | 지정취소 |
| 5. 영업자가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때 | 법 제9조 제7항 | 시정명령 |
| 6. 위의 제1호 내지 제5호의 위반으로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법 제9조 제7항 | 지정취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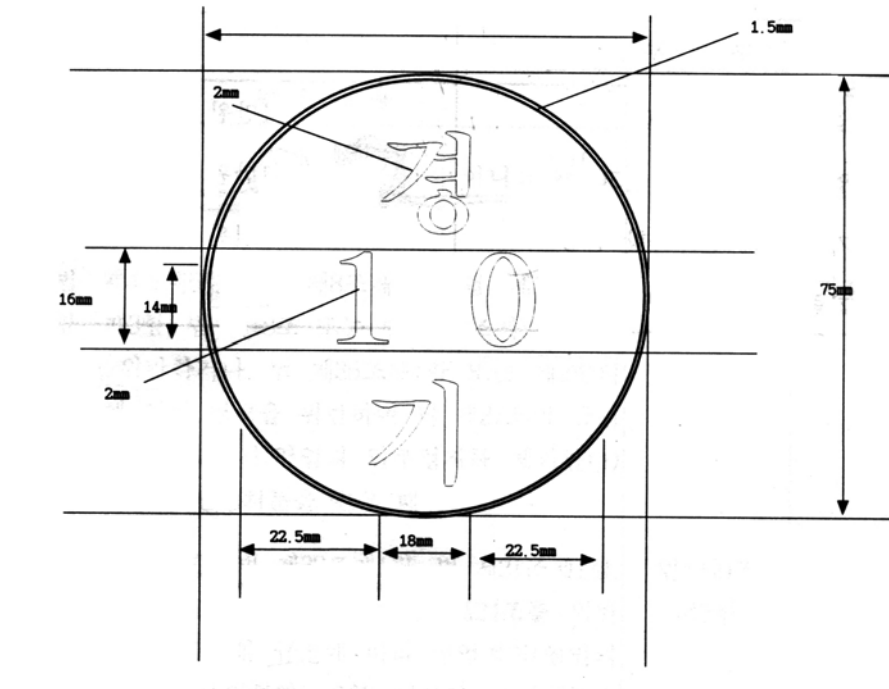
[별표 15]

허가 등 수수료(제60조관련)

| 구 분 | 수 수 료 |
|-------------------|-------|
| 1. 영업의 허가 및 신고 | 1만원 |
| 2.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 1만원 |
| 3. 허가사항 및 신고사항 변경 | 5천원 |
| 4. 허가증 및 신고증의 재교부 | 5천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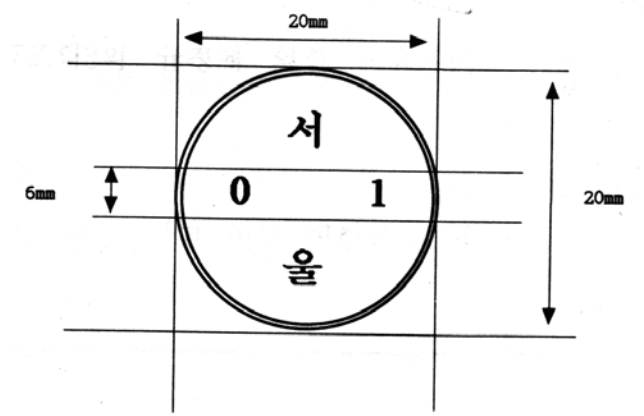
[별도 1]

검인(포유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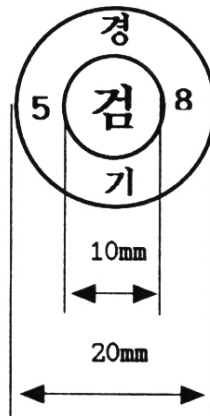
[별도 1의2] <신설 2000.12.11>

검인(포유류가축의 머리·꼬리등의 표면)



[별도 2]

검인(가금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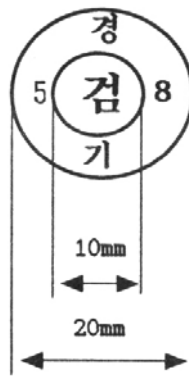
[별도 3]

가금육 포장지의 표시

1. 표시사항

- 가. 합격표시
- 나. 작업장의 허가번호·명칭 및 소재지
- 다. 생산연월일
- 라. 중량 및 마리수
- 마. 유통기한 등 그 밖의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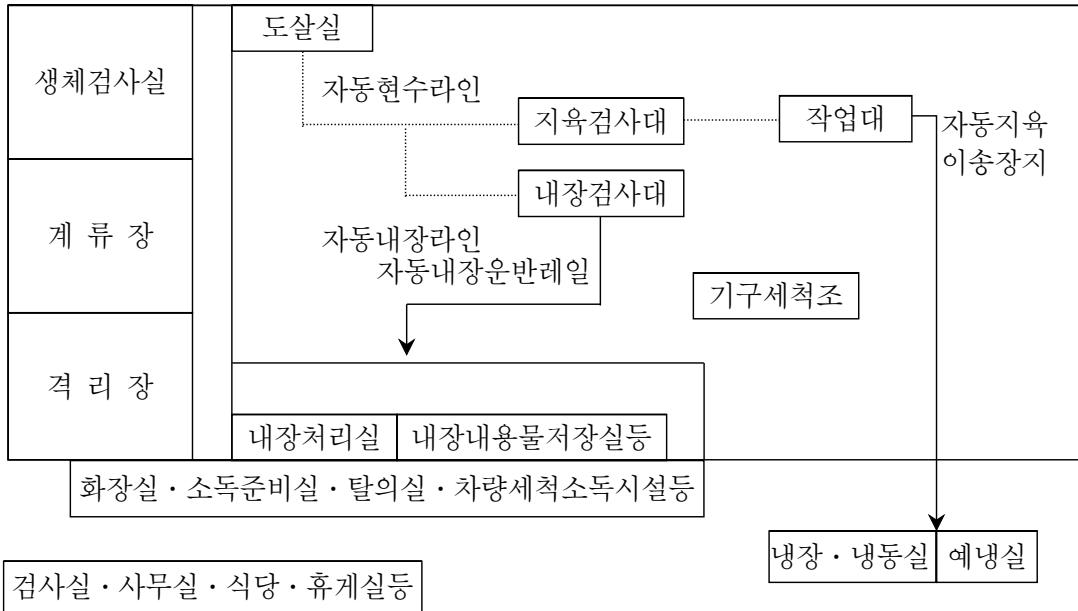
2. 합격표시(포장지의 종류에 따라 크기는 조절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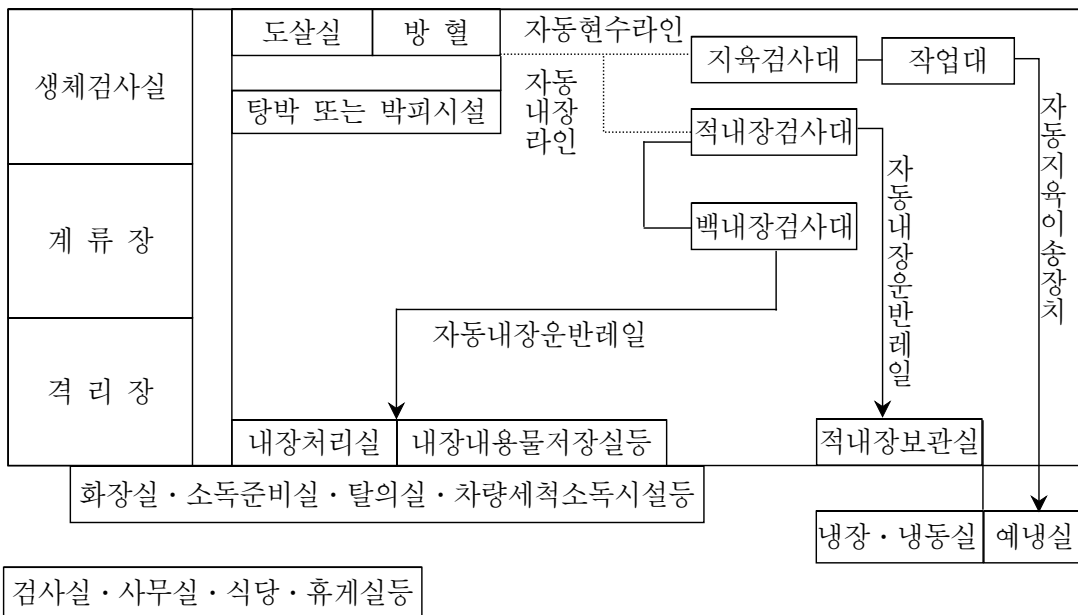
[별도 4]

도축장(포유류) 시설배치도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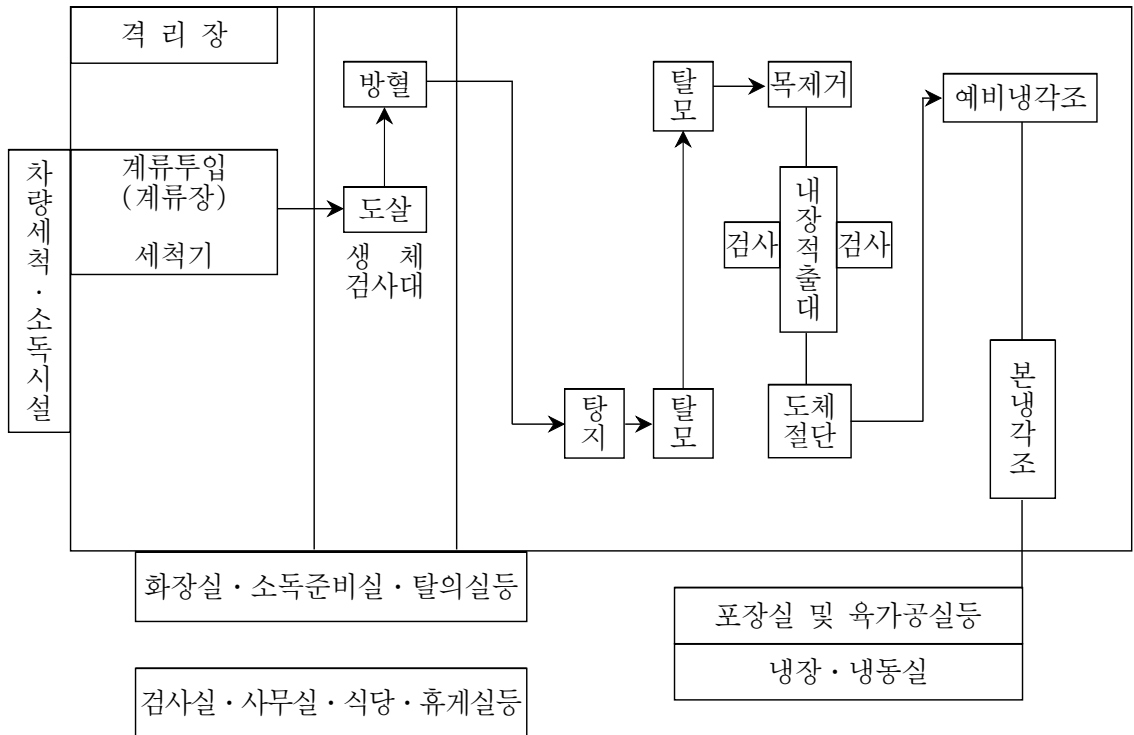
<돼지>



[별도 5]

도축장(가금류) 시설배치도

<답>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 | | |
|---------------|----------------------------|-----|
| [별지 제1호서식] | 학술연구용등도살신고서 | 275 |
| [별지 제2호서식] | 도축검사신청서 | 277 |
| [별지 제3호서식] | 착유가축검사대장 | 279 |
| [별지 제4호서식] | 도축검사증명서 | 280 |
| [별지 제5호서식] | 위탁검사신청서 | 281 |
| [별지 제6호서식] | 수거(압류)증 | 283 |
| [별지 제7호서식] | 검사관증 | 284 |
| [별지 제7호의2서식] | 축산물위생감시원증 | 285 |
| [별지 제7호의3서식] | 검사보조원증 | 286 |
| [별지 제8호서식] | 자체검사원지정(변경)승인신청서 | 287 |
| [별지 제9호서식] | 자체검사원지정승인서 | 289 |
| [별지 제10호서식] | 축산물수입신고서 | 290 |
| [별지 제11호서식] | 축산물수입신고필증 | 292 |
| [별지 제12호서식] | 출입·검사등기록부 | 293 |
| [별지 제13호서식] | 수거검사처리대장 | 294 |
| [별지 제14호서식] | 축산물위생검사기관지정신청서 | 295 |
| [별지 제14호의2서식] | 축산물위생검사기관지정사항변경신고서 | 297 |
| [별지 제14호의3서식] | 검사업무의[휴지][폐지][재개]신고서 | 299 |
| [별지 제15호서식] | 축산물위생검사기관지정서 | 300 |
| [별지 제15호의2서식] | 축산물검사실적보고[년도반기분] | 302 |
| [별지 제15호의3서식] | 검사대장 | 303 |
| [별지 제16호서식] | [조건부]영업허가신청서 | 304 |
| [별지 제17호서식] | 허가증 | 306 |
| [별지 제18호서식] | []영업허가관리대장 | 308 |
| [별지 제19호서식] | 허가증재교부신청서 | 310 |
| [별지 제20호서식] | 영업허가의변경 허가신청서[신고서] | 312 |
| [별지 제21호서식] | 영업 휴업[재개업][폐업]신고서 | 314 |
| [별지 제22호서식] | 조건부허가기간연장신청서 | 316 |
| [별지 제23호서식] | 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영업신고서 | 318 |
| [별지 제24호서식] | 신고필증 | 320 |

| | | |
|---------------|------------------------------|-----|
| [별지 제25호서식] | 영업신고관리대장 | 322 |
| [별지 제26호서식] | 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 | 324 |
| [별지 제27호서식] | 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 | 326 |
| [별지 제28호서식] | 품목제조보고서 | 328 |
| [별지 제29호서식] | 품목제조보고사항변경보고서 | 329 |
| [별지 제30호서식] | 품목제조보고관리대장 | 330 |
| [별지 제31호서식] | 영업허가[신고]사항[]월보고 | 332 |
| [별지 제32호서식] |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 333 |
| [별지 제33호서식] | 행정처분대장 | 335 |
| [별지 제34호서식] | 도축검사실적조사표 | 336 |
| [별지 제35호서식] | 집유실적보고서[년 월분] | 338 |
| [별지 제35호의2서식]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작업장 | 339 |
| | [업소·농장] 지정신청서 | |
| [별지 제35호의3서식]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작업장 | 341 |
| | [업소·농장]지정서 | |
| [별지 제35호의4서식]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작업장 | 343 |
| | [업소·농장] 지정변경신청서 | |
| [별지 제35호의5서식]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도축장 | 345 |
| | 확인서 | |
| [별지 제36호서식] | 축산물가공품등 생산실적보고 | 347 |
| [별지 제37호서식] | 포상금지급신청서 | 348 |
| [별지 제38호서식] | 거래내역서 | 350 |
| [별지 제39호서식] | 축산물수입판매거래내역서 | 35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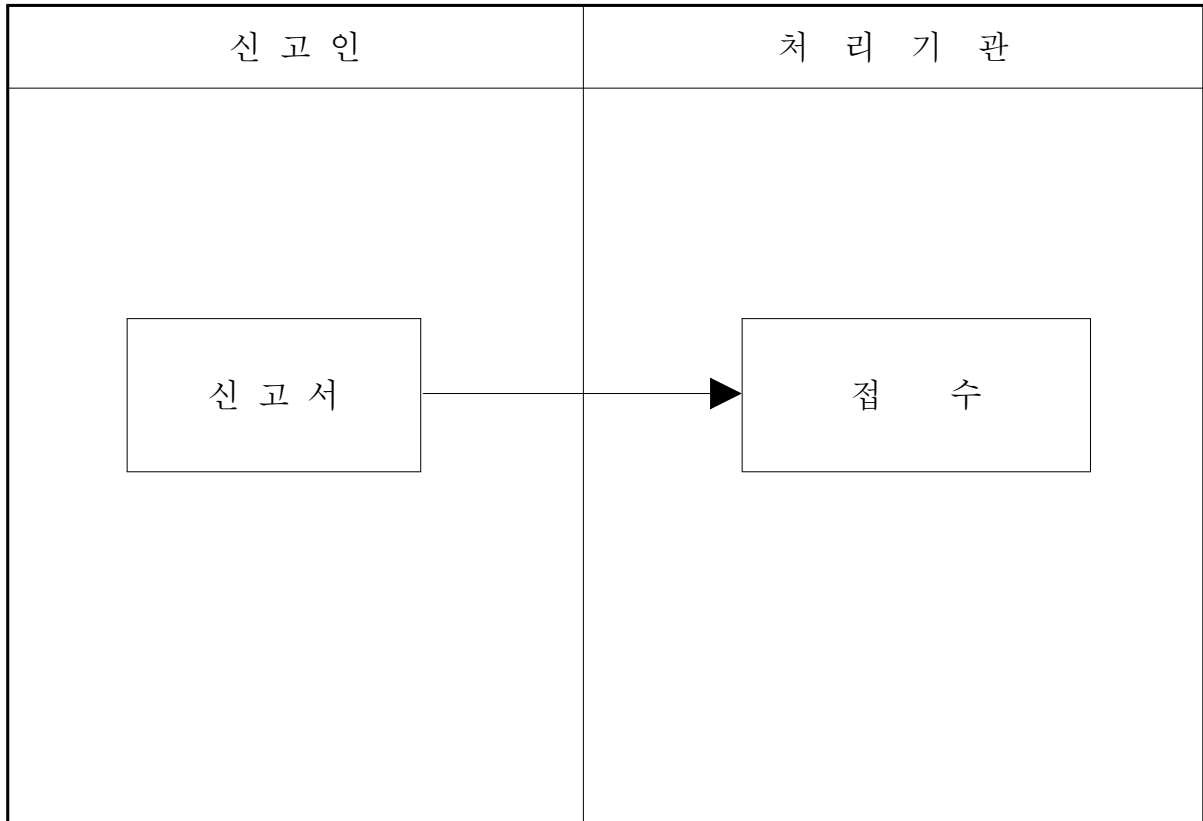
| | | | | | |
|--|-----|------------------|---------|------|--|
| <h3>학술연구용등도살신고서</h3> | | | | 처리기간 | |
| | | | | 즉 시 | |
| 신고인 | ①성명 | | ③주민등록번호 | | |
| | ②주소 | (전화 :) | | | |
| ④가축의 종류 | | ⑤귀표번호 (소에 한함) | ⑥성별 | | |
| ⑦연령 | | ⑧체중 | | | |
| ⑨도살사유 | | | | | |
| ⑩도살장소 | | ⑪일시 | | | |
| <p>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고 인 (서명 또는 인)</p> <p>시·도지사 귀하</p> | | | | | |
| ※ 뒷쪽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없 음 | | | | 수수료 | |
| | | | | 없 음 | |

※ 신고안내

(뒤 쪽)

| | | | |
|--------|-----|------|-----|
| 제출하는 곳 | 시·도 | 처리부서 | 축산과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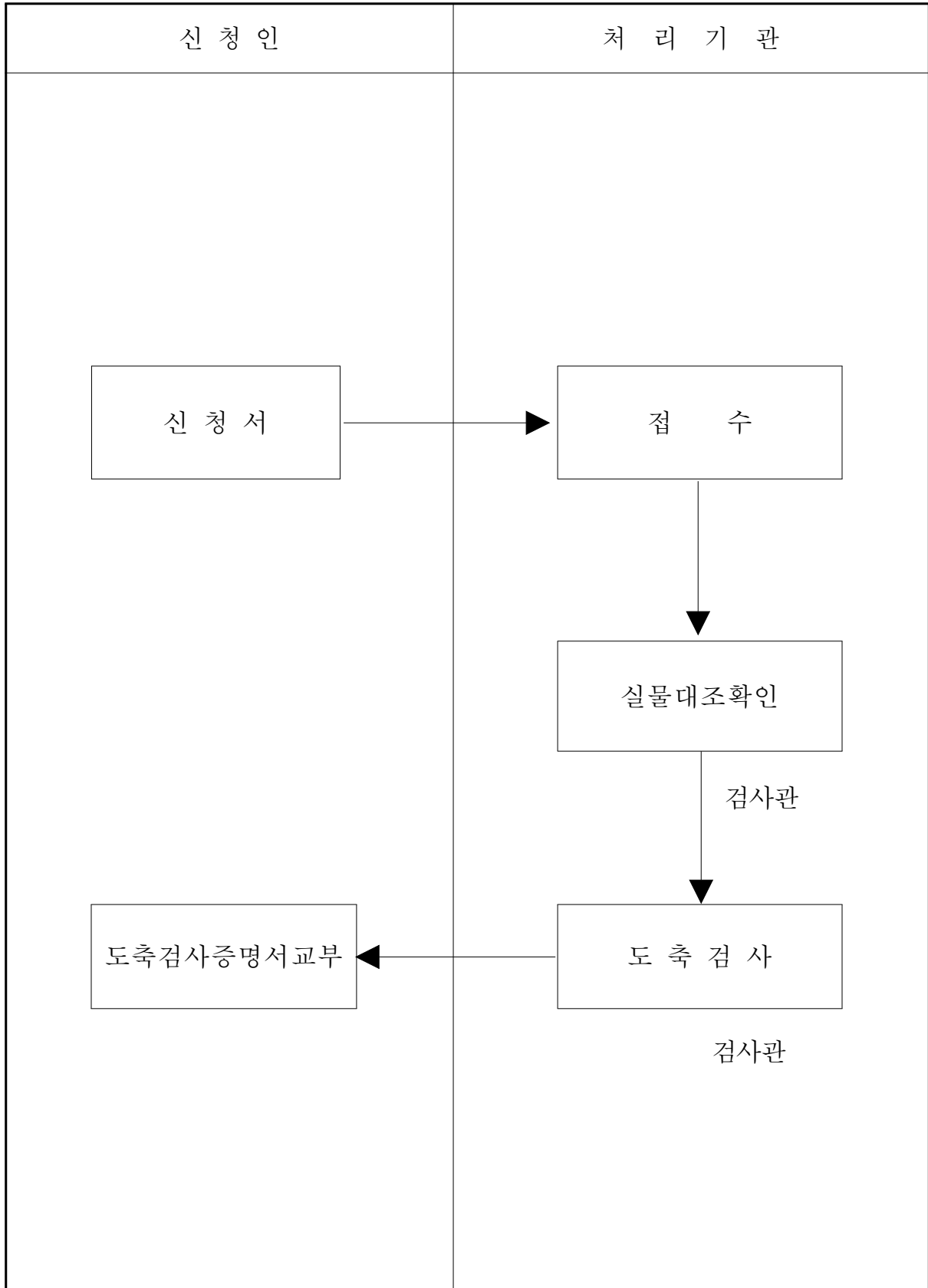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도축검사신청서 | | | | | | | 처리기간 |
|---|--------------------|----------|-------------|-------------|---|---------|------|
| | | | | | | | 즉시 |
| 검사 신청인 | ①성명 | |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 | ③업소명 | | ④사업자등록번호 | | | | |
| | ⑤주소 | (전화 :) | | | | | |
| 도축 의뢰인 | ⑥성명 | | ⑦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 | ⑧업소명 | | ⑨사업자등록번호 | | | | |
| | ⑩주소 | (전화 :) | | | | | |
| ⑪도축목적 | | | | | | | |
| 출하 농가 | ⑫성명 | | ⑬주민등록번호 | | | | |
| | ⑭주소 | (전화 :) | | | ⑮농장명 | | |
| ⑯접수번호 | ⑰가축의 종류 (품종) | ⑱성별 | ⑲연령 | ⑳생체량 | ㉑총수량 | ㉒귀표번호 | |
| | 예) 소(한우·젓소·육우·수입소) | * 가금류 제외 | * 가금류 제외 | | | * 소에 한함 | |
| 수입소의 경우 | | ⑳수출국가명: | | ㉓검역계류장 도착일자 | | | |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1조제1항 본문·제12조제1항 본문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검사관 귀하 | | | | | | | |
| ※ 종류가 다른 소인 한우·육우·젓소 또는 수입소의 도축검사신청을 동시에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종류별로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소의 도축검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수출국가명과 검역계류장 도착일자를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구비서류 : 없음 | | | | | 수수료 축산물가공처리법 제 4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착유가축검사대장

| 검사자 □ | 농장 명 | 소재 지 | 농장 주 | 종업 원수 | 사육 두수 | 1일 착 유 량 | 검사일 및 구분 | | | | | | | | |
|----------|---------|---------|---------|----------|----------|-------------------|--|----|----|----|--|--|--|--|--|
| | | | | | | | 검 사 항 목 | | | | | | | | |
| | | | | | | | 1회 | 2회 | 3회 | 4회 | | | | | |
| | | | | | | | 적부 | 적부 | 적부 | 적부 | | | | | |
| | | | | | | | 1.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우결핵 병·부루세라병 검진여부 | | | | | | | | |
| | | | | | | | 2. 생물학적제제·항생물질제제·합 성항균제제 투여 및 질병에 감염된 가축의 격리사육여부 | | | | | | | | |
| | | | | | | | 3. 착유가축의 청결 및 건강유지상태 | | | | | | | | |
| | | | | | | | 4. 착유장의 방충·방서·급수시설 및 수세설비여부 | | | | | | | | |
| | | | | | | | 5. 천정·벽의 먼지 등 청결유지상태 | | | | | | | | |
| | | | | | | | 6. 착유장의 채광 및 환기여부 | | | | | | | | |
| | | | | | | | 7. 적합한 착유용기·기구 사용 및 사용후 소독·세척 등 보관상태 | | | | | | | | |
| | | | | | | | 8. 개체별 전용 유방세척수건 사용 여부 | | | | | | | | |
| | | | | | | | 9. 원유냉각기 설치 및 냉각온도 유지 상태 | | | | | | | | |
| | | | | | | | 10. 착유가축배설물의 위생적인 처리 상태 | | | | | | | | |
| | | | | | | | 11. 착유가축의 외부환경 위생상태 | | | | | | | | |
| | | | | | | | 12. 수의사의 관리여부 | | | | | | | | |
| | | | | | | | 13. 기타 위생관리상태 | | | | | | | | |

제 호

도축검사증명서

1. 가축의 종류 :
2. 두 수 :
3. 중 량 : 지육 kg, 내장 등 기타 kg
4. 작 업 장 명 :
5. 검 인 번 호 :
6. 도 축 일 : 년 월 일
7. 도축의뢰인 주소 : 시 시 읍
군 면 (성명 :)
도 구 동
8. 수입소의 경우
- 수출국가명 :
- 검역계류장 도착일부터 도축일까지 6월 경과여부 :
9. 검사불합격 식육의 처분 : 폐기(kg), 식용외의 용도전환(kg)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1조제1항·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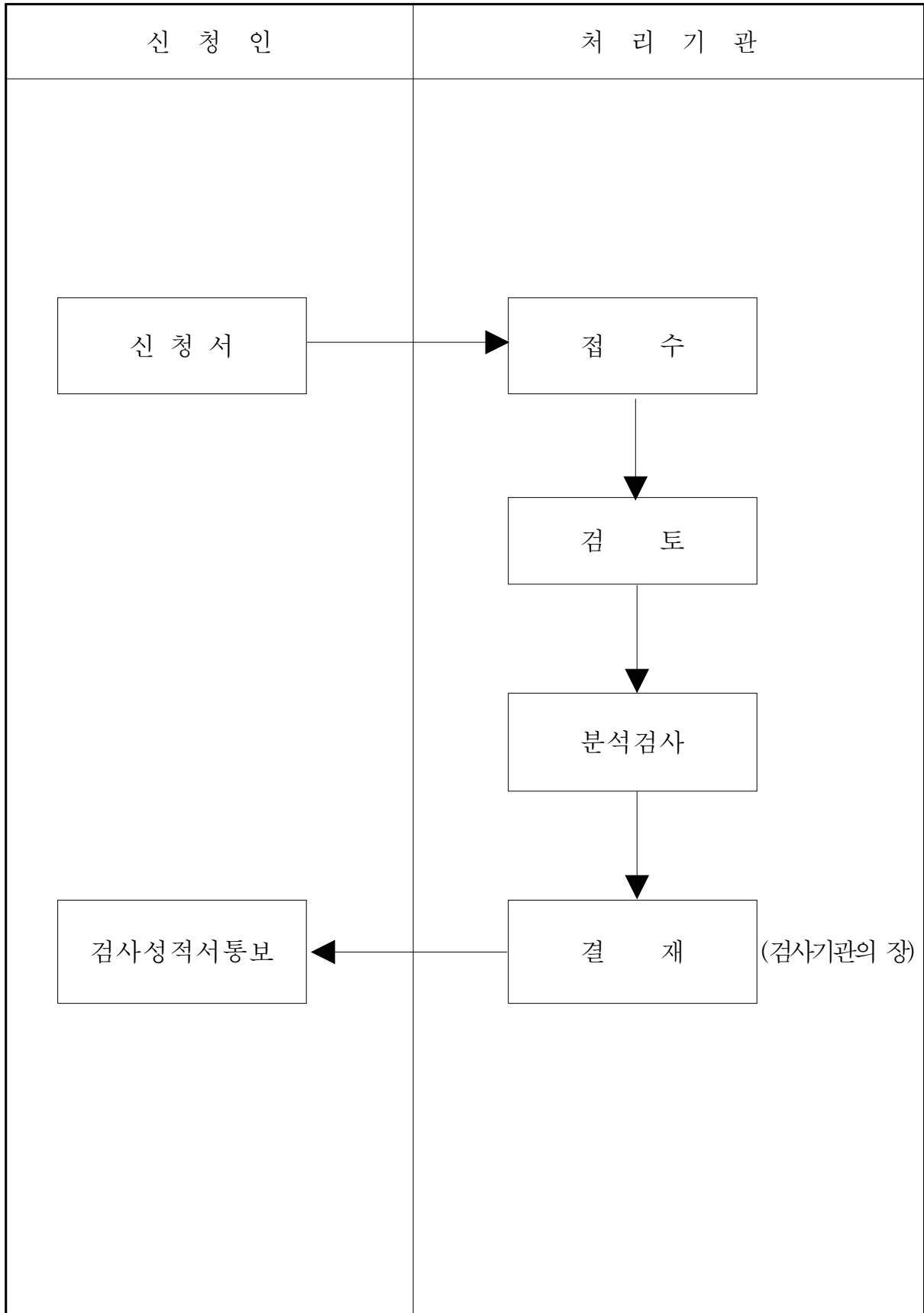
검사관 또는 자체검사원 소 속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수의사면허번호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 제 호 | | | | |
|--|-----------|--------------------------------|-----|--|
| 수 거 (압 류) 증 | | | | |
| ①수거(압류)품 가공 업소 등의 상호· 작업장 소재지 | 성 명 | | 상 호 | |
| | 소재지 | | | |
| ②수거(압류)품 판매 업소등의 상호·소재 지 | 성 명 | | 상 호 | |
| | 소재지 | | | |
| ③ 수 거 (압 류) 제 품 명 및 제품유형 | 국내축산물 | 제품명 : (제품유형 :) | | |
| | 수입축산물 | (1)제품명 : (제품유형 :) (2)수출국 : | | |
| ④ 품 목 의 제 조 연 월 일 또는 유통기한 | | | | |
| ⑤ 수 거 (압 류) 수 량 | | | | |
| ⑥ 수 거 (압 류) 사 유 | | | | |
| ⑦ 수 거 (압 류) 일 시 | 시 분 | | | |
| ⑧ 수 거 (압 류) 장 소 | | | | |
| ⑨ 피 수 거 (압 류) 자 | (서명 또는 인) | | | |
|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5%;"> <p>축산물가공처리법</p> <p><input type="checkbox"/> 제19조제1항</p> <p><input type="checkbox"/> 제36조</p> </div> <div style="width: 45%;"> <p>및 동법시행규칙</p> <p><input type="checkbox"/> 제16조</p> <p><input type="checkbox"/> 제26조 의 규정에</p> <p><input type="checkbox"/> 제55조</p> </div> </div> <p>의하여 수거(압류)하였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수거자(압류자) 소 속 :</p> <p style="text-align: right;">성 명 : (서명 또는 인)</p> | | | | |

| | |
|---|---|
|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 mm → </div> | |
| <p style="font-size: 24px; text-align: center; margin: 0;">제 호</p> <p style="font-size: 24px; 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 10px 0;">검 사 관 증</p> <p style="margin: 10px 0 10px 0;">소 속 :</p> <p style="margin: 10px 0 10px 0;">직 급 :</p> <p style="margin: 10px 0 10px 0;">성 명 :</p> <p style="margin: 10px 0 10px 0;">주민등록번호 :</p> <p style="margin: 10px 0 10px 0;">축산물가공처리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관임을 증명합니다.</p>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 10px 0;"> <p>년 월 일</p> <p>농 립 부 장 관</p> <p>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p> <p>시 · 도 지 사</p>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60px; height: 60px; margin: 0 auto; display: flex; flex-direction: column;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style="margin-bottom: 5px;">← 25mm →</div> <div style="margin-bottom: 5px;">↑</div> <div style="margin-bottom: 5px;">30mm</div> <div style="margin-bottom: 5px;">↓</div> <div style="margin-top: 5px;">사 진</div> </div> <div style="margin-top: 20px;"> 55mm </div> |

27274-09311일
1998. 5. 20 승인

84mm×59mm
(보존용지(1종) 120g/m²)

1. 이 증명은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축산물의 위생관리를 목적으로 출입·수거·검사·압류 또는 폐기를 할 때에는 이 증명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앞 쪽)

| | |
|---|--------------------|
| 제 호 | 사 진 2.5cm × 3cm |
| 축 산 물 위 생 감 시 원 증 | |
| 소 속 : | |
| 직 급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위생감시원 임을 증명합니다. | |
| 년 월 일 | |
| 농 립 부 장 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시 · 도 지 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 |
| 인 | |

84mm×59mm (보존용지(1종) 120g/m²)

(뒤 쪽)

| |
|--|
| 1. 이 증명은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
| 2. 축산물의 위생관리를 목적으로 출입 · 수거 · 검사 · 압류 또는 폐기를 할 때에는 이 증명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제 호

사 진
2.5cm × 3cm

검 사 보 조 원 증

소 속 :
직 급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보조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인

84mm×59mm(보존용지(1종) 120g/m²)

이 증명은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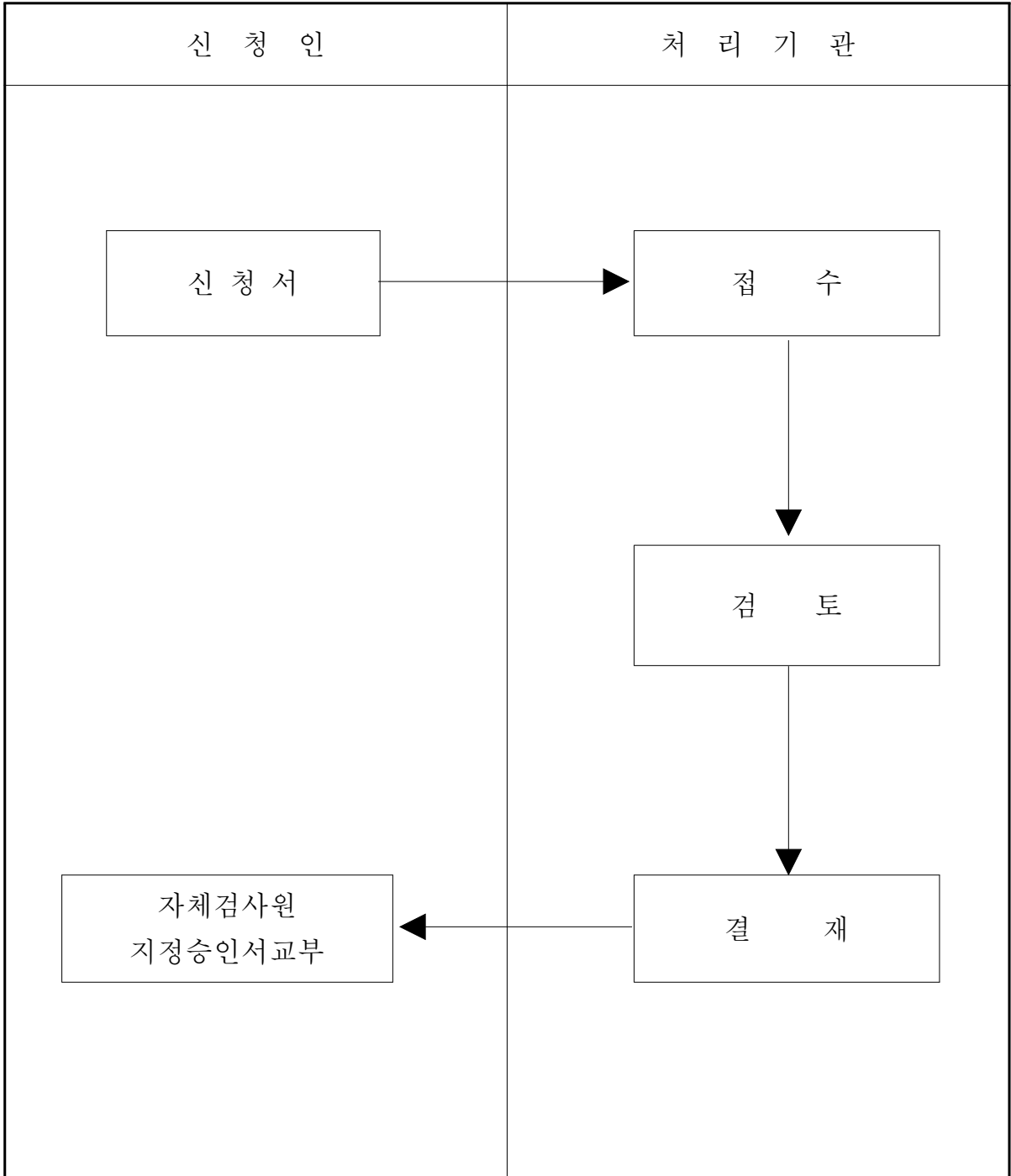
| | | | | |
|--|---------|-----------|-------------|------|
| 자체검사원지정(변경)승인신청서 | | | | 처리기간 |
| | | | | 즉 시 |
| 신청인 | ①성 명 | |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
| | ③주 소 | (전화 :) | | |
| 작업장 | ④명 칭 | | | |
| | ⑤소재지 | | | |
| ⑥ 자체 검사 원 | 구 분 | 지 정(신규포함) | 해 입 | |
| | 성 명 | | | |
| | 수의사면허번호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p style="text-align: center;">축산물가공처리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체검사원을 지정하고자 승인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p> <p>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지사</p> | | | | |
| 구비서류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 | | 수수료 |
| | | | | 없 음 |

※ 신청안내

(뒤 쪽)

| | | | |
|--------|-----|------|-----|
| 제출하는 곳 | 시·도 | 처리부서 | 축산과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 호

자체검사원지정증인서

성 명 :

수의사면허번호 :

위의 사람을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작업장의 자체검사원으로 지정승인합니다.

작업장의 종류 :

작업장의 명칭 :

소재지 :

년 월 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인

축산물수입신고서

| | | | |
|--|---------|--|--------------------------------|
| | | 처리기간 | 서류검사 3일 관능검사 5일 정밀검사 18일 |
| ①신고번호 | | ②신고일 | |
| ③신고기관 | | ④신고시기 <input type="checkbox"/> 본신고 <input type="checkbox"/> 사전신고 | |
| ⑤수입 화주 |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 | |
| | 상호 | 전화번호 | |
| | 주소 | 팩스번호 | |
| | 영업신고번호 | 업종 | |
| ⑥수출 자 | 수출회사명 | | |
| | 주소 | | |
| ⑦수출국 | | ⑧제조회사명 | ⑨작업장번호 |
| ⑩세번부호 | | ⑪거래품명 | |
| ⑫한글명 | | ⑬모델·규격 (제품유형) | ⑭용도 |
| ⑮배합비율 | | 뒤쪽에 기재 | |
| ⑯B/L번호 | | ⑰화물관리번호 | |
| ⑱입항일 | | ⑲반입일 | |
| ⑳총포장개수 | | ㉑국내도착항 | |
| ㉒선(기)명 | | ㉓검사(반입)장소 | |
| ㉔과세가격 | | ㉕순중량 | |
| ㉖원산지(국가) | | ㉗선적항 | |
| ㉘선적일시 | | ㉙검사기관 | |
| ㉚유통기한 | | ㉛가공공정 | |
| | | 뒤쪽에 기재 | |
| <p>「축산물가공처리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p> <p>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귀하</p> | | | |
| <p>※ 구비서류</p> <p>1.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입하는 축산물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축산물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에서 정하는 정밀검사대상 축산물로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p> <p>2.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발급한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검토서 사본(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으로서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축산물에 한한다)</p> <p>3.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한다)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기재된 서류(지육 및 자사의 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p> <p>4.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또는 허가증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의 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p> | | <p style="text-align: center;">수수료</p> <p>「축산물가공처리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수료</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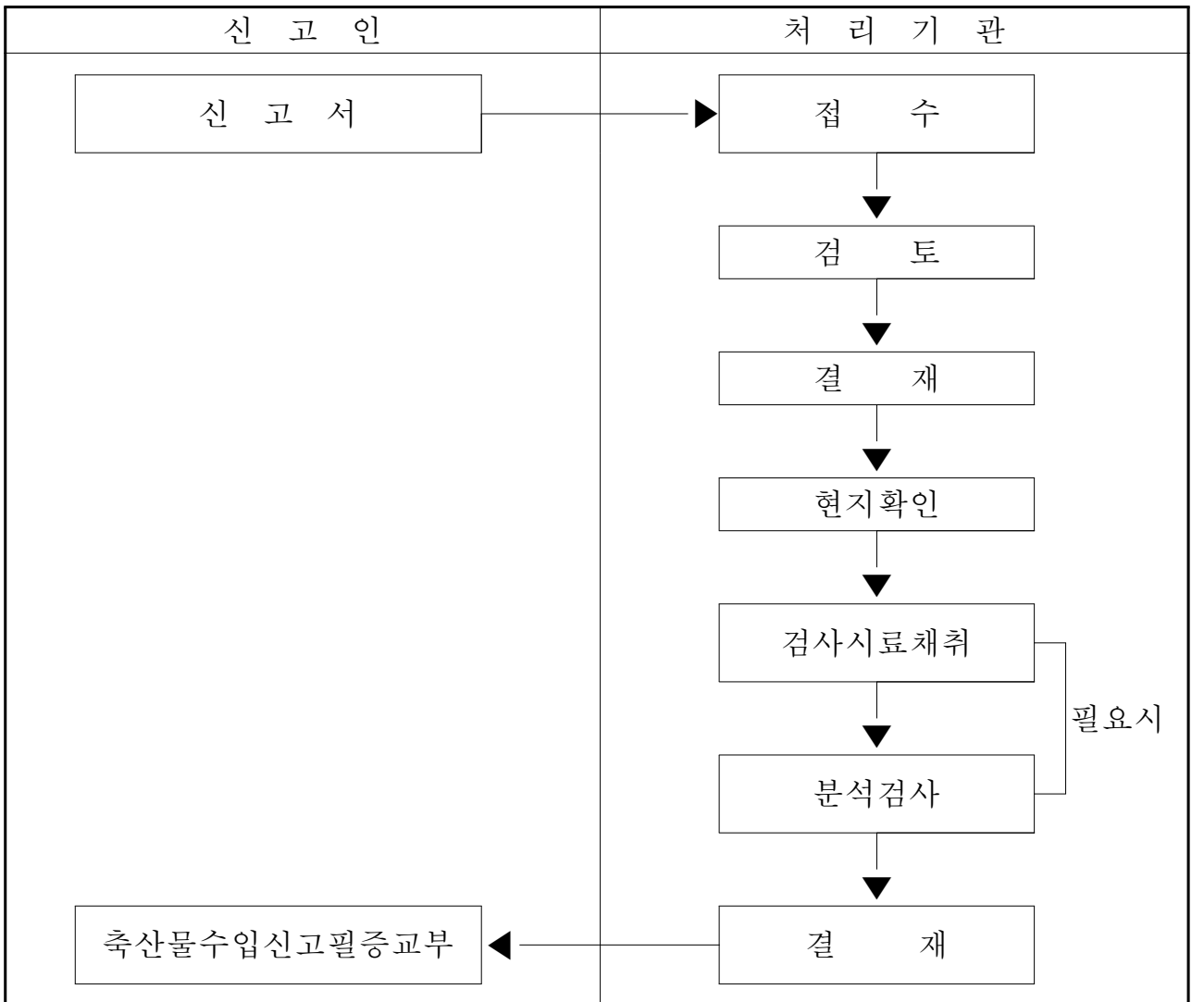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뒤 쪽)

| 번호 | 성분 | 성분배합비율(%) | 번호 | 성분 | 성분배합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 유의사항 | | 성분에 모든 원재료명을 기재하되, 제품유형의 분류를 위하여 주원료의 성분배합비율과 사용량을 정하고 있는 식품첨가물은 그 사용량 또는 비율을 기재하여야 하며,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라 함량을 표시하여야 하는 원재료 또는 성분의 사용량 또는 비율을 기재합니다. | | | |

| | |
|------|--|
| 가공공정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00·12·11>

| 축산물수입신고필증 | | | |
|---|---------|---------|----|
| 발 급 번 호 | | 용 도 | |
| 신 고 품 명 | 제 품 명 | | |
| | 한 글 명 | | |
| 제 품 유 형 | | | |
| 포장수량 및 형태 | (단위:) | 순 중 량 | kg |
| 화물관리번호 | 세관승인번호 | | |
| 수 출 국 | 생 산 국 | | |
| 보내는사람또는수출회사 | | | |
| 수출국가공회사 | | | |
| 선 적 지 | | 선적연월일 | |
| 도 착 항 | | 도착연월일 | |
| 받는사람또는 수입회사 | 성명또는회사명 | | |
| | 주 소 | | |
| 검 사 결 과 | | 유통기한만료일 | |
| 신고필증교부조건 | | | |
| <p>축산물가공처리법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p> | | | |

27274-09711일
1998. 5. 20 승인

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m²)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06.10.4>

출입·검사등기록부

| | | | |
|-------------------|--------|-------------|---------|
| 업 소 명 | | 대 표 자 | |
| 영업의종류 | | 허가(신고)번호 | |
| 소 재 지 | | 전화번호 | |
| 점검목적 | | 점검일시 | |
| 주요 점검내용 | | | |
| 법 조 항 | | 세부내용 및 위반여부 | |
| 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 | | |
| 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 | | |
| 제8조(위생관리기준) | | | |
| 제12조(축산물의 검사) | | | |
| 제21조(영업의종류및시설기준) | | | |
| 제25조(품목제조보고) | | | |
| 제29조(건강진단) | | | |
| 제30조(위생교육) | | | |
| 제31조(영업자등의 준수사항) | | | |
| 제32조(허위표시등의 금지) | | | |
| 제33조(판매등의 금지) | | | |
| 그 밖의 사항 | | | |
| 점검자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서명/날인) |
| 점검자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서명/날인) |
| 확 인 자 | 직위(직급) | 성명 | (서명/날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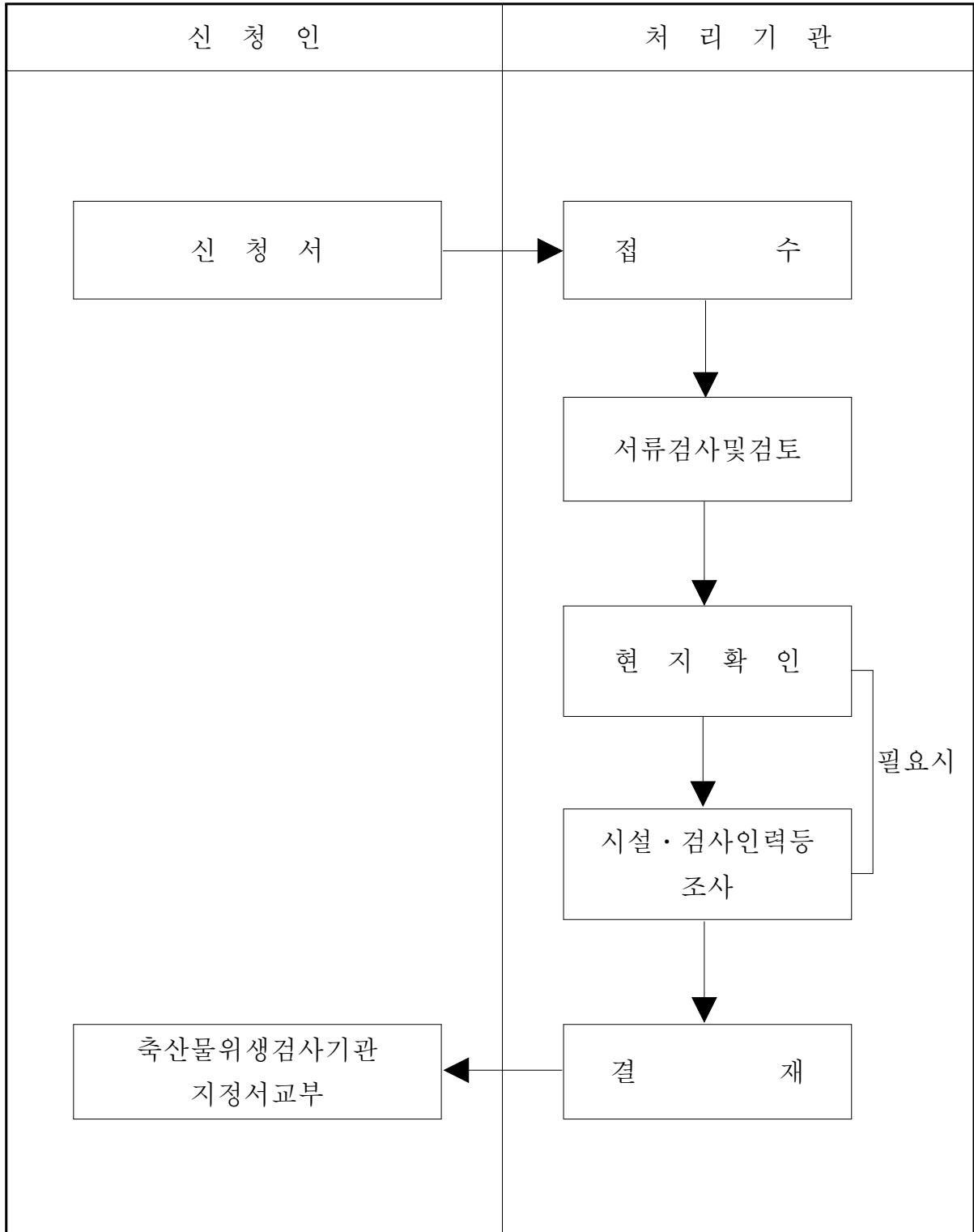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 | | | |
|---|------|--------|---------|----------|
| 축산물위생검사기관지정신청서 | | | 처리 | 서류검사 7일 |
| | | | 기간 | 현지확인 14일 |
| 신 청 인 | ①성 명 | | ②주민등록번호 | - |
| | ③주 소 | (전화:) | | |
| ④검사기관명칭 | | | | |
| ⑤소 재 지 | | (전화:) | | |
| ⑥검사대상축산물 및 검사의 범위 | | | | |
| <p>축산물가공처리법 제2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p> | | | | |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귀하 | | | | |
| <p>※ 구비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검사실 평면도 1부 2. 검사에 필요한 기계 및 기구류 보유내역 1부 3.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빙하는 서류 1부 4.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1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검사대상 축산물 및 검사항목 나. 제품종류별 검사기간 다. 검사의 절차와 시료채취에 관한 사항 라. 검사수수료에 관한 사항 마. 검사증명의 발행에 관한 사항 바.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사. 그 밖에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 | |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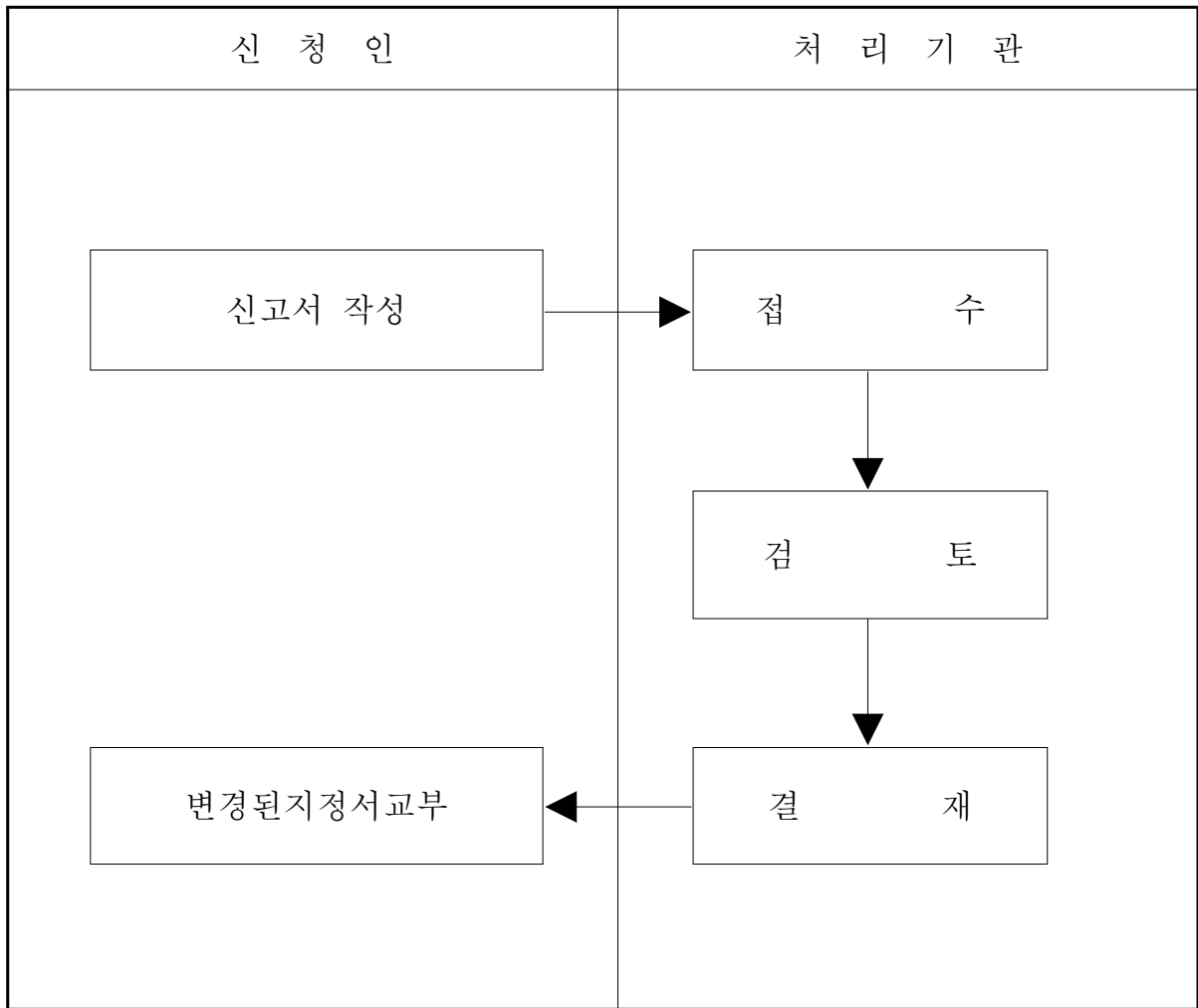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별지 제14호의3서식] <신설 2002.8.5>

| | | | | |
|--|-----|---------|--------|------|
| <input type="checkbox"/> 휴 지 <input type="checkbox"/> 폐 지 <input type="checkbox"/> 재 개 | | | | 처리기간 |
| 검사업무의 신고서 | | | | 즉 시 |
| 신 청 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전화 :) | | |
| 검사기관의명칭 | | | | |
| 소 재 지 | | (전화 :) | | |
| 휴지·폐지·재개일 | | 년 | 월 | 일 |
| 휴지의경우기간 | | 년 | 월 | 일 |
| 사 유 | | | | |
| <p>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p> <input type="checkbox"/> 휴 지 검사업무를 <input type="checkbox"/> 폐 지 하고자 신고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재 개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귀하 | | | | |

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m²)

제 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지정서

대 표 자 :

주 소 :

검사기관명 :

검 사 대 상 :

검 사 항 목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기관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

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m²)

| | | | | | | | |
|---|---|---|--|----------------------------|---|---------------------|---------------|
| <input type="checkbox"/> 도축업 <input type="checkbox"/> 축산물가공업 <input type="checkbox"/> 집유업 <input type="checkbox"/> 축산물보관업 <input type="checkbox"/> 식육포장처리업 | | | | | | (조건부)영업허가신청서 | 처리기간 뒤쪽 참조 |
| ① 신 청 인 | 성 명 | | | | | 주 민(법인)등 록 번 호 | |
| | 주 소 | | | | | (전 화 :) | |
| | 명 칭 (상 호) | 축 산 물 가 공 업 | <input type="checkbox"/> 식육가공업 () <input type="checkbox"/> 유가공업 () <input type="checkbox"/> 알가공업 () | 가 축 의 종 류 (도 축 업 에 한 함) | | | |
| | 소 재 지 | | | | | (전 화 :) | |
| ② 조 건 부 영 업 허 가 신 청 사 유 | | | 시 설 완 료 예 정 일 | | | | |
| 「축산물가공처리법」 <input type="checkbox"/>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input type="checkbox"/> 제30조제1항 에 따라 <input type="checkbox"/> 제23조 <input type="checkbox"/> 제33조제1항 위와 같이 <input type="checkbox"/> 영 업 허 가 를 신청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조 건 부 영 업 허 가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div> 시 · 도 지 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 | | | | | | |
| ※ <input type="checkbox"/> 는 해당하는 곳에 V표 합니다. ※ 축산물가공업란의 ()에는 가공품의 종류 및 품목을 기재합니다. | | | | | | | |
| 구 비 서 류 | 구 분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 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수수료 | |
| 구 비 서 류 | 영업허가신청 | 1.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2. 자체검사원 지정승인신청서(도축업 및 집유업에 한한다) 3. 검사위탁계약서(「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1. 법인등기부등본 2. 건축물대장등본 | 1만원 | |
| | 조건부영업허가신청 | 1. 사업개요 2. 영업장의 위치도 3. 시설내역 및 배치계획도 4. 사업계획부지의 사용승낙서 | | | 1. 토지등기부등본 2. 건축물대장등본 3. 법인등기부등본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div> | | | | | | | |
| 공 부 확 인 | 구 분 | | 일 자 | 결 과 | 확인자(서명 또는 인) | | |
| | <input type="radio"/> 도시계획관계확인서 <input type="radio"/> 신원증명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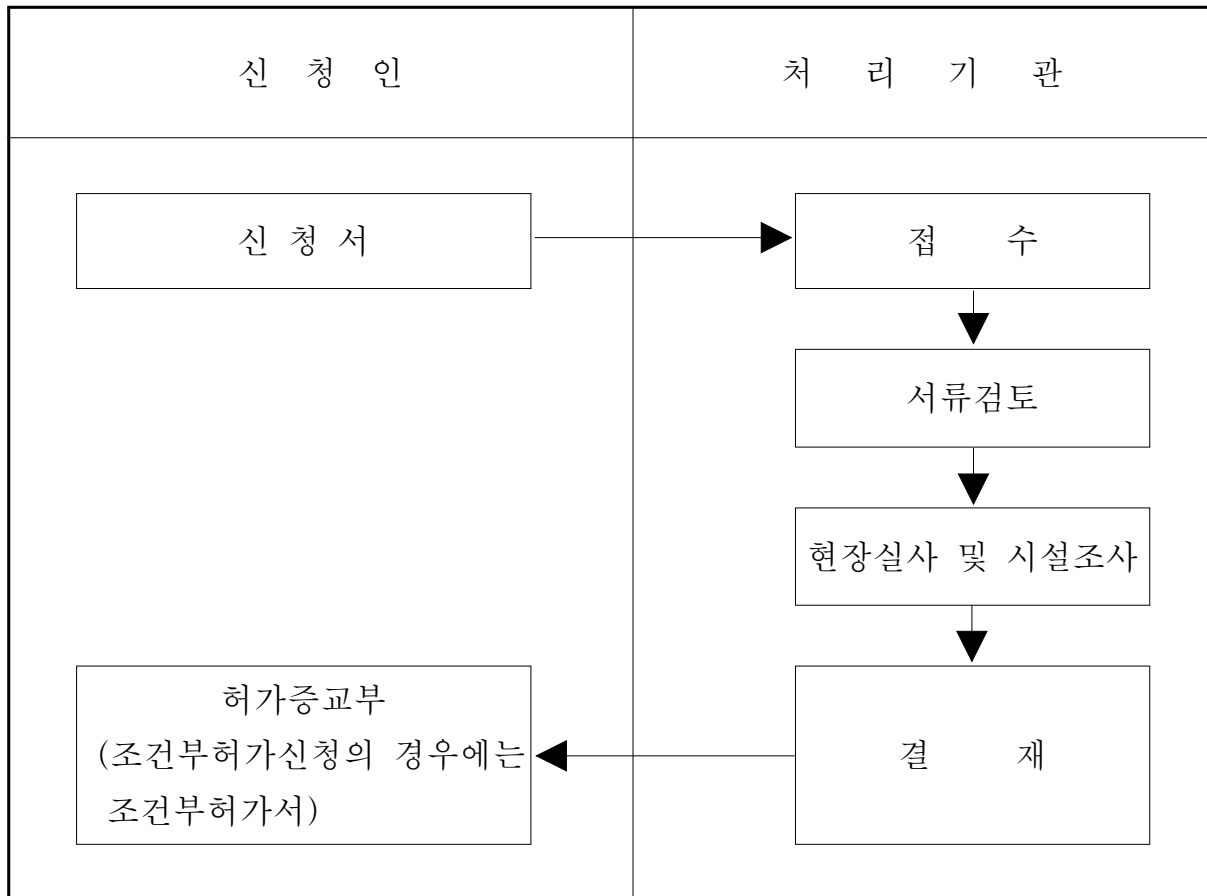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 신청안내

(뒤 쪽)

| | | | |
|--------|---|----------|---------------------------|
| 제출하는 곳 | 시 · 도 시·군·구 | 처리 기간 | 특별 시 : 8일 |
| 처리부서 | 축산과 | | 광역시·도 : 10일 시·군·구 : 7일 |
| 유의사항 | 1.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영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도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건축법·학교보건법·도시계획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 호

허 가 증

업 소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영업의 종류 :

가축의 종류 :

허 가 조 건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제1항·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 영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특 별 시 장

광 역 시 장

도 지 사 □□

시장·군수·구청장

허가번호 :

1. 시설배치도

2. 허가변경사항

3. 처분사항

| 연월일 | 내 용 | 확 인 자 (서명 또는 인) | 연월일 | 처분내용 | 확 인 자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업허가관리대장

| | | | | | | | | |
|-----------------|-----|----------|--------------|--------|-----|----------|--|--|
| ①영업허가사항 | | | 계 인 | | | | | |
| 업 소 명 | | | | | | | | |
| 영업허가번호 | | 제 호 | 허가일자 | 년 월 일 | | | | |
| 영업장소재지 | | 본 사 | | 전 화 | | | | |
| | | 공 장 | | 전 화 | | | | |
| 대 표 자 | | 성명(한글) | | 성명(한자) | | | | |
| | | 주민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 | |
| | | 주 소 | | | | | | |
| 영업허가조건 | | | 영업허가 시설범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영업허가의 변경허가(신고) | | | | | | | | |
| 연월일 | 내 용 | 기재자직급·성명 | | 연월일 | 내 용 | 기재자직급·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뒤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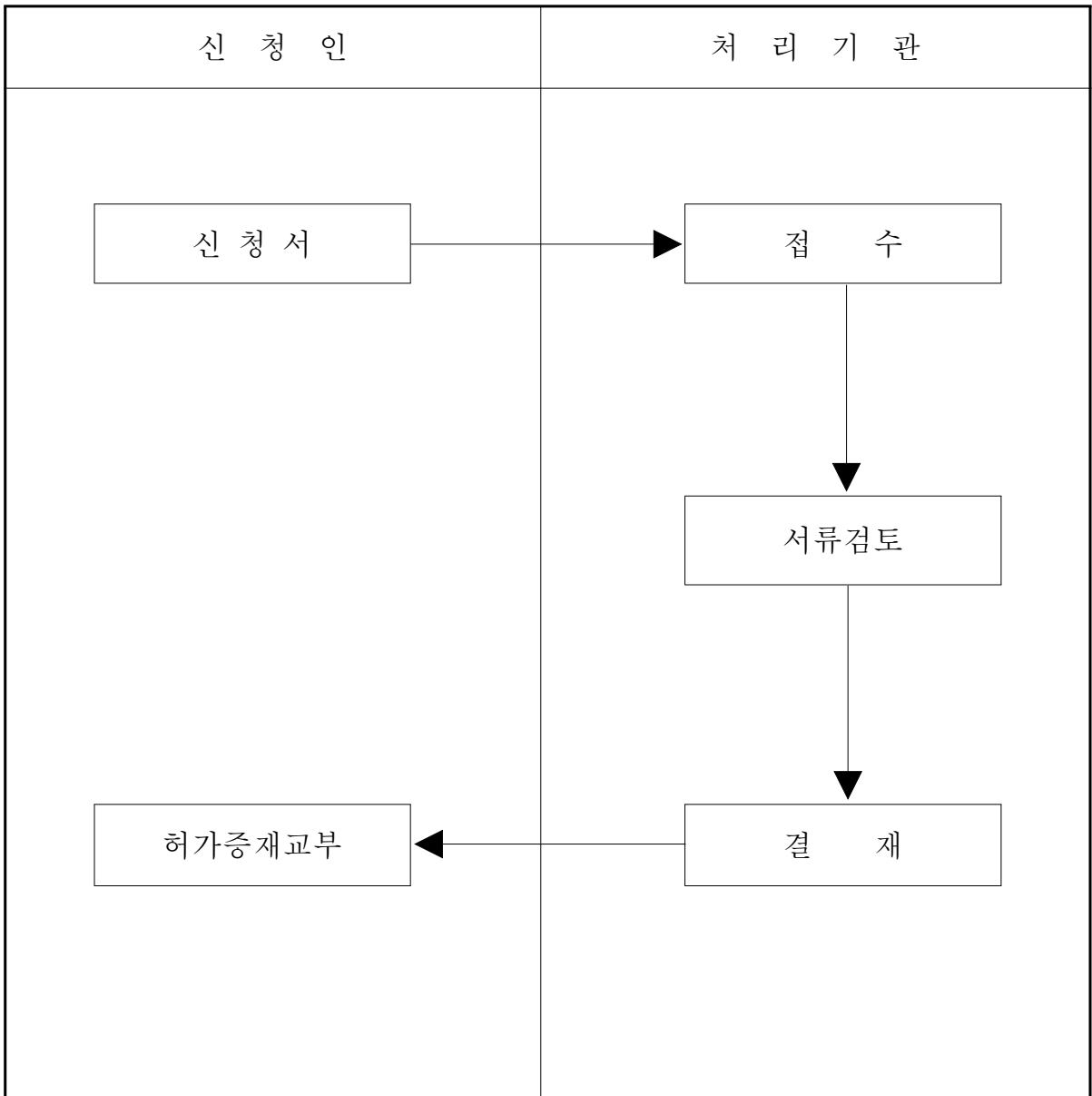
| ③업 소 규 모 | | | | | | | | | | | |
|-----------------------|----------------|------------------------------|--------------|------------------------------|--------------|----------|----------------|-----------------|----------------|---------------|--------------|
| 공 장 규 모 | | | | | | | | | 종 업 원 수 | | |
| 대 지 면 적 | | m ² | | 총 원 | | | | 명 | | | |
| 건 물 면 적 | | m ² | | 본 사 | | | | 명 | | | |
| 작 업 장 면 적 (처리·가공장) | | 소계 m ² | | 공 장 | | 사 무 직 | | 명 | | | |
| | | | | | | 판 매 직 | | 명 | | | |
| | | | | | | 생 산 직 | | 명 | | | |
| 건물소유구분 | | <input type="checkbox"/> 자 가 | | <input type="checkbox"/> 임 대 | | | | | | | |
| ④자체검사원 지정승인·해임신고 | | | | | | | | | | | |
| 성 명 | 주민 등록 번호 | 수의사 면허 번호 | 직 책 | 신 고 내 용 | | 성 명 | 주민 등록 번호 | 수의사 면허 번호 | 직 책 | 신 고 내 용 | |
| | | | | 구분(지정 ·해임) | 승 인· 수리일자 | | | | | 구분(지정 ·해임) | 승 인· 수리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⑤기 타 행 정 조 치 사 항 | | | | | | | | | | | |
| 연월일 | 구분 | 조치내용 | 기재자직급·성명 | 연월일 | 구분 | 조치내용 | 기재자직급·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⑥행 정 처 분 사 항 | | | | | | | | | | | |
| 처 분 연월일 | 문서 번호 | 위반 사항 | 처분내용 및 기간 | 기 재 자 직급·성명 | 처 분 연월일 | 문서 번호 | 위반 사항 | 처분내용 및 기간 | 기 재 자 직급·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⑦비 고 | | | | | | | | | | | |

※ 신청안내

(뒤 쪽)

| | | | |
|---------|--|---------|-------|
| 제출하는 곳 | 시 · 도 시 · 군 · 구 | 처 리 부 서 | 축 산 과 |
| 처 리 기 간 | ○ 특별시 · 광역시 · 도 : 3일 ○ 시 · 군 · 구 : 즉시 | | |
| 유 의 사 항 | ⑤영업의 종류란에는 도축업의 경우 도축업 다음에 가축의 종류를 기재하고[예 : 도축업(소)],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축산물가공업 다음에 식육가공업 · 유가공업 · 알가공업중 해당되는 영업을 기재합니다[예 :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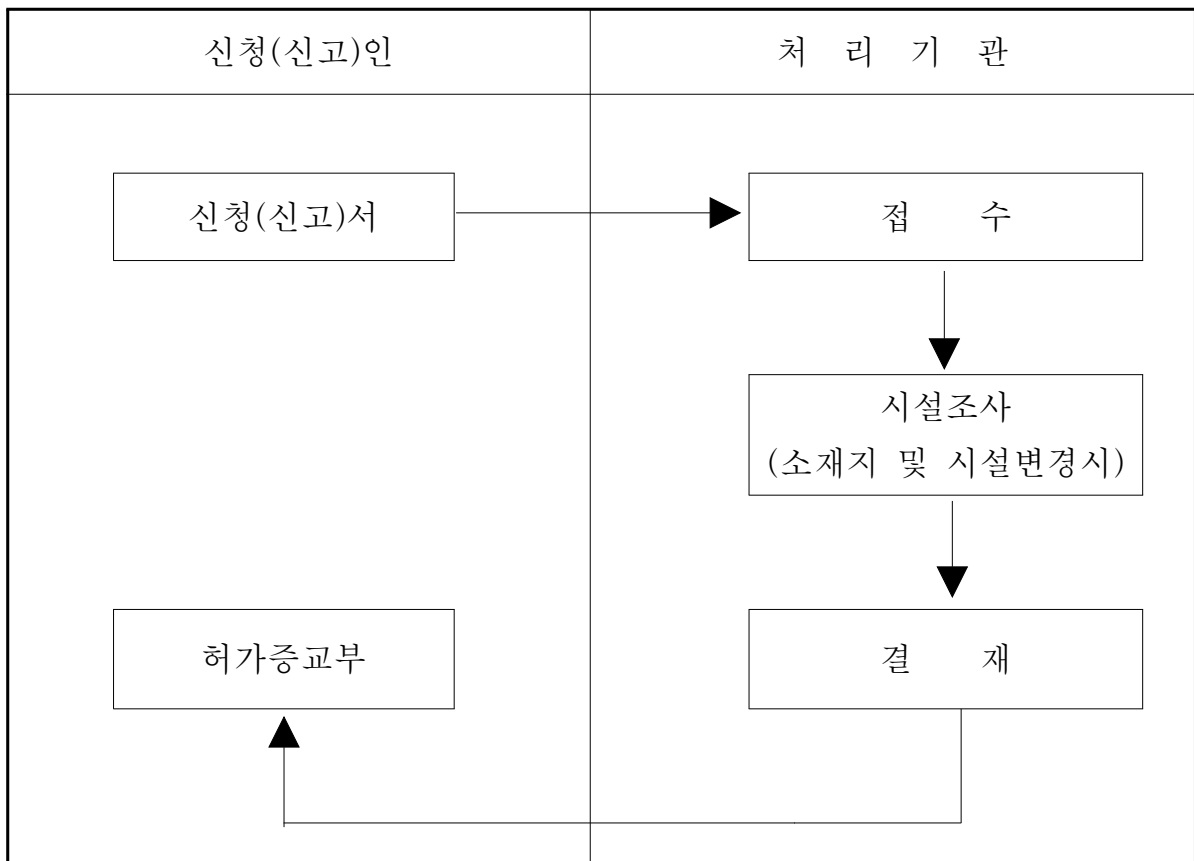
| | | | | | | | | | | | | | | | | | | |
|--|--------------------------|---------------------------------|----|-------|----------|------|----|----|---|--|--------------------------|--|--|--|---|-----|--|-----|
| 영업허가의 변경 | | <input type="checkbox"/> 허가 신청서 | | 처리기간 | | | | | | | | | | | | | | |
| | | <input type="checkbox"/> 신고서 | | 뒤쪽 참조 | | | | | | | | | | | | | | |
| ①신청(신고)인 성명(법인명) | | ②주민(법인)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③영업의종류 | | ④허가번호 | | | | | | | | | | | | | | | | |
| ⑤영업장의명칭(상호) | | | | | | | | | | | | | | | | | | |
| ⑥영업장의소재지 | | 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⑦변경사항 | | | | | | | | | | | | | | | | | | |
|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 | | | | | | | | | | | | | | |
| 영업자성명(법인의경우 에는대표자성명) | | | | | | | | | | | | | | | | | | |
| 영업장명칭(상호) | | | | | | | | | | | | | | | | | | |
| 영업장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가축의종류 | | | | | | | | | | | | | | | | | | |
| 영업장중요시설 | (시설개요 및 평면도 별첨) | (시설개요 및 평면도 별첨) | | | | | | | | | | | | | | | | |
| 기타영업장의시설변경 | | | | | | | | | | | | | | | | | | |
| 변경사유 | | | | | | | | | | | | | | | | | | |
| <p style="text-align: center;">「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제2항·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영업허가의 변경 <input type="checkbox"/> 허가를 를 신청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신고</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신청(신고)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p> <p>시·도지사 귀하 시·군·구청장</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r> <td style="width: 5%;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공부 확인</td> <td style="width: 45%; text-align: center;">구비서류</td>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일자</td>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결과</td> <td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인</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 건축물대장등본 ○ 도시계획관계확인서</td> <td></td> <td></td> <td></td> </tr> </table> <p style="margin-top: 10px;">※ 뒷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nput type="checkbox"/>는 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r> <td style="width: 70%;"> ※구비서류 1. 허가증 2.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3. 소재지 변경시 가. 허가증 나.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다.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td> <td style="width: 30%;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수수료</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5천원</td> </tr> </table> | | | | | 공부 확인 | 구비서류 | 일자 | 결과 | 인 | | ○ 건축물대장등본 ○ 도시계획관계확인서 | | | | ※구비서류 1. 허가증 2.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3. 소재지 변경시 가. 허가증 나.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다.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수수료 | | 5천원 |
| 공부 확인 | 구비서류 | 일자 | 결과 | 인 | | | | | | | | | | | | | | |
| | ○ 건축물대장등본 ○ 도시계획관계확인서 | | | | | | | | | | | | | | | | | |
| ※구비서류 1. 허가증 2.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3. 소재지 변경시 가. 허가증 나.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다.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5천원 | | | | | | | | | | | | | | | | | |

※ 신청안내

(뒤 쪽)

| 제출하는 곳 | 시 · 도 시 · 군 · 구 | 처리부서 | 축산과 |
|--------|--|------|-----|
| 허가처리기간 | 특 별 시 | | 5일 |
| | 광역시 · 도 | | 7일 |
| | 시 · 군 · 구 | | 5일 |
| 신고처리기간 | 특 별 시 | | 3일 |
| | 광역시 · 도 | | 3일 |
| | 시 · 군 · 구 | | 3일 |
| 유의사항 | ③영업의 종류란에 도축업의 경우 도축업 다음에 가축의 종류를 기재하고[예 : 도축업(소)],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축산물가공업 다음에 식육가공업 · 유가공업 · 알가공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기재합니다[예 :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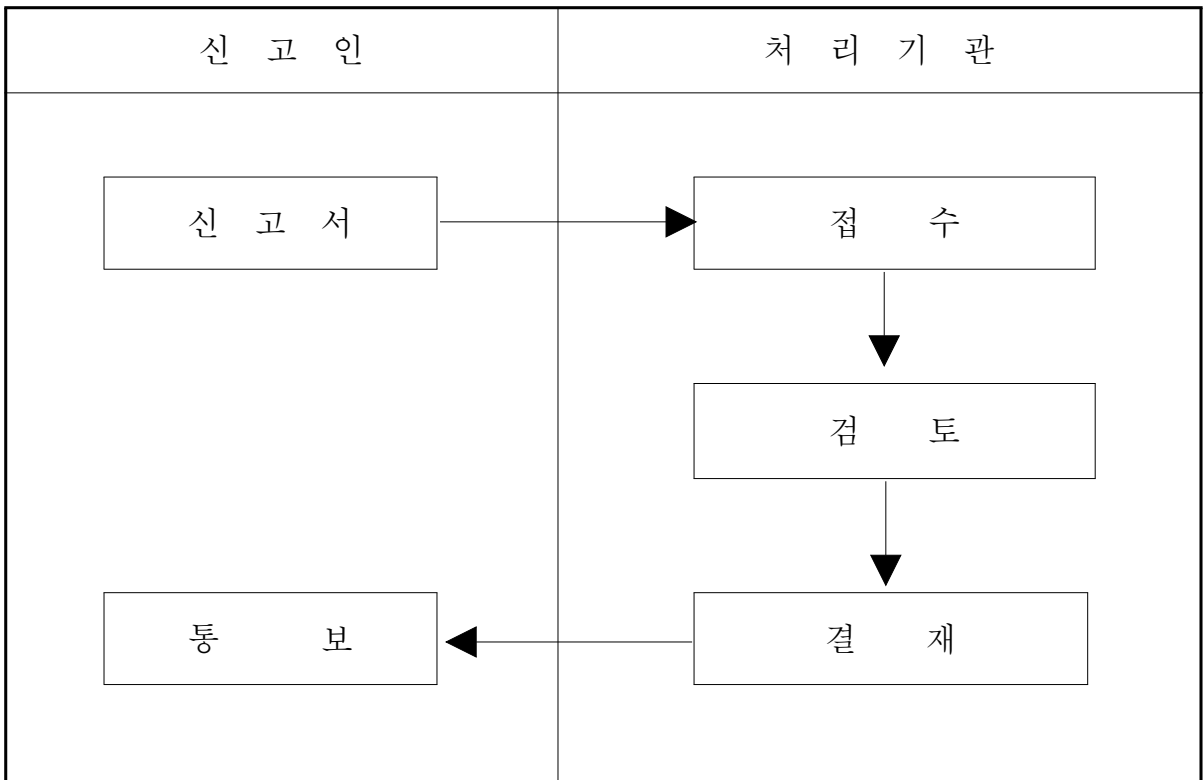
| | | |
|---|---|----------------|
| | <input type="checkbox"/> 휴업 영업 <input type="checkbox"/> 재개업 신고서 <input type="checkbox"/> 폐업 | 처리기간 |
| | | 즉시 |
| ① 신 고 인 | 성명(법인명) | 주민(법인) 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 :) |
| ② 영 업 장 | 영업의종류 | 업 소 명 |
| | 소 재 지 | |
| ③ 재개업(폐업)일 | 년 월 일 | |
| ④ 휴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⑤ 사 유 | | |
| <p>축산물가공처리법 <input type="checkbox"/> 제22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input type="checkbox"/> 제32조 의</p> <p> <input type="checkbox"/> 제24조제2항 <input type="checkbox"/> 제36조제3항 의</p> <p> <input type="checkbox"/> 휴업</p> <p>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input type="checkbox"/> 재개업 하고자 신고합니다.</p> <p> <input type="checkbox"/> 폐업</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년 월 일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신 고 인</p> <p>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p> <p>시 · 도 지 사 귀하</p> <p>시장 · 군수 · 구청장</p> | | |
| ※ 뒷면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nput type="checkbox"/> 는 해당하는 곳에 V표 합니다. | | 수수료 |
| ※ 구비서류 :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 | 없음 |

※ 신고안내

(뒤 쪽)

| 제출하는 곳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시·도 시·군·구 | 처 리 부 서 | 축 산 과 |
|---------|---|---------|-------|
| 유 의 사 항 | 1. 도축업과 집유업의 영업자가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예정일 5일전까지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②영업장의 영업의 종류란에 도축업의 경우 도축업 다음에 가축의 종류를 기재하고[예 : 도축업(소)],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축산물가공업 다음에 식육가공업·유가공업·알가공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기재하며[예 :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축산물판매업 다음에 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우유류판매업·축산물수입판매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기재합니다[예 :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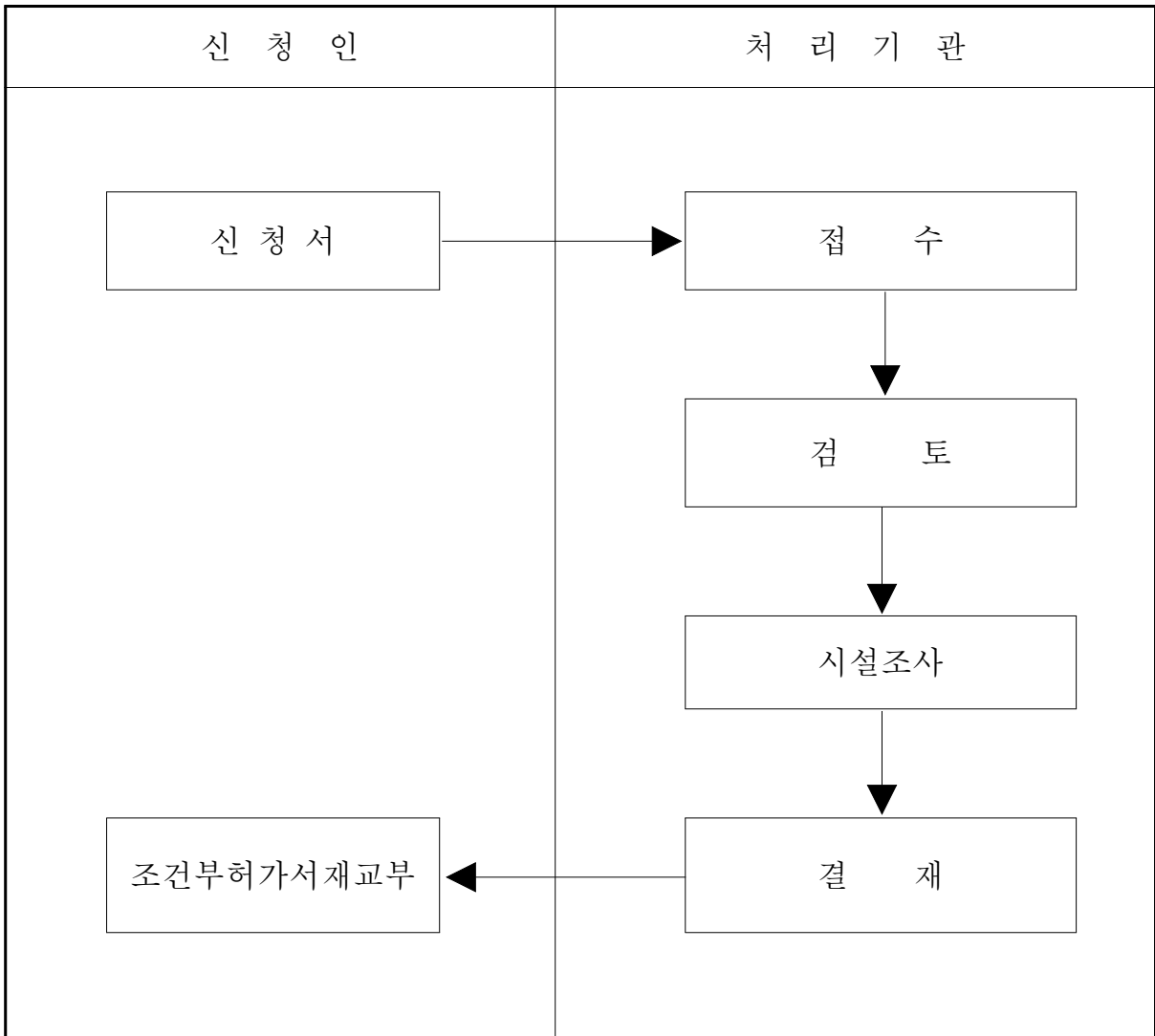
| | | |
|---|---------|---------------------|
| <h2 style="margin: 0;">조건부허가기간연장신청서</h2> | | 처리기간 |
| | | 뒤 쪽 |
| ①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주민(법인) 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 :) |
| ②영업장명칭(상호) | | |
| ③영 업 장 소 재 지 | | (전화 :) |
| ④영 업 의 종 류 | | ⑤가축의종류 (도축업에 한함) |
| ⑥허가기간연장사유 | | |
| <p>축산물가공처리법 제23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건부허가기간을 연장받고자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2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margin-top: 20px;">특 별 시 장 광 역 시 장 귀하 도 지 사 시장 · 군수 · 구청장</p> | | |
|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없 음 | | 수 수 료 |
| | | 없 음 |

※ 신청안내

(뒤 쪽)

| | | | |
|---------|---|---------|-------|
| 제출하는 곳 | 시 · 도 시·군·구 | 처 리 부 서 | 축 산 과 |
| 처 리 기 간 | 특별시·광역시·도 | 7일 | |
| | 시·군·구 | 5일 | |
| 유 의 사 항 | ④영업의 종류란에 도축업의 경우 도축업 다음에 가축의 종류를 기재하고[예 : 도축업(소)],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축산물가공업 다음에 식육가공업·유가공업·알가공업중 해당되는 영업을 기재합니다[예 :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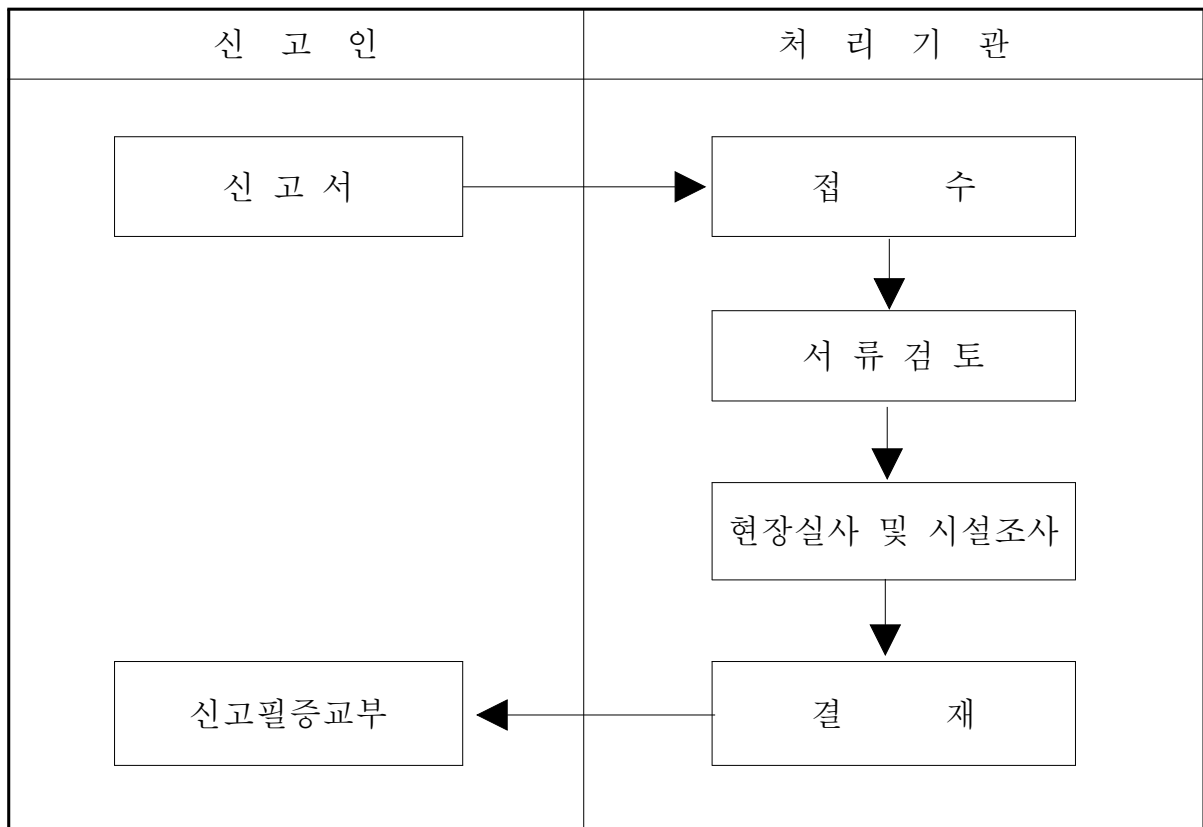


| | | | | | |
|--|--|----------|---|----------------|-------|
| <input type="checkbox"/> 축산물운반업 <input type="checkbox"/> 축산물판매업 | | | | 영업신고서 | 처리기간 |
| | | | | | 뒤쪽 참조 |
| 신고인 | ①성 명 | |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③주 소 | (전화 :) | | | |
| | ④영업장 명 칭 (상 호) | ⑤축산물 판매업 | <input type="checkbox"/> 식육판매업 <input type="checkbox"/>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input type="checkbox"/> 우유류판매업 <input type="checkbox"/> 축산물수입판매업 | | |
| | ⑥소재지 | (전화 :) | | | |
|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 ※ 뒤쪽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nput type="checkbox"/> 는 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1.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1부 2. 시설사용계약서(축산물운반업에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 | | | 1만원 |
| 공 부 확 인 | 구 분 | 일 자 | 결 과 | 확인자성명(서명 또는 인) | |
| ○ 건축물대장등본 | | | | | |
| ○ 도시계획관계확인서 | | | | | |
| ○ 교육필증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 | | | |
|---------|---|------|-------|
| 제출하는 곳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처리부서 | 축 산 과 |
| | 시·군·구 | 처리기간 | 3일 |
| 유 의 사 항 | <p>1. 축산물판매업은 동일인이 같은 시설안에서 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및 축산물수입판매업중 2 이상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영업별로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같은 시설안에서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p> <p>2.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는 때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p> <p>3.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p>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 호

신 고 필 증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영업장의 명칭(상호) :

소 재 지 :

영업의 종류 :

품목 등의 종류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시장·군수·구청장

인

(뒤 쪽)

신고번호 :

□□□□□□□□□□□□□□□□□□

1. 시설배치도

2. 변경 및 처분사항

| 일 자 | 변경 및 처분내용 | 담당자 직급·성명(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업신고관리대장

| | | | | | | 계 장 | 과 장 | 확 인 |
|---------------------|----------|-------------|------------------|-----------|------------------|--------------|------------------|-----------|
| | | | | | | | | |
| ① 업종 | | ②영업의 형 태 | | ③신고 번호 | | ④신 고 연월일 | | |
| ⑤ 업소명 | 년 월 일 신규 | | 년 월 일 변경신고(인) | | 년 월 일 변경신고(인) | | 년 월 일 변경신고(인) | |
| | | | | | | | | |
| ⑥ 소재지 | 주 소 | | | | | 전화번호 | | |
| | 읍·면·동코드 | 산 | 번 | 지 | 호 | 특수구분 | 명 | 칭 구 획 호 수 |
| | | | | | | | | |
| ⑦ 영업자 | 성 명 | | | |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주 소 | | | | | | | |
| | 연 월 일 | | | | | | | |
| ⑧ 종사자 | 남 자 | 명 | | 여 자 | 명 | | 계 명 | |
| ⑨ 행정 처분 사항 | 처 분 일 자 | 위반사항 | 위반코드 | 처분내용 | 처분코드 | 기재자직급·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뒤 쪽)

| | | | | | | |
|------------------------------|-------------|---|--|-----------|--------------------|---------|
| ⑩건물구조 ※□표는 해당 하는 곳에 V표 | | <input type="checkbox"/> 목 조 <input type="checkbox"/> 벽 돌 <input type="checkbox"/> 부력조 <input type="checkbox"/> 철근콘크리트 총 층중 <input type="checkbox"/> 지 상 건평 m ² <input type="checkbox"/> 지하 층 | | | <u>평면도</u> | |
| ⑪시설현황 | 내 용 | | 변 경 사 항 | | <u>위치도</u> | |
| | 영 업 장 | 판매장 또는 사무실 | m ² | 년 월 일 | | |
| | | 보관시설 | m ² | 년 월 일 | | |
| | | 진열상자 | m ² | 년 월 일 | | |
| | 축산물운반용차량수 | | 대 | 년 월 일 | | |
| | 세 차 시 설 | | m ² | 년 월 일 | | |
| | 차 고(창 고) | | m ² | 년 월 일 | | |
| | 품목추가에의한시설 | | m ² | 년 월 일 | | |
| | 화 장 실 | | <input type="checkbox"/> 업소내 m ² | 재작성 사유 | | |
| | | | <input type="checkbox"/> 공 용 m ² | 작성 연월일 | | |
| 급 수(세척시설) | | <input type="checkbox"/> 상수도전용 <input type="checkbox"/> 지하수전용 <input type="checkbox"/> 상수도+지하수겸용 | | 작성 자 | 직 위 (직 급) | |
| ⑫참고사항 | | | | 성명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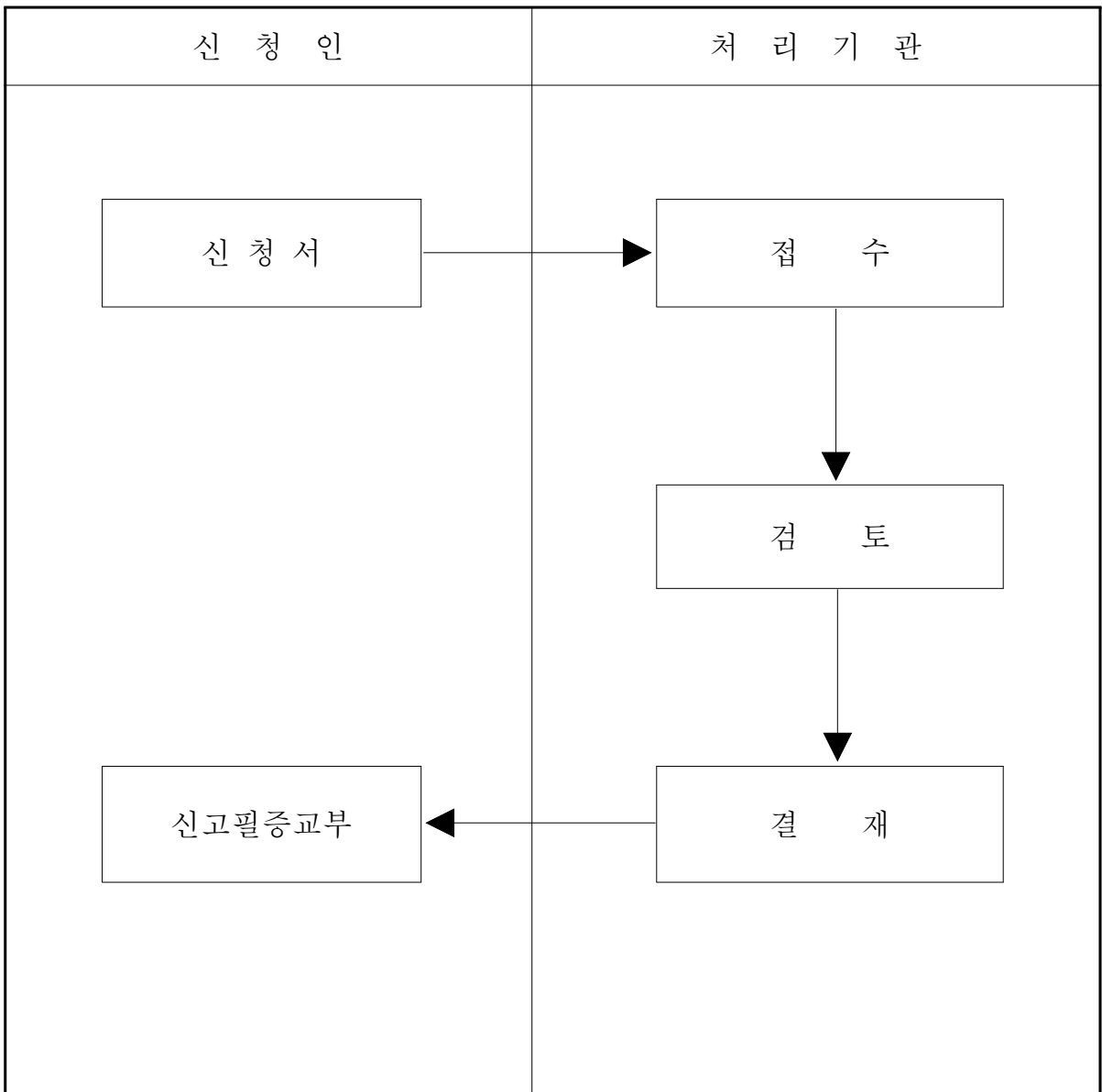
| 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 | | | | 처리기간 |
|---|-------------------|---------|-------------|------|
| | | | | 즉 시 |
| 신 청 인 | ①성 명 | |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③주 소 | (전화 :) | | |
| | ④영업장의 명칭 (상 호) | | ⑤영 업 의 종 류 | |
| | ⑥영업장의소재지 | | | |
| <p style="text-align: center;">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margin-top: 20px;">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p> | | | | |
|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1. 신고필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2. 신고필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못쓰게 된 신고필증 | | | | 수수료 |
| | | | | 5천원 |

※ 신고안내

(뒤 쪽)

| | | | |
|--------|---|------|-----|
| 제출하는 곳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시·군·구 | 처리부서 | 축산과 |
| 유의사항 | ⑤영업의 종류란에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축산물판매업 다음에 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우유류판매업·축산물수입 판매업중 해당되는 영업을 기재합니다[예 : 축산물판매업(식육 판매업)].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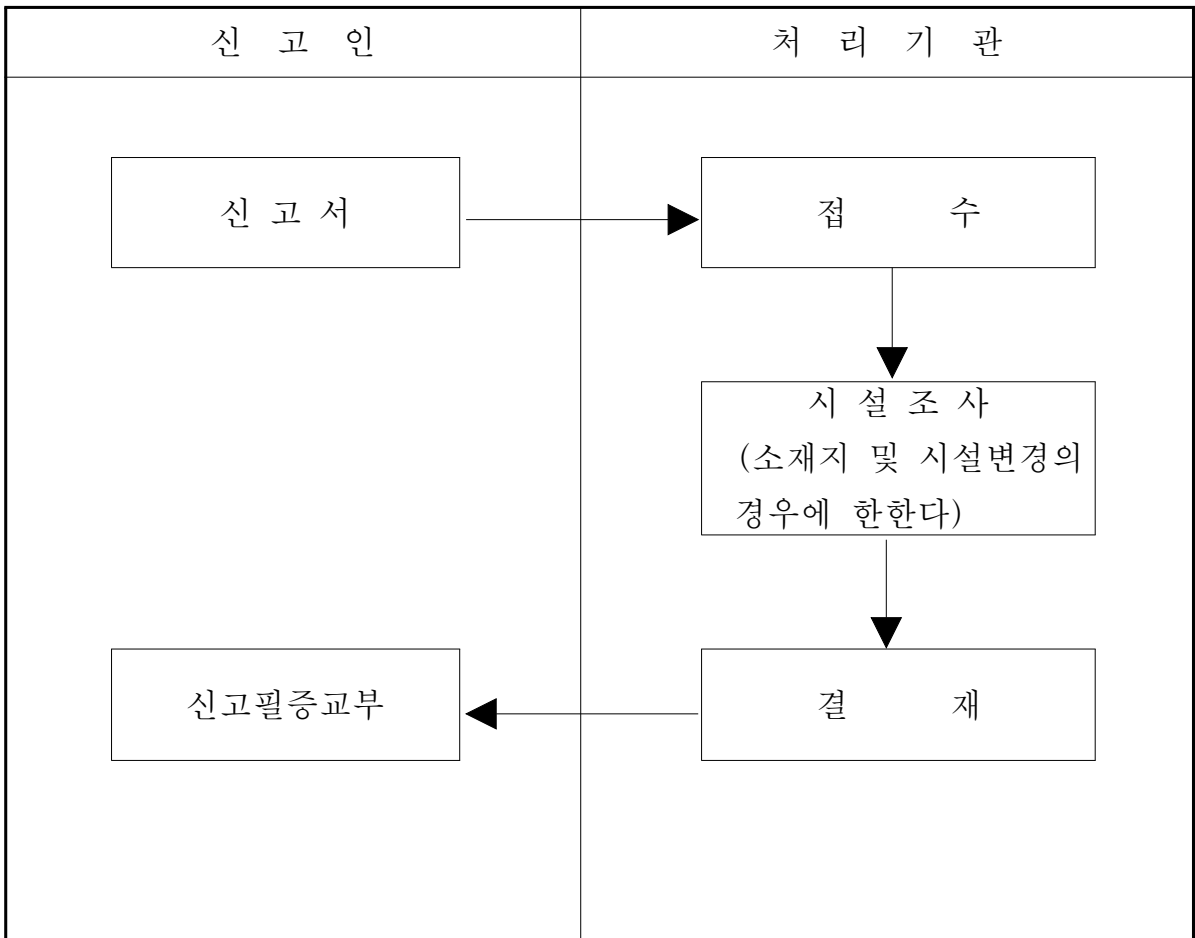
| 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 | | | | 처리기간 |
|--|---------|---------------|---------------|------------|
| | | | | 3일 |
| ① 신 고 인 | 성명(법인명) |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주 소 | (전화 :) | | |
| | 명칭(상호) | | 영업의 종류 | |
| | 소 재 지 | (전화 :) | | |
| ②변경사항 | | | | |
| 구 분 | | 변 경 전 | 변 경 후 | |
| 소유자 또는 대표자 | | | | |
| 영업장의명칭(상호) | | | | |
| 영업장의소재지 | | | | |
| 영업장의면적 | | | | |
| 축산물운반용차량수 | | | | |
| 품목추가에의한시설변경 | | 시설개요 및 평면도 별첨 | 시설개요 및 평면도 별첨 | |
| ③변경사유 | | | | |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 |
|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1. 신고필증 2. 영업장 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3. 소재지 변경시 가. 신고필증 나.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다. 시설사용계약서(축산물운반업에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 수수료 5천원 |

※ 신고안내

(뒤 쪽)

| | | | |
|---------|--|------|-------|
| 제출하는 곳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시·군·구 | 처리부서 | 축 산 과 |
| 유 의 사 항 | 1. 영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는 때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행정처분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3. ①신고인의 영업을 종류란에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축산물판매업 다음에 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우유류판매업·축산물수입판매업중 해당되는 영업을 기재합니다[예 :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품목제조보고서 | | | |
|--|---------|-----------------|----------------------|
| ① 보 고 인 | 성명(법인명) |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주 소 | (전화 :) | |
| ② 영 업 장 | 명칭(상호) | | |
| | 소 재 지 | | |
| ③ 품목의 유형 | | ④ 영업허가번호 | |
| ⑤ 제 품 명 | | ⑥ 유통기간 | 년 월 일 제조일부더 |
| ⑦ 원료 또는 성분명, 성분배합비율 | (별 첨) | | |
| ⑧ 용도·용법 | | | |
| ⑨ 포장방법 및 포장단위 | | | |
| ⑩ 성 상 | | | |
| ⑪ 기 타 | | | |
| <p>축산물가공처리법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품목을 제조하였음을 보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2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보 고 인 (서명 또는 인)</p> <p>시 · 도 지 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p> | | | |
| <p>구비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조방법설명서 2.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발급한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검토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축산물에 한한다) 3. 유통기간 및 기간설정 사유서 | | | |
| <p>※ 유의사항</p> <p>품목제조보고서는 제품생산 개시전이나 제품생산 개시후 7일 이내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p> | | | |

| 품목제조보고사항변경보고서 | | | |
|--|---------|---------|------------|
| ① 보고인 | 성명(법인명) |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 :) | |
| ② 영업장 | 명칭(상호) | | |
| | 소재지 | | |
| ③ 영업의 종류 | | | |
| ④ 변경 사항 | | | |
| 구 분 | 변 경 전 | 변 경 후 | |
| 제 품 명 | | | |
| 주 원 료 | | | |
| 유통 기간 | | | |
| 변 경 사 유 | | | |
| <p style="text-align: center;">축산물가공처리법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품목제조보고사항을 변경하고자 보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보 고 자 (서명 또는 인)</p> <p>시 · 도 지 사 시장·군수·구청장 귀 하</p> | | | |
| 구비서류 : 유통기간 설정의 근거서류(유통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
| ※ 유의사항 품목제조보고의 변경보고서는 품목제조보고사항을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품목제조보고관리대장

1. 품목제조 보고사항

영업허가번호 제 호

| | | | | | |
|-------------|-----|--------|-----|-----------|-----|
| ① 품목보고번호 | 제 호 | ② 제품명 | | ③ 업소명 | |
| ④ 품목의유형 | | ⑤ 보고일자 | | 년 | 월 일 |
| ⑥ 원료 또는 성분명 | | | | | |
| ⑦ 성 상 | | ⑧ 포장단위 | | | |
| ⑨ 용 법 | | ⑩ 유통기간 | | | |
| ⑪ 품목제조조건 | | ⑫ 기재자 | 직 급 | | |
| |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2. 보고사항 변경보고 내용

| 제 품 명 | | | 주 원 료(%) | | |
|-------|-------|--------------|----------|--------|--------------|
| 연월일 | 변경제품명 | 기재자 직급·성명 | 연월일 | 변경주원료명 | 기재자 직급·성명 |
| | | | | | |

(뒤 쪽)

| 제 품 명 | | | 주 원 료(%) | | |
|-------|-------|--------------|----------|--------|--------------|
| 연월일 | 변경제품명 | 기재자 직급·성명 | 연월일 | 변경주원료명 | 기재자 직급·성명 |
| | | | | | |

3. 행정처분

| 처분연월일 | 문서번호 | 위 반 사 항 | 처분내용 및 기간 | 기재자 직급·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1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우○○○-○○○ 주소 : \전화 \전송 \담당 :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농림부장관
 (시·도)
참조 담당과장

| | | | | |
|-----|----------|-------|-------|--|
| 선결 | | | 지시 | |
| 접수 | 일자 시간 | . . . | 결재·공람 | |
| | 번호 | | | |
| 처리과 | | | | |
| 담당자 | | | | |

제 목 영업허가(신고)사항()월 보고



| 연번 | 영업소명칭 (상 호) | 대표자 | 소재지 | 전화 번호 | 허가 업종 | 1일 생산능력 | 생산품목의 종 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발 신 기 관 장 명

27274-24311보
1998. 5. 20 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

|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 | | | 처리기간 3일 |
|---|--|-------------------------------------|--|------------|
| ①승계를 하는사람 | 성명(법인명) |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주소 | (전화:) | | |
| ②승계를 받는사람 | 성명(법인명) |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주소 | (전화:) | | |
| ③영업장 | 명칭(상호) | 변경 전 | 변경 후 | |
| | 영업의 종류 | | | |
| | 허가(신고)번호 | | | |
| | 소재지 | (전화:) | | |
| ④승계사유 | <input type="checkbox"/> 양도·양수 <input type="checkbox"/> 상속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6조제 3 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제 1 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 시 ·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nput type="checkbox"/> 는 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 | | | |
| 구비서류 | 구분 |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 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수수료 |
| | 영업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 | 법인등기부등본 | 1만원 |
| | 상속의 경우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호적등본 | |
| | 그 외의 경우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없음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
| ※ 신고안내 | | | | |
| 제출하는 곳 | 시 · 도 시 · 군 · 구 | 처리부서 | 축산과 | |
| 유의사항 | 1. 영업자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양도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 양도·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③영업장의 영업의 종류란에는 도축업의 경우 도축업 다음에 가축의 종류를 기재하고 [예:도축업(소)],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축산물가공업 다음에 식육가공업·유가공업·알가공업중 해당되는营业을 기재하며 [예: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축산물판매업 다음에 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우유류판매업·축산물수입판매업중 해당되는营业을 기재합니다 [예: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행정처분내용고지 및 가중처분대상업소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 처분받은 날짜 | 행정처분 내용 | 행정처분 사유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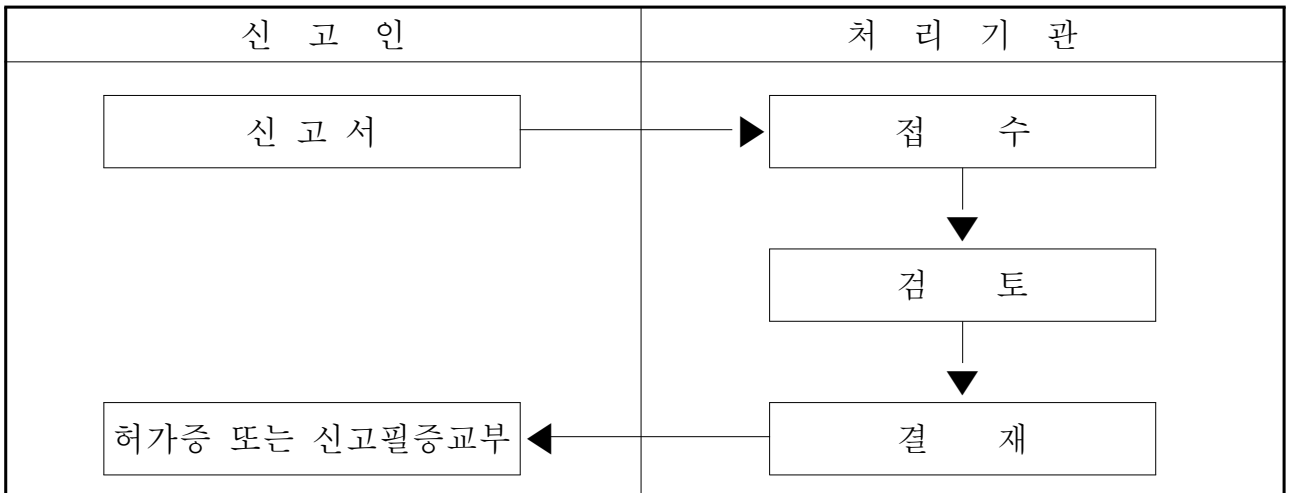
- ※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왼쪽 란에 “없음”이라고 적습니다.
 - ※ 양도·양수 허가담당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위 란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재적발된 때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별표 11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양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33호서식]

행 정 처 분 대 장

| 번호 | 문서번호 (발송일자) | 영업장의 명칭(상호) | 소재지 | 대표자 (영업자) | 위반 사항 | 청문 일자 | 처분 기준 | 처분내용 및 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274-24511비
1998. 5. 20 승인

297mm×210mm
(보존용지(2종) 70g/m²)

도축검사실적조사표

| 업무부호 | | | 연 | 도 | 월 | 시·도 | 시·군 | 번호 | 검산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축종 | | | 생체검사 두수 A | 도살두수 | | | 허가두수 | | | | | 신고두수 | | | |
| | | | | | | | 일반도축 | | | 생체증량 | | | 자가소비·긴급·학술연구용 도축 | | |
| | | | | 합계① | 암② | 수③ | 계④ | 암⑤ | 수⑥ | 계⑦ | 암⑧ | 수⑨ | 계⑩ | 암⑪ | 수⑫ |
| 한우 | 0 | 1 | 0 | | | | | | | | | | | | |
| 유우 | 0 | 2 | 0 | | | | | | | | | | | | |
| 육우 | 0 | 3 | 0 | | | | | | | | | | | | |
| 교잡우 | 0 | 4 | 0 | | | | | | | | | | | | |
| 돼지 | 0 | 5 | 0 | | | | | | | | | | | | |
| 말 | 0 | 6 | 0 | | | | | | | | | | | | |
| 양 | 0 | 7 | 0 | | | | | | | | | | | | |
| 닭 | 소계 | 0 | 8 | 0 | | | | | | | | | | | |
| | 육계 | 0 | 8 | 1 | | | | | | | | | | | |
| | 삼계 | 0 | 8 | 2 | | | | | | | | | | | |
| | 산란노계 | 0 | 8 | 3 | | | | | | | | | | | |
| | 산란중계 | 0 | 8 | 4 | | | | | | | | | | | |
| | 육용중계 | 0 | 8 | 5 | | | | | | | | | | | |
| | 검용중 | 0 | 8 | 6 | | | | | | | | | | | |
| 합계 | 0 | 9 | 0 | | | | | | | | | | | | |

[별지 제35호서식]

집유실적보고서(년 월분)

문서번호 :

발 신 : 기관장

수 신 :

제출연월일 : 년 월 일

참 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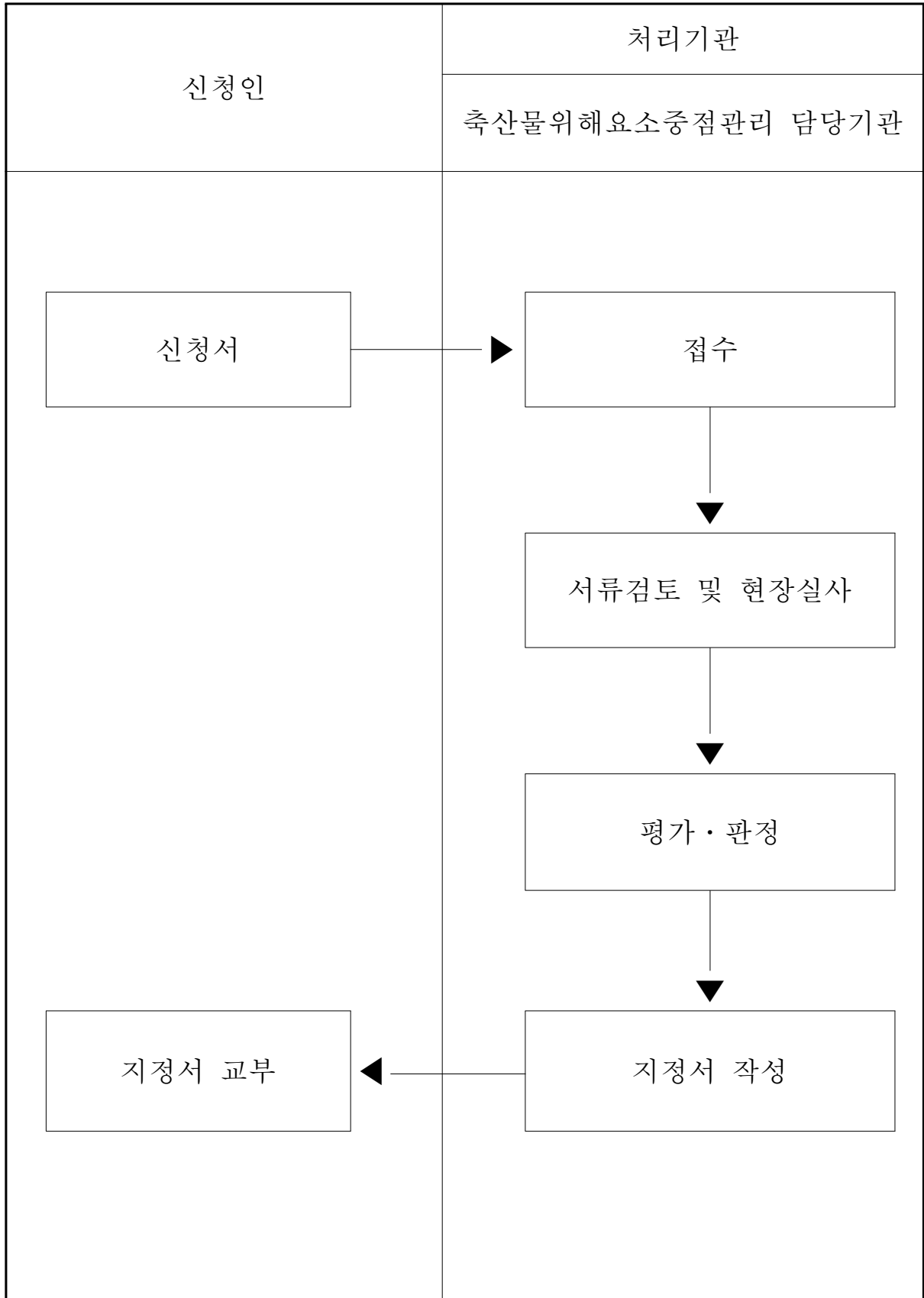
| 집유장명 | 납 유 목장수 | 총검사항 (kg, l) | 합격량 (kg, l) | 불합격량 (kg, l) | 불합격내역(단위 : 호수, kg) | | | | | | 비 고 |
|------|------------|-----------------|----------------|-----------------|--------------------|----|----|----|----------|----|--------|
| | | | | | 관능 | 비중 | 알콜 | 진애 | 잔류 물질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27274-24711비
1998. 5. 20 승인

297mm×210mm
(보존용지(2종) 70g/m²)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제 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작업장
(업소·농장)지정서

영 업 자 :

회사명(농장명) :

소 재 지 :

적용업종 또는 품목 :

조 건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HACCP적용작업장(업소·농장)으로 위와 같이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의 장

검 인

210mm×297mm (보존용지(2중) 70g/m²)

(뒤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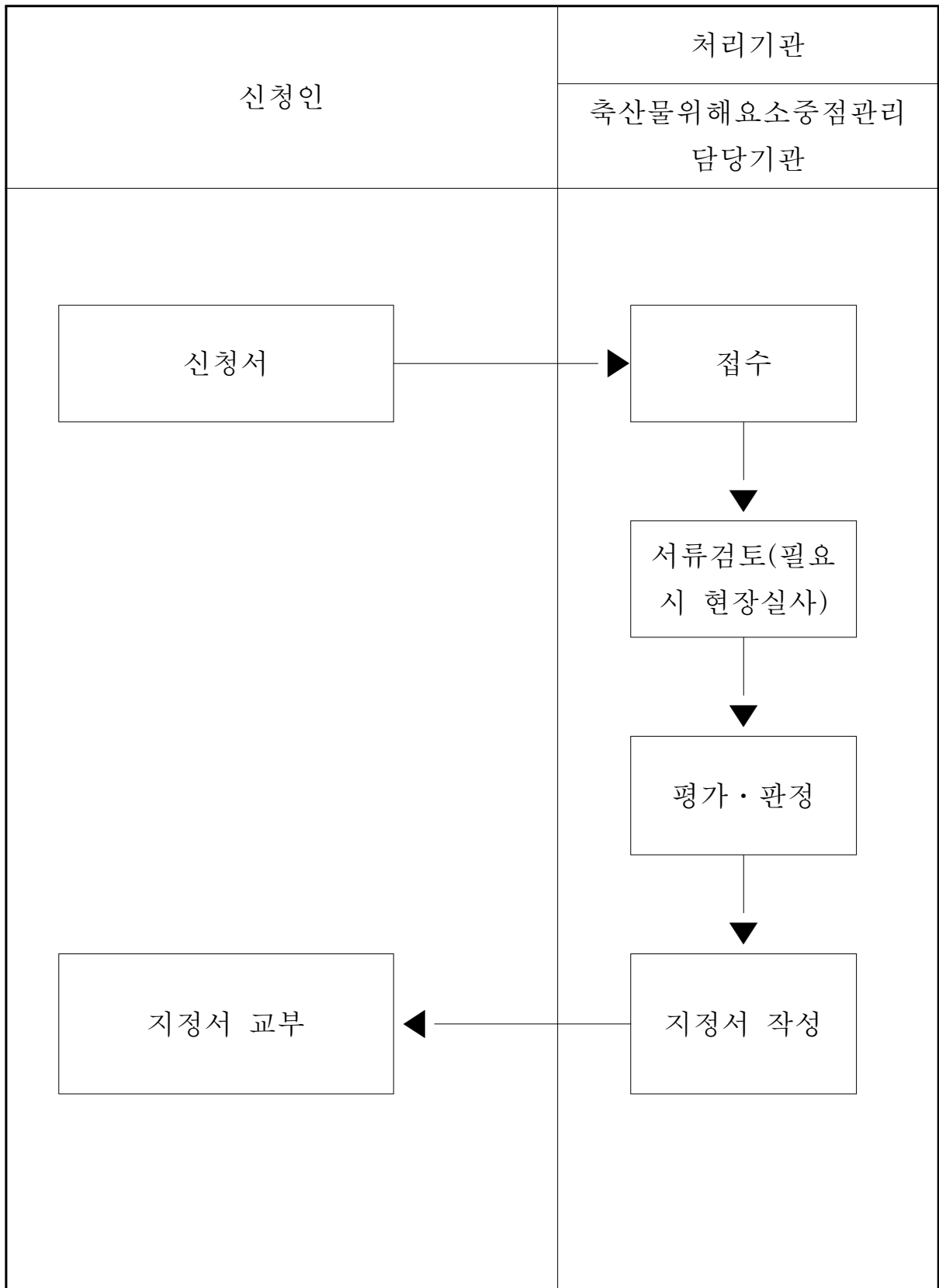
| 변경 및 처분사항 | | |
|-----------|-----------|-----|
| 연 월 일 | 변경 및 처분내용 | 확 인 |
| | | |

| | | | | |
|---|-------------------|---|-----------------|--|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작업장 (업소·농장) 지정변경신청서 | | | 처리기간 7일 | |
| 신 청 인 | ①영업허가(신고·등록)번호 | | ②영업허가(신고·등록)연월일 | |
| | ③작업장(업소·농장)명 | | ④전화번호 | |
| | ⑤소재지 | 본사 | | |
| | | 공장(농장) | | |
| | ⑥대표자성명 | | ⑦주민(법인)등록번호 | |
| | ⑧관리책임자 | | ⑨주민등록번호 | |
| | ⑩HACCP 적용업종 또는 품목 | | | |
|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 | | | | |
| 변경사유 | | | | |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HACCP적용작업장(업소·농장)의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의 장 귀하 | | | | |
| ※ 구비서류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작업장 (업소·농장) 지정서 2. 변경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 수수료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9조 에 따라 축산물위해요소 중점관리 담당기관의 장 이 정하는 수수료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제 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도측장 확인서

영 업 자 :

회 사 명 :

소 재 지 :

적용품목 :

조 건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7항에 따라 HACCP적용도측장으로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인

(뒤 쪽)

| 변경 및 처분사항 | | |
|-----------|-----------|----|
| 연월일 | 변경 및 처분내용 | 확인 |
| | | |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06.10.4>

행 정 기 관 명

우〇〇〇-〇〇〇 주소 : /전화 /전송 /담당 :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발 신 : 기관명(상호명)

대표자 :

제 목 축산물가공품등 생산실적보고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업소현황

| | | | | | | | |
|---------|----------|---------|-------|-------|-------|--|--|
| ①업 소 명 | | | | ②전화번호 | | | |
| ③소 재 지 | 시·도코드 | 시·군·구코드 | 시 구 동 | | 번지 | | |
| | | | 도 군 면 | | 가 리 | | |
| ④영업의 종류 | 영업의 종류코드 | | | | | | |
| | | | | | | | |
| ⑤영업허가 | 영업의 허가코드 | | 허가연월일 | | 허가관청명 | | |
| | | | | | | | |
| ⑥종 업 원 | 계 | 사무직 | 기술직 | 노무직 | 기 타 | | |
| | | | | | | | |

나. 축산물가공품등 품목별 생산실적

| ⑦생 산 품목코드 | ⑧가공품 등의유형 | ⑨생산 품목명 | ⑩연간 생산능력 (kg ℓ) | ⑪생산량 (kg ℓ) | ⑫생산액 (천원) | ⑬국내판매 | | ⑭국외판매 | | 비 고 |
|--------------|--------------|------------|-----------------------|----------------|--------------|--------------|------------|--------------|------------|--------|
| | | | | | | 수량 (kg ℓ) | 금액 (천원) | 수량 (kg ℓ) | 금액 (천원) | |
|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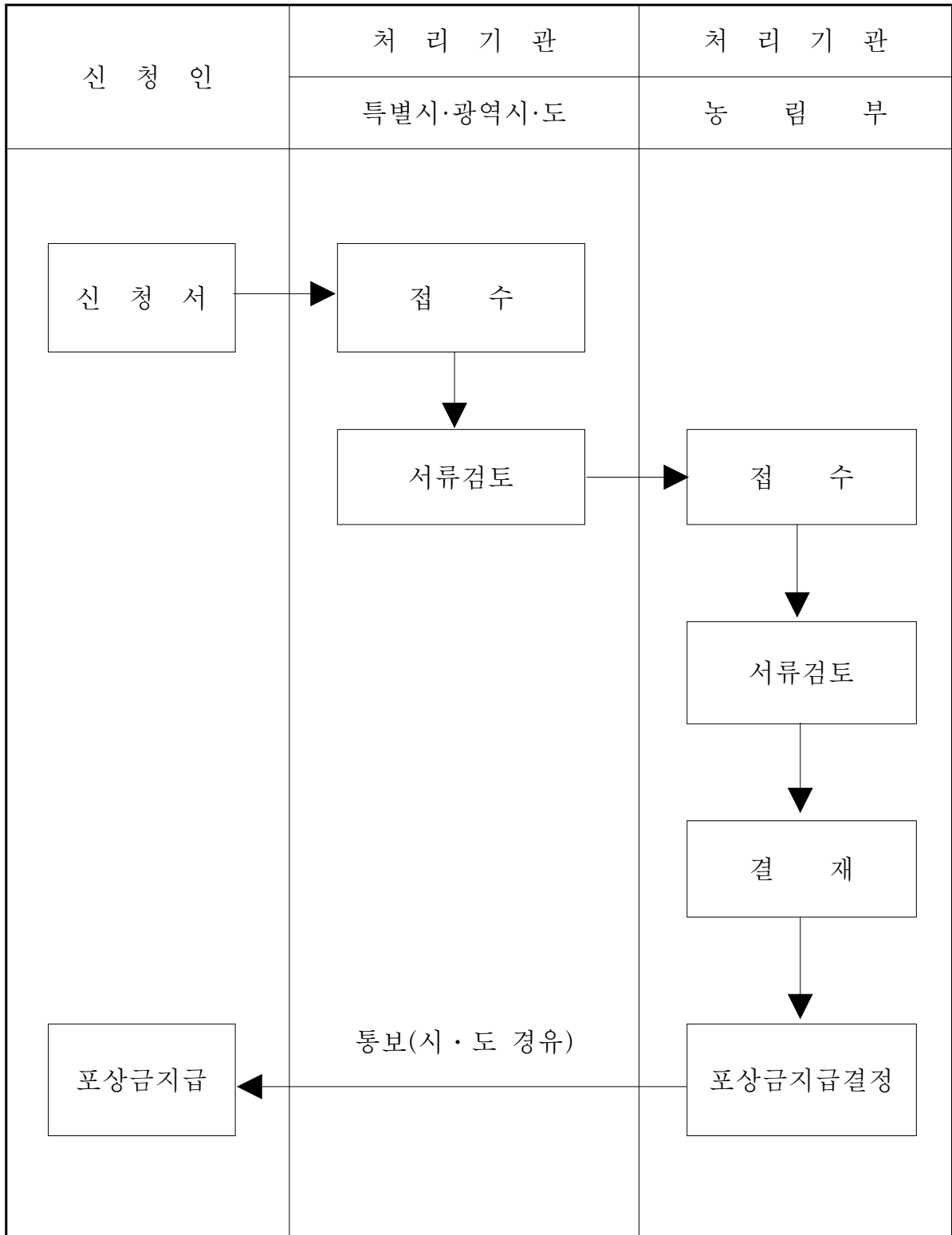
27274-24811보
1998. 5. 20 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

| | | | | | |
|--|-----|---------|-------|------------------|---|
| 포상금지급신청서 | | | | 처리기간 | |
| | | | | 시·도 7일 농림부 7일 | |
| ① 신청인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전화 :) | | | |
| ②범 법 행 위 유 형 | | | ③수 량 | | |
| ④행 위 연 월 일 | | | ⑤행위장소 | | |
| ⑥조 치 사 항 | | | | | |
| ⑦포 상 금 액 | | | | | |
| ⑧포상금배분액 또는 배분비율(%) | | | | | |
| <p>축산물가공처리법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포상금지급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농 립 부 장 관 귀하</p> | | | | | |
| 구비서류 : 없 음 | | | | 수 수 료 | |
| | | | | 없 음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거 래 내 역 서

판매업소명()

| 거 래 연월일 | 식 육 종 류 | | | | | 물량 (kg) | 등 급 | | | | | 부위 | 원산지 () | 매입처 () |
|------------|----------|----------|----------|------------|----------|------------|-----|---|---|---|--------|----|---------------|---------------|
| | 한우 고기 | 육우 고기 | 젓소 고기 | 수 입 소고기 | 돼지 고기 | | 1+ | 1 | 2 | 3 | 등 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재요령

- ①수입소의 경우 국내에서 사육한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식육종류중 수입소고기란에 표시하여야 한다.
- ②등급(축산법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받은 등급을 말한다)란에는 소를 국내에서 도축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하고, 돼지고기와 식육의 상태로 수입한 소고기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 ③부위란은 안심·등심 등으로 기재하고, 도체의 경우는 도체로 기재하며, 2가지 이상의 부위가 혼합된 포장육의 경우는 그 부위를 모두 기재하거나 주된 부위 위주로 "○○혼합"으로 기재할 수 있다.
- ④원산지란은 국내에서 생산된 식육의 경우는 국내산으로, 수입산 식육의 경우는 그 식육을 수출한 국가명을 기재한다. 다만, 외국으로부터 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6월 이상 사육한 후 도축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기하되 ()속에 소의 수출국가명을 기재하고, 사육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소의 수출국가명만을 기재한다.
- ⑤매입처는 식육 판매업소에서 식육을 구입한 곳을 기재하고, ()속에는 그 매입처의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기재한다.

축산물수입판매거래내역서

축산물수입판매업소명()

| 제품명 | 판매일 (거래 연월일) | 판 매 처 | | 판매량 | 수입일 | 수입신고 필증번호 | 수출국 | 수출 (가공) 회사명 |
|-----|--------------------|-------|---------------|-----|-----|--------------|-----|-------------------|
| | | 판매처명 | 주소 또는 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재요령

- ①제품명은 수입축산물의 신고필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부위별(예 : 갈비, 목살, 제4위·목뼈 등)로 최대한 세부적으로 기재한다.
- ②판매일은 축산물수입판매업소에서 수입축산물을 판매처에 판매한 연월일을 기재한다.
- ③판매처는 축산물수입판매업소가 수입축산물을 판매한 업체(업소)의 명칭과 그 업체(업소)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 ④판매량은 축산물수입판매업소가 수입축산물을 판매처에 판매한 물량을 박스와 kg단위로 기재한다.
- ⑤수입일은 수입축산물의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날을 기재한다.
- ⑥수입신고필증번호는 수입축산물의 신고필증발급번호를 기재한다.
- ⑦수출국은 수입축산물의 신고필증상 수출국을 기재한다.
- ⑧수출(가공)회사명은 수입축산물의 신고필증상 수출(가공)회사명을 기재한다.

축산물가공처리법령

■ 인쇄일 : 2006년 12월 일

■ 발행일 : 2006년 12월 일

■ 발 행 : 농림부

■ 편 집 : 농림부 축산물위생과

☎ 02-500-1917~8

■ 인 쇄 : 대한인쇄사

☎ 02-2279-7834
